

#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김형건

KLRI



#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연구책임자 : 김형건(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Kim, Hyung-Gun

2021. 10. 31.



## 연구진

연구책임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엄보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원외 심의위원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원내 심의위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원고 자문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원고 검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부연구위원
연구감리위원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온라인 플랫폼은 비전문 사업자 등을 포함한 시장의 신규 사업자가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품, 서비스 또는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
  - 시장 교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거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창출함
-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 입력을 기반으로 수집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비롯되는 정보를 축적·이용하여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추게 됨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규제 이슈들을 야기함
-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독점 금지,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조작 방지, 온라인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이 있음
  -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및 독점 금지와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조작 방지,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이슈 등이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과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함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는 자율성의 극대화나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등과 같은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성장, 고용 증대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국내 플랫폼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등을 둘러싼 국내외에서의 최근 논의와 입법 동향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

## II. 주요 내용

### ▶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와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
  - 디지털 플랫폼이 새롭게 불려오거나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오는 경제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생각해보아야 하는 규제 이슈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및 독점, 디지털 플랫폼 간의 상호호환성,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조작,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 조세정책, 노동규제 등이 있음
-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 현재 국내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로는 ‘온라인 플랫

품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들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확보

- 국내에서 최근 실시된 여러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과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일자리는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비공식 노동이 공식화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불안한 사회 안전망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배달업 등과 같이 원래 근로자가 일하던 직종이 플랫폼 일자리로 변화하여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함
-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보수 미지급과 무상 추가노동, 폭언이나 폭행, 업무상 상해·손실에 대한 자비 치료·배상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

- 기존의 경쟁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견해 등과 실증적인 조사나 분석의 부재, 산업 발전 및 혁신에 대한 유인 저해를 이유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음

## ○ 해외 입법 동향

- 유럽: 「EU 플랫폼 규칙」을 제정, 「디지털 서비스법안」 및 「디지털 시장법안」을 규칙의 형식으로 제안
-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미국: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중국: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을 제정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안 통과

## ○ 국내 입법 동향(I):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추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안으로 현재까지 총 7개의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됨
- 정부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국내 입법 동향(I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 추진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과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법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현재까지 총 5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 정부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 해결의무,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쟁점

-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1) 플랫폼 노동이 노동의 매개 방식, 계약 및 법률관계, 노무 제공에 있어서 공간적·시간적 환경 등이 전통적인 노동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 및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2)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조직화가 어렵고, 이로 인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조직화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3)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를 사회보장체계 내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으로, 1)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현행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포섭되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재정의하는 방안, 2) 개별 법률에서 그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특례에 의해 보호받도록 하는 방안, 3) 현행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제3의 범주를 창설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 해외 입법 동향

- 유럽연합: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제정
- 프랑스: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
- 미국: 캘리포니아주 「AB 5법」을 제정(2020년 11월 폐지)
- 스페인: 「라이더법」을 제정

## ○ 국내 입법 동향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확대하는 특례 신설
- 「고용보험법」의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특례 신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진: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과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정부안에 대한 입법 제언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 플랫폼 중개거래의 구체적인 실태를 반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확대 규정, 규율대상의 범위 축소 등의 의견을 제시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규제(처분대상의 제한,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및 피해구제(손해배상)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 용어의 정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책임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플랫폼 운영자의 플랫폼 이용계약의 변경·해지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계약 해지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수정안을 제시함

-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분쟁의 조정 및 피해 구제 절차,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의견을 제시함

### Ⅲ. 기대효과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해외 입법 동향 분석자료 제공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유럽연합, 일본, 미국, 중국, 독일의 입법례 분석자료 제공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 입법례 분석자료 제공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개선 방향 및 개선안 제시

▶ 주제어 :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Online platforms are rapidly increasing their role in the economic field by allowing new businesses in the market, including non-professional businesses, to provide content, products, services, or capital to other users of the platform.
  - They not only play a role in supporting market exchange, but also create new market opportunities, including new jobs.
- Online platforms will have control over the market based on the network effects, accumulating and using information from large-scale datasets collected from data input by online platform users.
  - Various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that abuse market dominance are taking place, resulting in various regulatory issues.
-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online platforms include prohibiting the restricted access to and monopoly of online platforms, preventing potential manipulation of consumers and markets, securing interoperability between online platforms, protecting and securing personal information of online platform users, and protecting platform workers.
  - In particular, prohibiting restricted access to and monopoly of online platforms by large-scale online platforms, preventing potential manipulation of consumers and markets, and protecting platform workers have recently drawn worldwide attention.

- Recently, it has been discussed in Korea to prepare regimes and policies for fairness in the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 order and to protect platform workers in the blind spot of the social safety net.
  - By securing fairness in the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 order, it is possible to create an industrial ecosystem that can grow soundly through fair competition.
  -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can highlight positive aspects of platform labor, such as maximizing autonomy or formalizing informal labor, as well as bring positive effects to related industries such as growth of related markets and employment growth.
- In order to create a sound industrial ecosystem so that the domestic platform industry can grow and develop further and to establish laws and regimes to support the sound industrial ecosystem, it is needed to examine recent discussions and legislative trends at home and abroad over securing fairness in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ding order and protecting platform workers.

## II. Major Content

### ▶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Digital Platforms and Domestic Digital Platform Regulation Issues

-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Digital Platforms
  - Regulatory issues that need to be newly considered by digital platforms

or in line with economic changes brought about by digital platforms are restrictions and monopolies on access to digital platforms, compatibility between digital platforms, potential manipulation of consumers and markets, protection and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tax policies, and labor regulations.

## ○ Domestic Digital Platform Regulation Issues

- At the moment, digital platform regulation issues that are fervently being discussed in Korea include “fairnes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 order” and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 ○ Fairnes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s

- According to several recent surveys conducted in Korea, various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are taking place or consumer damage are occurring on online brokerage platforms such as open markets, social commerce, delivery apps, app markets, and lodging apps.
- Accordingly, there have been growing calls for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regimes and policies for fairness in the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 order.

## ○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 Jobs through online platforms have positive aspects, such as maximizing autonomy and formalizing informal labor, but employment and income are unstable, platform workers are likely to face unstable social safety nets, and regular jobs including delivery services change to platform jobs.
- According to the survey, platform workers are experiencing unpaid remuneration, free additional labor, verbal abuse or assault, and

mercy treatment and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injuries and losses.

### ▶ Fairness of the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 Order

#### ○ Necessity of Legislation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s

- There are divided opinions. Some argue that it is necessary because the existing competition law alone has limitations. Others argue that caution should be taken due to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 or analysis, and obstruction of incentives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 ○ Overseas Legislative Trends

- European Union: EU Platform Regulation has been enacted, and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Digital Markets Act are proposed in the form of regulations.
- Japan: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pecific Digital Platforms has been enacted.
- United States: Package Bills for Platform Regulation have been proposed and passed by the Hous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 China: Platform Economic Antitrust Guidelines has been enacted.
- Germany: The 10<sup>th</sup> Amendment to the Competition Restriction Prevention Act has been passed.

#### ○ Legislative trends in Korea (I): The Enactment of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was proposed.

- A total of seven legislative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o far as legislation to enhance transparency in online platform operation and to establish a fair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 order.

- The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among other things,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the obligation to issue online platform brokerage contracts, the obligation to notify online platform brokers in advance, standards for unfair trade practices, dispute settlement between operators, investigation and handling of violation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online platform brokers' liability for damages.
- Legislative trends in Korea (II): The Whole Amendment to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proposed.
  - A total of five amendment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o far to establish a legal environment suitable for consumer protection and the market environment changed due to the acceleration of the digital economy.
  - The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among other things, stipulates the obligation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o provide information,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o perform some important tasks of e-commerce,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commerce.

## ▶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the following are issues

being discussed: 1) Since platform labor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labor relations in terms of labor mediation, contract and legal relations, and the spatial and temporal environment in providing labor, there is a limit to its inclusion in labor-related laws and systems; 2) It is difficult to organize platform workers because they are spatially and temporally separated in providing labor, and this makes it difficult to make a collective voice, making it difficult to organize platform workers and institutionalize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3) since social insurances such a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are designed around wage workers, it is difficult to include platform workers with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 As a labor law protection measure for platform workers, the following measures can be discussed: 1) a plan to redefine the concept of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o that platform worker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workers under the current labor law; 2)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in individual laws, if necessary, a plan to amend platform workers to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special type workers" so that they are protected by special cases; and 3) measures to protect platform workers by creating a third category for workers and self-employed people who are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workers under the current Labor Act.

#### ○ Overseas Legislative Trends

- European Union: Regulation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 has been enacted.
- France: The Act on Modernization of Labor and Social Conversation

and Guarantee of Occupational Pathways has been enacted.

- United States: California had enacted the AB 5 Act (abolished in November 2020).
- Spain: The Ley Rider has been enacted.

## ○ Legislative Trends in Korea

- Amendment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New regulations on safety measures, etc.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and delivery workers have been added recently.
- Amendment to the Basic Labor Welfare Act: New special cases are established to expand the scope of support for living stabilization funds and credit guarantees to various special types of workers, etc.
- Amendment to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Special cases to stabilize the lives of labor providers such as special type workers and expand opportunities for early reemployment have been established.
- A bill fo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Platform Workers: It provides for online platform usage contracts, platform operators' responsibilities,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etc.

## ▶ Legislative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 Bills

### ○ Legislative Suggestions for the Enactment of the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 This research presents opinion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unfair trade practice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order to reflect the specific status of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s, reducing the scope

of the subject of regulation, etc.

- This research presents revised drafts for the provision regulating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nd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striction of disposition target, consent resolution, enforcement fine) and damage relief (damage compensation).
- Legislative Suggestions for the Whol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 This research presents revised drafts for the definitions of the terms, the online platform operato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he online platform operator's responsibility for some important tasks of e-commerce, the online platform operator's responsibility related regulations, etc.
- Legislative Suggestions fo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Platform Workers
  - This research presents revised drafts for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the change or termination of the platform operator's contract for platform use, an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termination of the platform operator's contract, etc.
  - This research presents opinions on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for mediation of disputes and damage relief procedures for platform workers, penal provisions for violations of platform operators and platform users, etc.

### **III. Expected Effects**

- Providing a comparative analysis on overseas legislative trends on

- securing fairness in the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 order and protecting platform workers
- This research analyzes legislative measures in the European Union, Japa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ermany on securing fairness in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ding order.
  - This research analyzes legislative measures in the European Union,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Spain on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 Proposing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government's effort to enact or amend laws to secure fairness in the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 order and to protect platform workers
- This research presents directions and revised drafts for the government's enactment of the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Platform Workers.

▶ **Key Words** : Online Platform, Digital Platform, Platform Labor, Platform Workers,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Platform Workers



요 약 문 .....	5
Abstract .....	13

##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1. 연구의 필요성 .....	29
2. 연구의 목적 .....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2
1. 연구의 범위 .....	32
2. 연구의 방법 .....	32

## 제2장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와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 35

제1절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 .....	37
제2절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	40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	40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	49

## 제3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 55

제1절 개 관 .....	57
제2절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 .....	58

제3절 국내 입법 동향(I)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	59
1. 입법 추진 현황 .....	59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소관 .....	62
3. 주요 쟁점별 입법 발의안 내용 검토 .....	66
제4절 국내 입법 동향 (II) :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 .....	94
1. 입법 추진 현황 .....	94
2.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 .....	95
3.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 .....	100
제5절 해외 입법 동향 .....	103
1. 유럽연합 .....	104
2. 일 본 .....	112
3. 미 국 .....	115
4. 중 국 .....	155
5. 독 일 .....	169
6. 소 결 .....	177
제6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	179
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입법 제언 .....	179
2.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	189

## 제4장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 201

제1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쟁점 .....	203
제2절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국내 입법 동향 .....	206
1. 노동관계법 등의 제 개정 .....	206
2. 입법 추진 중인 법률 .....	215

제3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해외 입법 동향	221
1. 유럽연합	221
2. 프랑스	223
3. 미국	224
4. 스페인	225
5. 소결	227
제4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 제언	228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29
2. 계약의 변경 및 해지	231
3. 분쟁의 조정 및 피해 구제 절차 마련	233
4. 벌칙 규정 마련의 필요성	237

## 제5장 결 론 / 243

참고문헌	249
------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온라인 플랫폼<sup>1)2)</sup>은 비전문 사업자 등을 포함한 시장의 신규 사업자가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품, 서비스 또는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수많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중개를 촉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들이 가진 기존의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따라서 시장 교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거리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또는 다면) 네트워크 효과<sup>3)</sup>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

- 
- 1)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마켓플레이스,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창작 콘텐츠 매체, 앱스토어, 통신서비스, 지급결제시스템, 이른바 공유경제 또는 기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술하는데 사용되어오고 있다. OECD (2019), An Introduction to Online Platforms and Their Rol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ECD Publishing, Paris (이하 “OECD 온라인 플랫폼 보고서”라 한다); OECD 온라인 플랫폼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구별되지만 상호의존적인 이용자 집단(기업 또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 2)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은 같은 용어로 사용하며, OECD 온라인 플랫폼 보고서에서의 용어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 3) “네트워크 효과”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품질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양면 네트워크 효과”란 이상과 같은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자의 양 측면, 즉 공급자

입력을 기반으로 수집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비롯되는 정보를 축적·이용함으로써 큰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이용자들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고착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지배력을 갖추게 된 온라인 플랫폼은 그러한 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규제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새롭게 불리오거나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오는 경제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규제 이슈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독점의 금지,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조작 방지, 온라인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이 있다. 이 중, 최근 신규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입법과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급속도로 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입법의 움직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입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입법 조치를 취하였고, 동시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보다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각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들과 인접 시장의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

---

와 수요자 모두에게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의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생산되는 콘텐츠나 상호 교류로 인한 정보의 누적이나 트래픽 주목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게 되고, 이는 다시 그것을 활용하려는 이용자들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확대된 이용자에게 접근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광고업자를 비롯한 각종 사업자, 금융투자자를 다시 끌어들이면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양면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의 핵심 요소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조사』(2019.11.), 16쪽[이광석, 2017. “자본주의 종착역으로서 플랫폼 자본주의에 관한 비판적 소묘”, 『문화과학』, 31 인용].

는데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또한, 불안한 고용 및 소득, 불안정한 사회 안전망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자율성의 극대화나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등과 같은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성장, 고용 증대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플랫폼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등을 둘러싼 국내외에서의 최근 논의와 입법 동향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새롭게 불어오거나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오는 경제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생각해보아야 하는 규제 이슈들을 살펴보고, 특히 국내에서 실시된 여러 실태조사들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들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규제의 방식과 정도, 입법의 형식 등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 현황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그리고 불안한 고용 및 소득, 불안정한 사회 안전망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4) 이기중, 플랫폼 경쟁법, 삼영사(2021), 49쪽.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방법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들에 관하여 검토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불러온 새로운 규제 이슈들과 최근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라는 주제 하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의, 입법안과 해외 입법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입법안에 대한 제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4장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쟁점, 국내외 관련 입법의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대해 제언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입법 제언에 대해 요약·정리하고 있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과 법제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자료와 관련 문헌들을 조사·분석하는 문헌분석과 국내외 관련 법령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법령조사를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계, 실무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제언에 있어서는 원외 전문가의 원고 자문과 내용 검토를 거쳐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워크숍 개최			
	회의일시	회의일자	회의주제
제1차	4월 23일(금) 14:00-16:0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 (Ⅰ)	고형석 교수(선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 대), 신영수 교수(경북대), 이승민 교수(성균 관대), 김건식 센터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년 부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제2차	5월 14일(금) 14:00-16:0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 (Ⅱ)	고형석 교수(선문대), 김건식 센터장(한국공 정거래조정원),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신영 수 교수(경북대),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조 혜신 교수(한동대), 김도년 부연구위원(한국 소비자원)
제3차	6월 3일(목) 15:00-17:0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 (Ⅲ)	고형석 교수(선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 대), 신영수 교수(경북대), 김건식 센터장(한 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년 부연구위원(한국 소비자원)
제4차	7월 21일(수) 15:00-18: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검토 (Ⅰ)	고형석 교수(선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 대), 신영수 교수(경북대), 김세준 교수(경기 대), 김도년 부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윤 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이종성 실무 위원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5차	8월 4일(수) 15:00-17: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검토 (Ⅱ)	고형석 교수(선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 대), 신영수 교수(경북대), 김세준 교수(경기 대), 김도년 부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윤 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이종성 실무 위원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6차	8월 20일(금) 15:00-17: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검토 (Ⅲ)	고형석 교수(선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 대), 신영수 교수(경북대), 김세준 교수(경기 대), 김도년 부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이종 성 실무위원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7차	9월 7일(화) 15:00-17:00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 동향 분석	김건식 센터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호종 팀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문가 회의 개최			
	회의일시	회의주제	회의참석자
제1차	10월 6일(화) 10:30-12:00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입법 동향	심재진 교수(서강대), 노상현 교수(서울시립대), 전형배 교수(강원대), 신동윤 교수(단국대), 김기선 교수(충남대)
제2차	10월 12일(화) 15:00-17:00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심재진 교수(서강대), 노상현 교수(서울시립대), 전형배 교수(강원대), 김기선 교수(충남대)
제3차	10월 21일(목) 13:00-15:00	일하는 사람의 사회적 보호와 계약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	심재진 교수(서강대), 노상현 교수(서울시립대), 전형배 교수(강원대), 김기선 교수(충남대)

## 제2장

#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와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제1절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

제2절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 제2장

#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와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 제1절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우버, 에어비앤비, 태스크래빗, 키스타터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플랫폼은 비전문 사업자 등을 포함한 시장의 신규 사업자가 해당 디지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품, 서비스 또는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sup>5)</sup> 디지털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중개 촉진을 통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원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교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거리 창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sup>6)</sup>

한 편, 시장에 신규 사업자나 인력(예: 운전기사, 주택 소유자, 중고물품 소유자, 개인 콘텐츠 제작자 등) 또는 신규 자본이 투입되거나 동원되는 것은 종종 기존 시장과 사업자(예: 택시회사, 호텔, 상품 또는 콘텐츠 제작자, 금융기관 등)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불러오기도 한다.<sup>7)</sup> 우버 사건에서의 노동법 이슈나 구글/알파벳 사건에서의 저작권법, 경쟁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페이스북

---

5) Alain Strowel & Wouter Vergote, “Digital Platforms: To Regulate or Not to Regulate? Message to Regulators: Get the Economics Right First, then Focus on the Right Regulation”, at 3 [in Bram Devolder (ed.), *The Platform Economy: Unravelling the Legal Status of Online Intermediaries*, Intersentia (1st edition, 2019)].

6) Id.

7) Id. 3-4.

사건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지털 플랫폼은 특히 기존 법률의 한계선상에서 운영되는 경우에 다수의 법적 분쟁과 규제 이슈들을 야기하고 있고, 일부 디지털 플랫폼이 다른 디지털 플랫폼보다 더 많은 법적 분쟁과 규제 이슈들을 야기하기도 하나 다수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특정한 규제 이슈를 야기하며 기존의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sup>8)</sup>

디지털 플랫폼이 새롭게 불려오거나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오는 경제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생각해보아야 하는 규제 이슈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및 독점, 디지털 플랫폼 간의 상호호환성,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조작,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 조세정책, 노동규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이 점차 상품과 서비스 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당국은 어떤 잠재적 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플랫폼 접근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예를 들어, 중국 전자상거래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알리바바에의 접근 차단의 위협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같은 조치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는지, 그러한 조치가 공정했는지,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규제기관의 개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sup>9)</sup>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과 독점은 디지털 플랫폼 간의 상호호환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간의 상호호환성이 유지되도록 비즈니스 또는 규제 차원에서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sup>10)</sup>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충분히 성장하면 현재의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중개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거대한 규모와 영향력을 이용해 개별 이용자 또는 시장 전체를 조종하

8) Id. at 4.

9) 마셜 벤 엘스타인·상지트 폴 초더리·제프리 파커, 플랫폼 레볼루션, 부키(2017), 385쪽;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4월 10일 입점업체들에게 '양자 택일(2選1)'을 강요한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로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뉴스핌, "엔트파이낸셜 타격 불가피, 알리바바 3조원 과징금 파장"(2021.10.15.),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410000132> (최종방문: 2021.10.15.).

10) 엘스타인·초더리·파커, 주) 9, 386쪽.

려 할 수도 있는데(예: 아마존과 프랑스 출판사인 아셰트 간에 분쟁사례<sup>11)</sup> 등),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정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sup>12)</sup>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즉 소비자 데이터를 데이터 주도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면서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예: 에어비앤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sup>13)</sup> 등)의 문제와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사실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용 및 소유 등에 관한 규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sup>14)</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조치와 법원의 판결, 그리고 산업계의 자기 규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판매세, 부가가치세 등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징수해야 하는지의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sup>15)</sup>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기구(OECD)가 마련한 디지털세<sup>16)</sup>에 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어 136개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태로

11) 프랑스 출판사 아셰트는 아마존이 전자책의 가격 할인을 요구해오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아마존은 아셰트가 출판한 책에 대해 예약 판매, 신속 배달 등과 같은 일부 서비스를 제한한 바 있다. 매일경제, “아마존 책값 ‘갑질’ 못한다... 수익분배 출판사에 판정패”(2014.11.14.),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4/11/1425545/> (최종방문: 2021.10.15.).

12) 엘스타인·초더리·파커, 주) 9, 400-403쪽.

13) YTN 사이언스, “‘에어비앤비’ 이용자 신분증 통째로 노출”(2018.10.22.),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810221127439809&page=1932](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810221127439809&page=1932) (최종방문: 2021.10.15.).

14) See generally The Economist, “Who Owns Your Personal Data?: The Incorporated Woman”, <https://www.economist.com/schumpeter/2014/06/27/the-incorporated-woman> (last visited Oct. 15, 2021).

15) 예를 들어, 아마존의 경우 미국 내 주마다 다른 조세제도와 지역 판매세(일부 주에서는 아마존은 판매세를 납부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 덕분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인지하는 가격에 대한 이득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엘스타인·초더리·파커, 주) 9, 396-397쪽 참조.

16)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세이다.

현재 최종 추인만을 앞두고 있으며,<sup>17)</sup>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18)</sup>

그 밖에도, 노동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 인력과 서비스 수요자를 매칭해주는 중개인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버와 같은 노동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받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자의 신분을 갖게 되며, 일단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거의 지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우버 운전기사 또는 배달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 중개 플랫폼의 출현은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규제당국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 제2절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앞서 살펴본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들 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들 수 있다.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핵심적인 데이터의 수집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 같은 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sup>19)</sup> 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여러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소셜

17) kotra 해외시장뉴스, “디지털경제 전환에 발맞춰 OECD 디지털세 최종 합의”(2021.10.2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91457> (최종방문: 2021.10.25.).

18) 영국 정부는 디지털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Finance Act 2020」을 2020년 7월 22일 공포하여 시행 (디지털세에 관한 규정은 2020년 4월 1일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중에 있다.

커머스,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과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1)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및 불공정거래행위 현황 실태조사(2019년)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1조 1,23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 증가했으며,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08조 6,88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5% 증가하였다.<sup>20)</sup> 이처럼 온라인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up>21)22)</sup>

온라인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현황과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과 소비자인식 실태조사’<sup>23)</sup>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4%가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등 이른바 ‘중개 쇼핑몰’<sup>24)</sup>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중개

19) 김윤정,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질서 공정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경쟁저널 제205호, 공정경쟁연합회 (2020.11.), 22-24쪽.

20) 보도자료(통계청), “2020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2021.02.03.), 13쪽.

21) 보도자료(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거래 소비자피해 지속적으로 증가-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장치 마련돼야-”(2021.01.22.), 1-2쪽.

22)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와 관련한 분쟁 중에 40.8%(4,464건)가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보도자료(한국소비자원), 주) 21, 2쪽.

23) 김윤정 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2019); 월 1회 이상 온라인쇼핑몰 이용자(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함.

24) 설문에서는 ‘직접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입점사업자들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을 개설하여 판매를 중개해주는 사업자’(옥션, G마켓, 11번가, 네이버, 쿠팡,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호텔스닷컴 등 각종 여행사이트)로 “중개쇼핑몰”로 정의하였다.

쇼핑몰'을 이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쇼핑몰(중복응답)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42.8%)과 '중개 쇼핑몰'(32.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주문·배송·반품·취소·환불 등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쇼핑몰은 반대로 '중개 쇼핑몰'(51.3%)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42.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sup>26)</sup>

그리고 '중개 쇼핑몰'이 단순히 중개자의 역할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52.5%, '모른다'는 응답이 37.9%로 조사되었고, '중개 쇼핑몰'을 통한 상품구매 시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인식하는가에 대해서는 '중개 쇼핑몰'(37.7%), '중개 쇼핑몰과 입점 사업자 모두'(34.0%)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중개 쇼핑몰'을 계약당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7)</sup>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중개 쇼핑몰'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고지와 면책의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쇼핑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 '소비자들은 중개 쇼핑몰의 명성을 신뢰하고 거래하기 때문'(69.7%), 2) '입점 사업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55.9%), 3) '거래를 통해 이윤을 얻기 때문'(47.9%), 4)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45.4%)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8)</sup>

한 편,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sup>29)</sup>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자의 쇼핑몰별 입점비율(중복응답)은 '오픈마켓'(67.0%)과 '개인 온라인 쇼핑몰'(61.0%), 'SNS'(39.0%), '소셜커머스'(28.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sup>30)</sup>

25) 김윤정 외, 주) 23, 86쪽.

26) 김윤정 외, 주) 23, 89-90쪽.

27) 김윤정 외, 주) 23, 100-101쪽.

28) 김윤정 외, 주) 23, 102-103쪽.

29) 온라인쇼핑몰 판매자(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함.

30) 김윤정 외, 주) 23, 110쪽.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자 중 60.8%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입점 시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sup>31)</sup>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입점 시 판매자들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58.3%), ‘일방적 책임 전가’(37.5%), ‘할인쿠폰, 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적 취급’(33.3%), ‘일방적 정산절차’(31.3%)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sup>32)</sup>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판매자들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1) ‘공정한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56.3%), 2)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56.3%), 3)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52.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sup>33)</sup>

## (2)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2020년)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이라 한다)의 성장으로 국내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의 규모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온라인 주문을 통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17조 4천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78.6% 성장하였고, 이 중 95%가 모바일 주문을 통한 거래액이었다.<sup>34)</sup> 배달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배달 음식점만을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배달앱, 배달대행사, 라이더(배달원) 시장까지 함께 성장시키면서 신사업 매출 창출, 고용 증대 등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급속한 산업 발전에 따른 과열경쟁 그리고 배달앱 수수료, 배달대행 수수료, 광고비 등을 둘러싼 주요 산업 주체(소비자, 자영업자, 배달앱, 배달대행사, 라이더 등) 간의 갈등에 따른 부작용 또한 함께 늘고 있다.<sup>35)</sup>

31) 김윤정 외, 주) 23, 111쪽.

32) 김윤정 외, 주) 23, 111쪽.

33) 김윤정 외, 주) 23, 114쪽.

34) 중앙일보, “음식배달 시장 3년새 6.4배 ‘폭풍성장’... 95% 모바일 주문”(2021.03.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2541#home> (최종방문: 2021.10.15.).

35) DAILY POP, “배달앱의 성장,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배달비 공방은 계속”(2021.06.18.),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1750> (최종방문: 2021.10.25.).

2020년 수도권 내 2천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울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sup>36)</sup>의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1)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2) 광고 이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sup>37)</sup> 또한,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또는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8)</sup>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그 다음으로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과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배달 음식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계약 체결 전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음식점의 나열순서에 대해 안내와 설명을 들었으나, 노출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0.0%에 지나지 않았고 39.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sup>39)</sup>

### (3) 앱마켓 및 숙박앱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2021년)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경험, 검색 노출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수수료·광고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및 숙박앱 입점 사업자 500곳(앱마켓 250곳, 숙박앱 2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앱마켓 및 숙박앱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36) 2,000 개의 배달앱 가맹 음식점과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보도자료(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경기도 공정경제과), “배달앱 수수료 높아도 안쓸 수 없다...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0.08.27.), 1쪽.

37) 보도자료(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경기도 공정경제과, 주) 36, 3쪽.

38) 보도자료(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경기도 공정경제과, 주) 36, 3쪽.

39) 보도자료(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경기도 공정경제과, 주) 36, 4쪽.

우선,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가 응답자의 40.0%에 달하고,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0)</sup> 앱마켓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앱 등록 기준의 불명확과 앱 등록 절차의 지연(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에 따른 불이익(20.0%)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숙박앱의 경우에는 수수료 및 광고료 과다가 입점 사업자가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되었다.<sup>41)</sup>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서는, 앱마켓의 경우 1)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2) 시장의 독점적 구조의 개선(46.0%), 3) 법 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4) 분쟁해결시스템의 도입(27.0%)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숙박앱의 경우 1) 시장의 독점적 구조의 개선(56.4%), 2)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3)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sup>42)</sup>

검색 노출 방식(앱마켓만 해당)과 관련하여서는, 9.6%의 사업자가 검색 노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인 사유로 1) 타 앱마켓에 등록된 경우(41.7%), 2)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37.5%), 3)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20.8%)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60.8%의 사업자가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사업자는 18.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3)</sup>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대부분(앱마켓 100%, 숙박앱 97.6%)이었으며, 앱마켓의 경우 대체로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4)</sup>

40)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앱장터 40%, 숙박앱 31% 입점사업자가 갑질 경험 했다!”(2021.03.03.), 3-4쪽.

41)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 40, 3-4쪽.

42)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 40, 4쪽.

43)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 40, 4쪽.

44)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 40, 5쪽.

광고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1) 앱마켓의 경우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지불한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가 2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고비 수준은(1개월 1개 어플 기준) 구글플레이(구글)는 평균 1,402만원, 앱스토어(애플)는 평균 585만원, 윈스토어의 경우 272만원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2) 숙박앱의 경우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가 6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고비를 지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26.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sup>45)</sup>

#### (4) 온라인쇼핑 불공정거래 실태조사(2018년)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주 거래기업<sup>46)</sup> 및 전체 거래기업<sup>47)</sup>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쇼핑 불공정거래 실태조사’<sup>48)</sup>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인들이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주 거래기업과 전체 거래기업의 불공정행위(오픈마켓의 경우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 1개 이상, 소셜커머스의 경우 15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 1개 이상, 배달앱의 경우 9개의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 1개 이상)를 경험한 비율은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45)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 40, 5쪽.

46) 판매자(중소상공인)들의 오픈마켓 주 거래기업(최대 거래 매출 순으로 3순위 이내)을 의미한다(소셜커머스, 배달앱도 동일).

47) 판매자(중소상공인)들의 오픈마켓 거래기업 전체를 의미한다(소셜커머스, 배달앱도 동일).

48) 이정섭 외,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2018); 오픈마켓과 거래하는 전국 중소기업인 사업체 중 308개, 전국 소셜커머스 가맹업체 중 306개, 전국 배달앱 가맹업체 중 3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함.

<표-1>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구분		사례수(명)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있음	없음
오픈마켓	주 거래기업	308	22.7	77.3
	전체 거래기업	308	41.9	58.1
소셜커머스	주 거래기업	306	11.1	88.9
	전체 거래기업	306	37.3	62.7
배달앱	주 거래기업	303	32.3	67.7
	전체 거래기업	303	39.6	78.5

출처: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이정섭 외), 13-14쪽.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이 경험한 불공정행위의 유형별 경험 비율은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표-2>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

구분	오픈마켓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	35.7%
부당한 차별적 취급 행위	8.4%
과도한 상품가격 인하 등 사업 활동 방해 행위	3.6%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2.3%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1.3%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1.9%
거래 강제 행위	1.0%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3.2%
직원 부조리	0.6%
일방적인 정산 절차	7.5%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 일방적 책임 전가	15.9%
직간접 판매대행으로 인한 판매 교란 수행	2.9%
가입업체-판매자 간 합의된 서면 계약서의 부재	1.6%

출처: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이정섭 외), 16쪽.

&lt;표-3&gt; 소셜커머스 및 배달앱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

구분	소셜커머스	배달앱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	광고비 과다(8.5%) 서버사용료 과다(3.3%)	광고비 과다(37%)
부당한 차별적 취급 행위	3.9%	-
과도한 상품가격 인하 등 사업 활동 방해 행위	0.7%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2.0%	3.6%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0.7%	-
대금 지급기한 미준수 및 지연이자 미지급	7.8%	-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0.0%	-
거래 강제 행위	-	-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3.6%	4.3%
직원 부조리	0.0%	3.3%
일방적인 정산 절차	12.4%	5.6%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 일방적 책임 전가	10.8%	7.9%
직간접 판매대행으로 인한 판매 교란 수행	-	-
가입업체-판매자 간 합의된 서면 계약서의 부재	0.3%	3.6%

출처: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이정섭 외), 16-17쪽.

한 편, 1) 오픈마켓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인 사업체가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에는 '정부 차원의 판매 수수료 조정 및 관리'(65.9%), '불량 소비자로 인한 제품 손실 비용 지원'(22.1%),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21.1%)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sup>49)</sup> 2) 소셜커머스 가맹업체가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에는 '정부 차원의 판매 수수료 조정 및 관리'(68.6%), '상품 등록 및 가격 관리 통합시스템'(17.6%), '불량 소비자로 인한

49) 이정섭 외, 주) 48, 23쪽.

제품 손실 비용 지원'(16.7%)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sup>50)</sup> 3) 배달앱 가맹업체가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에는 '정부 차원의 판매 수수료 조정 및 관리'(40.6%),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35.6%), '판매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25.4%), '신규·영세 가맹점 지원'(23.8%)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51)</sup>

##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확산으로 등장한 새로운 노동형태로,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그때그때마다 일감을 얻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의 제공에 대해 보수를 지급 받는 것을 말한다.<sup>52)</sup>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노동이 수행되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단지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수요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다.<sup>53)</sup> 따라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용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단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한 노무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일자리는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비공식 노동이 공식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불안한 사회 안전망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배달업 등과 같이 원래 근로자가 일하던 직종이 플랫폼 일자리로 변화하여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sup>54)</sup>

50) 이정섭 외, 주) 48, 34쪽.

51) 이정섭 외, 주) 48, 45쪽.

52) 국가인권위원회, 주) 3, 32쪽.

53) 온라인 플랫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호출형, 관리형, 중개형, 전시형, 미세작업형 플랫폼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 3, 36-53쪽 참조.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sup>55)</sup>에 따르면, 실제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보수 미지급과 무상 추가노동, 폭언이나 폭행, 업무상 상해·손실에 대한 자비 치료·배상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으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주당 평균 플랫폼 노동으로 일하는 날은 전체 평균 5.2일로 정규 임금근로자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화물운송과 웹툰·웹소설은 6일을 넘었고, 대리운전도 6일에 가까웠다),<sup>56)</sup> 일하는 날의 평균 노동시간 역시 8.22시간으로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7)</sup>

<표-4> 직종별 하루 평균 노동시간

	빈도	평균(시간)	표준편차
대리운전	137	9.35	2.49570
퀵서비스	38	9.11	3.06497
음식배달	69	7.58	3.28160
플랫폼택배	53	7.45	3.60667
화물운송	87	13.70	10.66996
가사돌봄	197	6.12	3.39768
웹툰·웹소설	43	9.88	3.09612
전문프리랜서	72	4.86	2.59327
총계	696	8.22	5.39415

출처: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김철식 외), 85쪽.

- 54) 최선영,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21.06.), 25쪽.
- 55) 응답자 총 817명 중 남성이 466명으로 57.4%, 여성이 321명으로 39.5% 밝히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과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각각 25명과 5명이었다. 직종에 따른 성별 분포는, 1) 대리운전(남성 169명, 여성 7명, 밝히고 싶지 않음 1명), 2) 퀵서비스(남성 48명, 여성 2명, 밝히고 싶지 않음 1명), 3) 음식배달(남성 58명, 여성 9명, 밝히고 싶지 않음 3명), 4) 플랫폼택배(남성 40명, 여성 15명, 밝히고 싶지 않음 4명), 5) 화물운송(남성 100명, 여성 0명, 밝히고 싶지 않음 0명), 6) 가사돌봄(남성 5명, 여성 200명, 밝히고 싶지 않음 1명), 웹툰·웹소설(남성 9명, 여성 41명, 밝히고 싶지 않음 9명), 7) 전문프리랜서(남성 33명, 여성 47명, 밝히고 싶지 않음 6명)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주) 3, 71-72쪽.
- 56) 국가인권위원회, 주) 3, 83쪽.
- 57) 국가인권위원회, 주) 3, 85쪽; 한 편, 플랫폼 노동을 통한 평균 소득(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은 152.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 3, 90쪽.

둘째,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보수 미지급과 무상 추가노동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에서와 같다.

<표-5> 직종별 보수 미지급 경험

			한달 한번 이상	그런적 있음	그런적 없음	총계
직 종	대리운전	빈도	31	98	42	171
		비율	18.1%	57.3%	24.6%	100%
	퀵서비스	빈도	13	22	15	50
		비율	%	%	%	100%
	음식배달	빈도	6	20	44	70
		비율	%	%	%	100%
	플랫폼택배	빈도	3	9	45	57
		비율	%	%	%	100%
	화물운송	빈도	15	60	22	97
		비율	%	%	%	100%
	가사돌봄	빈도	2	16	188	206
		비율	%	%	%	100%
	웹툰·웹소설	빈도	0	12	46	58
		비율	%	%	%	100%
	전문프리랜서	빈도	2	31	53	86
		비율	2.3%	36.0%	61.6%	100%
총계	빈도	72	268	455	795	
	비율	9.1%	33.7%	57.2%	100%	

출처: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김철식 외), 96쪽.

<표-6> 직종별 무상 추가노동 경험

			한달 한번 이상	그런적 있음	그런적 없음	총계
직 종	대리운전	빈도	25	60	88	173
		비율	14.5%	34.7%	50.9%	100%
	퀵서비스	빈도	11	19	20	50
		비율	22.0%	38.0%	40.0%	100%
	음식배달	빈도	9	17	43	69
		비율	13.0%	24.6%	62.3%	100%

			한달 한번 이상	그런적 있음	그런적 없음	총계
플랫폼택배	빈도		1	18	38	57
	비율		1.8%	31.6%	66.7%	100%
화물운송	빈도		9	39	43	91
	비율		9.9%	42.9%	47.3%	100%
가사돌봄	빈도		1	19	186	206
	비율		0.5%	9.2%	90.3%	100%
웹툰·웹소설	빈도		3	26	29	58
	비율		5.2%	44.8%	50.0%	100%
전문프리랜서	빈도		6	27	52	85
	비율		7.1%	31.8%	61.2%	100%
총계	빈도		65	225	499	789
	비율		8.2%	28.5%	63.2%	100%

출처: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김철식 외), 97쪽.

셋째, 폭언이나 폭행 등 인격적 무시에 대해서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55% 가량 되어서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7> 직종별 폭언, 폭행 등에 대한 경험

			한달 한번 이상	그런적 있음	그런적 없음	총계
직종	대리운전	빈도	64	106	7	177
		비율	36.2%	59.9%	4.0%	100%
커피서비스	빈도	17	21	12	50	
	비율	34.0%	42.0%	24.0%	100%	
음식배달	빈도	18	22	30	70	
	비율	25.7%	31.4%	42.9%	100%	
플랫폼택배	빈도	7	19	32	58	
	비율	12.1%	32.8%	55.2%	100%	
화물운송	빈도	13	54	24	91	
	비율	14.3%	59.3%	26.4%	100%	
가사돌봄	빈도	4	27	174	205	
	비율	2.0%	13.2%	84.9%	100%	
웹툰·웹소설	빈도	9	22	27	58	
	비율	15.5%	37.9%	46.6%	100%	
전문프리랜서	빈도	4	25	53	82	
	비율	4.9%	30.5%	64.6%	100%	
총계	빈도	136	296	359	791	
	비율	17.2%	37.4%	45.4%	100%	

출처: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김철식 외), 99쪽.

넷째,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업무상 손해나 손실에 대해 자기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1) 업무상 손해에 대해 자비로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44.1%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퀵서비스(84%), 대리운전(68%), 음식배달(60.6%)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sup>58)</sup> 2) 업무상 손실에 대해 자비로 배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50.6%로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대리운전(89.7%), 화물운송(78.5%), 퀵서비스(77.5%), 음식배달(66.7%)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8> 직종별 업무상 손해에 대한 자비치료 경험

			한달 한번 이상	그런적 있음	그런적 없음	총계
직 종	대리운전	빈도	15	102	55	172
		비율	8.7%	59.3%	32.0%	100%
	퀵서비스	빈도	10	32	8	50
		비율	20.0%	64.0%	16.0%	100%
	음식배달	빈도	11	32	28	71
		비율	15.5%	45.1%	39.4%	100%
	플랫폼택배	빈도	4	26	28	58
		비율	6.9%	44.8%	48.3%	100%
	화물운송	빈도	6	46	40	92
		비율	6.5%	50.0%	43.5%	100%
	가사돌봄	빈도	0	27	179	206
		비율	0.0%	13.1%	86.9%	100%
	웹툰·웹소설	빈도	6	26	25	57
		비율	10.5%	45.6%	43.9%	100%
	전문프리랜서	빈도	1	5	79	85
		비율	1.2%	5.9%	92.9%	100%
총계	빈도	53	296	442	791	
	비율	6.7%	37.4%	55.9%	100%	

출처: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김철식 외), 101쪽.

58) 이동 플랫폼 노동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 3, 100쪽.

&lt;표-9&gt; 직종별 업무상 손실에 대한 자비배상 경험

		한달 한번 이상	그런적 있음	그런적 없음	총계	
직 종	대리운전	빈도	21	137	18	176
		비율	11.9%	77.8%	10.2%	100%
	퀵서비스	빈도	13	25	11	49
		비율	26.5%	51.0%	22.4%	100%
	음식배달	빈도	17	31	24	72
		비율	23.6%	43.1%	33.3%	100%
	플랫폼택배	빈도	7	27	23	57
		비율	12.3%	47.4%	40.4%	100%
	화물운송	빈도	10	63	20	93
		비율	10.8%	67.7%	21.5%	100%
	가사돌봄	빈도	1	17	188	206
		비율	2.0%	13.2%	84.9%	100%
	웹툰·웹소설	빈도	1	15	42	58
		비율	1.7%	25.9%	72.4%	100%
	전문프리랜서	빈도	1	17	67	85
		비율	8.9%	41.7%	49.4%	100%
총계	빈도	71	332	393	796	
	비율	8.9%	41.7%	49.4%	100%	

출처: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김철식 외), 102쪽.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고용된 근로자가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간의 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sup>59)</sup> 때문에 각종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9) 이하 제4장의 내용 참조.

## 제3장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제1절 개 관

제2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입법의 필요성

제3절 국내 입법 동향 (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제4절 국내 입법 동향 (Ⅱ) :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

제5절 해외 입법 동향

제6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 제3장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 제1절 개 관

온라인 플랫폼은 IC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유통경로의 확장,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시장 통제력이 커지게 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문제는 공정거래에 관한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의 방식과 정도, 입법의 형식 등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입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을 제안하는 다수의 법률 개정안들도 발의되어 함께 논의되고 있다.

## 제2절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

현 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우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의 측면에서 규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견해<sup>60)</sup>와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규제의 형평성),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견해<sup>61)</sup> 등이 있다.

반대로,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나 분석이 부재한 상황이며, 설령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필요성이 명백한 대상부터 규제를 시작하는 점진적·맞춤형 규제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필요한 경우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는 잠정적 규제에 대한 검토 필요)는 견해<sup>62)</sup>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사업 발전과 혁신에 대한 유인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sup>63)</sup> 등도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입법의 목적이 유사한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규제 입법에 비해 제재의 수위나 규제의 강도가 보다 엄격하며 사전규제의 강화로 규제 영역을 지나치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sup>64)</sup>

60) 온라인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과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판매가격을 올리도록 압박한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는 경쟁제한적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경쟁법의 적용이 가능하나 자신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우월적 지위 남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경쟁법 체계로는 규제가 쉽지 않다. 김윤정, 주) 19, 26쪽.

61) KDI, “온라인 플랫폼법의 필요성과 방향”(2021.02.02.), [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45](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45) (최종방문: 2021.10.25.); 일레로, 대형마트의 경우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대해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으나, 오픈마켓은 그러한 규제에 덜 구속된다.

62)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 ‘플랫폼 규제 3법안’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 성일종 주최·한국경제법학회/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주관 토론회,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학술회의 자료집(이하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자료집”이라 한다) 참조.

63)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입법과제 및 정비”, 경쟁저널 제205호, 공정경쟁연합회(2020.11.), 8-20쪽 참조.

## 제3절 국내 입법 동향(I)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 1. 입법 추진 현황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 한다)의 입법안으로 현재까지 총 7개의 발의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향후 입법을 위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표-10>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안 발의 현황

제안자	의안명	목적	제안일
송갑석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하 “송갑석의원안”이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0.07.13.
전혜숙의원 등 12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전혜숙의원안”이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20.12.11.
김병욱의원 등 12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하 “김병욱의원안”이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21.01.25.

64) 박경미,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동향과 전망,” 고려법학 제99호(2020.12.), 226쪽.

제안자	의안명	목적	제안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하 “민형배의원안”이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1.01.27.
정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정부안”이라 한다)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1.01.28.
배진교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하 “배진교의원안”이라 한다)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1.03.08.
성일종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하 “성일종의원안”이라 한다)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1.03.15.

국회에 계류 중인 7개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발의안의 구성체계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갑석의원안’은 총 6개의 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에 대한 공개와 준수(안 제6조 및 제7조), 온라인중개계약서 제공의무(안 제9조), 온라인판매업자에 대한 차별행위 등 금지(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분쟁조정

협회의 설치(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 조사(안 제29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안 제34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의원안’은 총 5개의 장, 3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의무[노출 기준의 공개, 서비스 제공 거부 사유 등의 통지, 금지 행위](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이용자의 불만에 대한 내부 처리 절차(안 제6조), 서비스의 제한 등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안 제8조),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이용 금지(안 제10조), 이용약관의 신고(안 제14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15조), 이용자의 데이터 전송 요구(안 제16조),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반사실 조사 및 시정명령(안 제26조, 제29조, 제33조 및 제35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안’은 총 4개의 장과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의무(안 제7조 및 제9조),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 공개(안 제8조), 중개계약 내용의 변경 및 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10조 및 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안 제12조),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서의 사용 및 작성(안 제18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협약 체결(안 제19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회의 설치(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 조사(안 제30조 및 제31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안 제32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침해행위 금지·예방 청구(안 제39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형배의원안’은 총 5개의 장과 4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교부의무(안 제6조), 중개계약 약관의 등록(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업자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안 제12조), 중개계약 내용의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13조 및 제14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15조), 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의 금지(안 제17조), 분쟁조정협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31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8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은 총 6개의 장과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안 제6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안 제9조), 사업자 사이의 분쟁 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진교의원안’은 총 6개의 장과 3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안 제6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의 구성(안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안 제9조, 제23조 및 제2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분(안 제21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1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일종의의원안’은 총 6개의 장과 3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계약서 교부의무(안 제7조 및 제8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9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1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30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1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한법」의 소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sup>65)</sup>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임과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65)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상의 금지행위<sup>66)</sup> 및 이용자 보호<sup>67)</sup>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양자 모두가 온라인 플랫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하 생략)

66)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  
(이하 생략)

67)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사업자의 규제당국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소관부처를 공정위와 방통위 중 누구로 정할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sup>68)69)</sup>

이와 관련하여서는,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율의 본질은 ‘거래공정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래공정화 법제의 체계 일관성 확보 및 거래 질서 확립의 전문성과 경쟁당국과 산업규제당국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이유로 들어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온라인 통신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통신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전문성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이유로 들어 방통위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sup>70)</sup>

<표-1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소관 관련 논의\*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방통위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p>○ <b>거래공정화 법제의 체계 일관성 확보 및 거래 질서 확립의 전문성</b></p> <p>- B2B 거래 관계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율은 그 본질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갑을관계’의 불균형으로, 공정위 소관의 기존 ‘거래공정화 법제’<sup>71)</sup>와 맥을 같이 함</p>	<p>○ <b>통신 규제전문규제기관으로서 지위와 전문성</b></p> <p>-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됨<sup>73)</sup></p> <p>-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통신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쌓아온 방통위 주축으로 제도가 정립되어야 함</p>

68) 매일경제, “이미 규제 3천개인데...공정위·방통위 내가 규제”(2021.02.08.),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767345/> (최종방문: 2021.10.15.).

69) 7개의 입법 발의안 중, ‘전혜숙의원안’은 방통위를 소관부처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 6개 발의안은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정하고 있다.

70) 강지원·박소영,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제의 소관 관련 논의”, 이슈와 논점 제183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05.14.), 1-4쪽 참조.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방통위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p>&lt;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과 거래공정화 법제 간의 공통점&gt;</p> <table border="1" data-bbox="215 453 696 757"> <thead> <tr> <th>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th> <th>거래공정화 법제</th> </tr> </thead> <tbody> <tr> <td>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td> <td>대규모유통업법</td> </tr> <tr> <td>계약서 필수 기재 및 서면 발급</td> <td>전부</td> </tr> <tr> <td>계약 해지 등에 따른 사전통지</td> <td>가맹사업법</td> </tr> <tr> <td>불공정거래행위 금지</td> <td>전부</td> </tr> <tr> <td>상생협약 체결 지원</td> <td>전부</td> </tr> <tr> <td>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td> <td>전부</td> </tr> </tbody> </table> <p>- 거래공정화 법제상 금지규정의 위법성(불공정성) 판단은 거래대상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해당 행위의 의도·효과, 해당 분야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이탈 정도 등과 같은 정성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사안별로 정성적 요소들을 체계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위한 관련 하위규범 및 법 집행 경험이 축적된 공정위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적합함</p> <p>○ 경쟁당국과 산업규제당국 간의 역할 분담을 위한 효율성 확보</p> <p>- 해당 업역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기술적 규제는 산업규제당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나,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공통의 정책목표인 공정한 경쟁·거래질서의 수립은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임<sup>72)</sup></p> <p>- 온라인 플랫폼상의 불공정거래 양태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기술적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나, 거래공정화 법제의 위법성 판단의 핵심은 기술적 이해 자체보다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부 및 그 지위의 남용에 따른 ‘거래내용</p>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거래공정화 법제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	대규모유통업법	계약서 필수 기재 및 서면 발급	전부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사전통지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전부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전부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전부	<p>○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of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p> <p>-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방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지양,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등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미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ICT 부처가 플랫폼 산업의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야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음<sup>74)</sup></p> <p>&lt;ICT 부처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gt;</p> <table border="1" data-bbox="725 884 1203 1481"> <thead> <tr> <th>내용</th> <th>담당부처</th> </tr> </thead> <tbody> <tr> <td>부가통신사업의 신고</td> <td>과학기술정보통신부</td> </tr> <tr> <td>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td> <td>과학기술정보통신부</td> </tr> <tr> <td>특정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 신고</td> <td>과학기술정보통신부</td> </tr> <tr> <td>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td> <td>방통위</td> </tr> <tr> <td>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td> <td>과학기술정보통신부</td> </tr> <tr> <td>이용자보호업무 평가</td> <td>방통위</td> </tr> <tr> <td>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td> <td>과학기술정보통신부</td> </tr> <tr> <td>역무제공 중단 시 손해배상</td> <td>방통위</td> </tr> <tr> <td>재정제도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td> <td>방통위</td> </tr> <tr> <td>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td> <td>방통위</td> </tr> </tbody> </table> <p>- 유사한 규제 목적을 가진 법안에 대해 EU의 경우 정보통신총국이 주도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산업성, 총무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하였음</p>	내용	담당부처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방통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방통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무제공 중단 시 손해배상	방통위	재정제도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거래공정화 법제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	대규모유통업법																																				
계약서 필수 기재 및 서면 발급	전부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사전통지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전부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전부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전부																																				
내용	담당부처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방통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방통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무제공 중단 시 손해배상	방통위																																				
재정제도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방통위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방통위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p>의 불공정성'에 대한 심사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함(예: 제약산업에서의 역지불합의,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 고도의 기술적 이해가 요구되는 사안이나 공정위가 규율하고 있음)</p>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제의 소관 관련 논의(강지원·박소영), 1-4쪽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요약 정리함.

### 3. 주요 쟁점별 입법 발의안 내용 검토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전해숙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의 대상을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안'을 포함한 나머지 입법 발의안들은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 71) '거래공정화 법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거래 등 '갑을관계'에 기반한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분야에서 협상력이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한 공정위 소관의 민사특별법들을 말하며, 이들은 「공정거래법」상의 대표적인 갑을관계 규율조항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해당 거래분야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하고,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계약서 서면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강지원·박소영, 주) 70, 3쪽.
- 72) EU 경쟁총국이 카르텔, 독과점 규제, 기업결합 등 경쟁 정책만을 관장하기 때문에 EU에서는 ICT 시장의 거래 질서 공정화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총국 주도 하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 규율 법제가 제정되었으나, 공정위는 경쟁 정책뿐만 아니라 공정화(갑을관계) 정책까지 담당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 환경이 EU와는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 강지원·박소영, 주) 70, 4쪽.
- 73)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인 '앱 마켓'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법 제2조제13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기통신사업 중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한다. 강지원·박소영, 주) 70, 4쪽.
- 74)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플랫폼에는 중개거래 유형뿐만 아니라 정보교환, 클라우드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 현 체제와 달리 중개거래만 별도 부처가 단독 소관할 경우 관리의 파편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ICT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통신 규제당국이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강지원·박소영, 주) 70, 4쪽.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정부안	<p>제2조(정의)</p> <p>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li> </ol> <p>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p> <p>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p> <p>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p> <p>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p>
송갑석의원안	<p>제2조(정의)</p> <p>2.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온라인판매중개업자”란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중개한 소비자와 온라인판매업자 사이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p>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전혜숙의원안	<p>제2조(정의)</p> <p>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간에 의사 소통, 정보 교환 등을 매개하거나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리하여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3.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p>
김병욱의원안	<p>제2조(정의)</p> <p>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 접수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직접 알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민형배의원안	<p>제2조(정의)</p> <p>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전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등의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배진교의원안	<p>제2조(정의)</p> <p>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화등에 대한 정보 제공</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li> </ol> <p>나. 재화등에 대한 청약의 접수</p> <p>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p>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p> <p>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성일종의원안	<p>제2조(정의)</p> <p>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 접수 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매개하거나 알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정부안’ 등을 포함한 모든 입법 발의안들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중개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신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중개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요건 (1)	
정부안	<p>제2조(정의)</p> <p>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p>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요건 (1)	
	<p>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p> <p>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p>
송갑석의원안	<p>제2조(정의)</p> <p>3. “온라인판매중개업자”란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중개한 소비자와 온라인판매업자 사이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p>
전혜숙의원안	<p>제2조(정의)</p> <p>4.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제3호의 사업자 중에 매출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금액, 이용자수, 이용집중도,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p>
김병욱의원안	<p>제3조(적용범위) ②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p>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민형배의원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을 통한 매</p>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요건 (1)	
	<p>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p>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배진교의원안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p>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성일종의원안	<p>제3조(적용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수수료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매출액을 산정한다.</p> <p>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p>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요건 (2)	
정부안	<p>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③ 제1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li> <li>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이용 형태, 특성 및 빈도</li> <li>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사업능력 수준 및 그 격차</li> <li>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의존도</li> <li>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 및 특성</li> <li>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송갑석의원안	<p>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p> <p>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온라인판매중개업자”로, “납품업자등”은 “온라인판매업자”로 본다.</p>
김병욱의원안	<p>제4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li> <li>2.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li> <li>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li> <li>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li> <li>5.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li> <li>6.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민형배의원안	<p>제3조(적용범위) ② 제15조의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요건 (2)	
배진교의원안	<p>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③ 제1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li> <li>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이용 형태, 특성 및 빈도</li> <li>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사업능력 수준 및 그 격차</li> <li>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의존도</li> <li>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등의 수량 및 특성</li> <li>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성일종의의원안	<p>제4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li> <li>2.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li> <li>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li> <li>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li> <li>5.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li> </ol>

중개 사업자의 규모 요건 이외에도, ‘전혜숙의원안’을 제외한 모든 입법 발의안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때 우월적 지위 관계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75)</sup>

75)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하도급법」에서는 매출액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우월적 지위 관계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고희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 - 정의, 적용범위, 정보제공 및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역외적용

‘정부안’, ‘송갑석의원안’, ‘김병욱의원안’, ‘배진교의원안’은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4개의 발의안 간에는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 전체 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의 일부 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정한 것인지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규정할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보복조치의 금지나 행정규제 등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공정거래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전혜숙의원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이기에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정조치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모두 적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sup>76)</sup>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안 및 배진교의원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송갑석의원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혜숙의원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

계약서 교부의무를 중심으로 -”,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1차 워크숍 자료집[2021.04.23.] (이하 “제1차 워크숍 자료집”이라 한다), 34-36쪽.

76) 제1차 워크숍 자료집, 주) 75, 39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김병욱의원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민형배의원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성일종의원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부안’ 등 대부분의 발의안들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송갑석의원안’의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취지나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 (3)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거래공정화 법제’(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거래 등 ‘갑을관계’에 기반한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분야에서 협상력이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한 공정위 소관의 민사특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위는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기 위해 ‘정부안’에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을 포함한 대부분의 발의안들이 필수적 기재사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검색·배열순위(노출순서) 결정 원칙’은 검색 알고리즘 등 영업비밀의 노출, 이용사업자에 의한 노출 알고리즘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향후 입법의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77)</sup>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부안	<p>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중개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li> <li>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li> <li>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li> <li>4.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li> <li>5.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li> <li>6.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부담 기준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i> </ol>
송갑석의원안	<p>제9조(서면의 제공 등) ①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판매업자와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계약(이하 “온라인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즉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온라인중개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와 이용약관을 온라인판매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제5조(이용약관) ①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li> <li>2. 광고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li> <li>3. 온라인플랫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li> <li>4.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주요 변수, 주요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포함한다)</li> <li>5.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li> <li>6.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수집한 온라인판매업자와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li> <li>7.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서비스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li> <li>8. 제18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중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li> </ol>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p>9. 그 밖에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전해속의원안	<p>제7조(거래기준 권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약 기간, 계약 갱신 절차, 계약내용 변경 사유 및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li> <li>2. 수수료, 광고비(광고대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이라 한다) 산정의 기준 및 절차</li> <li>3.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개시, 제한, 정지의 기준 및 절차</li> <li>4. 판매상품의 반품, 환불, 교환 등의 기준 및 절차</li> <li>5. 판매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정산대금 지급 절차, 방식, 시기</li> <li>6.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직접 또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 또는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li> <li>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콘텐츠 등의 가격, 거래조건, 다양성 등 결정에 관한 관여 또는 제한 여부 및 그 내용</li> <li>8.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기준, 절차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li> <li>9.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li> <li>10.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시 주요 고려요소 및 상대적 중요도 등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li> <li>11. 자신이 직접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 등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준</li> <li>12.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li> <li>13.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li> </ol>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4.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김병욱의원안	<p>제7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li> <li>2. 광고비의 주요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li> <li>3.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조건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li> <li>4.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li> <li>5.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다만, 공개로 인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다른 법령의 준수 등에 의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li> <li>6.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직접 판매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 등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준</li> <li>7.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수집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li> <li>8.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li> <li>9. 제10조에 따른 온라인 중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민형배의원안	<p>제7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p>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p>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li> <li>2. 중개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계약 내용 변경 시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li> <li>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의 개시, 제한, 정지의 기준 및 절차</li> <li>4. 판매하는 재화등의 반품, 환불, 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li> <li>5. 재화등 판매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정산대금 지급 절차, 방식, 시기</li> <li>6.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li> <li>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등의 판매가격, 판매방식, 판매량, 배송방식, 결제방식 등 결정에 관한 관여 또는 제한 여부 및 그 내용</li> <li>8. 할인쿠폰 발행 등 판매촉진행사 실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li> <li>9.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li> <li>10.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노출 방식 및 순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li> <li>1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직접 판매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등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준</li> <li>1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li> <li>1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li> <li>14. 그 밖에 중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배진교의원안	<p>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중개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li> </ol>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li> <li>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li> <li>4. 거래되는 재화등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li> <li>5. 거래되는 재화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li> <li>6.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li> <li>7.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li> <li>8. 광고비의 주요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li> <li>9.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주요 변수 및 주요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포함한다)</li> <li>10.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다만, 공개로 인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다른 법령의 준수 등에 의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li> <li>11.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i> </ol>
성일종의원안	<p>제7조(계약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서비스 이용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계약서(이하 “중개서비스 이용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p> <p>제8조(표준계약서의 수립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개서비스 이용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li> <li>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li> <li>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li> <li>4.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 일정 등에 관한 사항</li> <li>5. 광고상품 또는 유료서비스 등의 구매 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방식. 다만, 결정기준의 공개로 인해 영업비밀이 침해</li> </ol>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되거나 검색결과가 조작·왜곡되는 등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거래 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개서비스 이용거래계약 당사자의 중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4) 불공정한 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국회에 제출된 7개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발의안 상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2> 발의안별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정부안	송갑석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배진교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
구매강요	○		○		○	○	○
이익제공강요	○	○		○	○	○	○
손해전가	○	○		○	○	○	○
불이익제공	○		○		○	○	○
경영간섭	○				○	○	○
보복조치	○			○	○	○	○
이용거절 등		○	○	○	○		
차별행위		○	○	○	○	○	
정보제공의 거절					○		

77) 최은진·강지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NARS 입법·정책 Vol. 77, 국회입법조사처(2021.05.10.), 58-60쪽.

	정부안	송갑석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배진교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
거래조건의 변경					○		
결제방식의 강요				○		○	
판촉비용의 전가		○		○		○	
배타적 거래		○		○		○	
기 타		○	○	○			
가격제한		○					
경영정보의 제공		○		○			
동일거래조건의 요구				○			
정산지연			○	○			
계약불이행			○				
비용 손해부과			○				
거래 제한			○				
최혜조건요구			○				
법령위반계약체결							
정보 미제공 또는 부당한 정보 제공			○				
정보 미제공 변경			○				
서비스 제한 시 정보 미제공			○				
광고 미구분			○				
계약해소권의 제한			○				

출처: 고흥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23쪽.

###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정부안’)

‘정부안’을 비롯하여 다수의 입법 발의안들이 공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다. ‘정부안’에서는 ‘부당한 손해전가’를 추가하고 ‘판매목표 강제’를 삭제하였으나,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sup>78)</sup>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정부안	<p>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li> <li>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li> <li>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li> <li>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li> <li>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li> </ol>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li> <li>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이용 형태, 특성 및 빈도</li> <li>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사업능력 수준 및 그 격차</li> <li>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의존도</li> <li>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 및 특성</li> <li>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즉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제1호),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제4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제5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7호),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제8호) 등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보복조치의 금지(‘정부안’)

‘정부안’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입법 발의안들이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의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규정(법 제48조)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에서는 보복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송갑석의원안’(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을 제외한 입법 발의안들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sup>79)</sup>

보복조치의 금지	
정부안	<p>제10조(보복조치의 금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정지·제한 또는 중개거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li> <li>2.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li> <li>3.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li> <li>4.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li> </ol>

78) 고형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2차 워크숍 자료집[2021.05.14.](이하 “제2차 워크숍 자료집”이라 한다), 24-25쪽.

79) 제2차 워크숍 자료집, 주) 78, 27쪽.

## (5) 행정규제

### 1) 처분대상의 제한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대상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안’은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안’의 적용을 받는 중개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개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sup>80)</sup>

처분대상의 제한	
정부안	<p>제21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p>

### 2) 동의의결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 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질서 등의 개선 등을 위하여 자율적 시정방안 등을 기재한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해당 시정방안이 적절하

80) 고형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정부안의 공적 규제 및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3차 워크숍 자료집[2021.06.03.](이하 “제3차 워크숍 자료집”이라 한다), 6-7쪽.

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sup>81)</sup>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 「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도(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1) 일정한 요건 하에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고, 2)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동의의결에 있어서 검찰총장과의 협의 의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sup>82)</sup> 그러나 ‘정부안’에서 동의의결의 대상은 단지 불공정거래행위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보복조치의 금지(안 제10조)도 동의의결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와 같이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90조제3항)할 필요가 있다.<sup>83)</sup>

동의의결	
정부안	<p>제24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li> <li>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li> <li>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위</p>

81) 최은진·강지원, 주) 77, 68쪽.

82) 제3차 워크숍 자료집, 주) 80, 12쪽.

83) 제3차 워크숍 자료집, 주) 80, 12-13쪽 참조.

동의의결	
	<p>관련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p> <p>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p> <p>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p> <p>1. 제37조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p> <p>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p> <p>④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⑥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p> <p>제25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 3) 이행강제금

‘정부안’에서는 「공정거래법」 상의 자료 등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법 제86조)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정부안'의 적용을 받는 중개사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중개사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sup>84)</sup>

공정거래법	정부안
<p>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p> <p>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 (6) 피해 구제

### 1) 금지청구

「공정거래법」은 피해자가 법원에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으나,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

84) 제3차 워크숍 자료집, 주) 80, 17쪽.

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대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108조).<sup>85)</sup>

그런데 ‘정부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청구에 관한 「공정거래법」 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정부안’의 적용을 받는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sup>86)</sup>

금지청구	
공정거래법	제108조(금지청구 등) 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2) 손해배상

‘정부안’은 중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30조). 이 때, 위반행위에는 ‘보복조치의 금지’(안 제10조)도 포함된다.

85) 제3차 워크숍 자료집, 주) 80, 24쪽.

86) 제3차 워크숍 자료집, 주) 80, 24쪽.

따라서 ‘정부안’의 적용을 받는 중개사업자의 보복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법」상의 3배배상이 아니라 전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역차별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sup>87)</sup>

공정거래법	정부안
<p>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li> <li>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li> <li>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li> <li>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li> <li>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li> <li>6. 사업자의 재산상태</li> <li>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li> </ol>	<p>제30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제9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p>

공정거래법	정부안
<p>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p>	<p>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⑥ 법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해당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p>

공정거래법	정부안
<p>정할 수 있다.</p> <p>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li> <li>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li> </ol>	

공정거래법	정부안
<p>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p> <p>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li> <li>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li> <li>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li> </ol> <p>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i> <li>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li> <li>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li> </ol>	

공정거래법	정부안
<p>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p>	

## 제4절 국내 입법 동향 (II) :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

### 1. 입법 추진 현황

최근 오픈마켓이라는 중개몰(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sup>88)</sup> 소비자 문제 또는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다.<sup>89)</sup>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변화된 시장 환경과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법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고,<sup>90)</sup>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해왔다.<sup>91)</sup>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3월

87) 제3차 워크숍 자료집, 주) 80, 29쪽.

88)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물 거래액은 2010년 25.2조원에서 2020년에 161.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 온라인쇼핑물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비중은 2017년 33.2%에서 2019년 44.9%로 증가하였다. 고희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대한 연구”,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5차 워크숍 자료집[2021.08.04.](이하 “제5차 워크숍 자료집”이라 한다), 1쪽[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21.03.08.), 2쪽 인용].

89) 김윤정 외, 주) 23, 279쪽.

90) 김상조 前 공정거래위원장은 2018년 1월 30일에 개최된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PC통신 시절 만든 법으로 5G 시대의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자상거래법이 필요하다”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예고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3일 소비자의 날에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제5차 워크숍 자료집, 주) 88, 1쪽.

91) 「전자상거래법」 개정작업은 2018년에도 추진되었으나, 당시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학계·소비자단체 등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sup>92)93)</sup> 공정위는 다음의 내용을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 수립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중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다.

## 2.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라는 절(안 제2장 제2절)을 신설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부제공의무(안 제24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25조),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안 제26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책임(안 제27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해결의무(안 제28조),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29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92)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에 5개의 법안 - ‘윤관석의원 대표발의안’(2021.03.30.),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2021.05.25.),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안’(2021.06.10.),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안’(2021.06.25.),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안’(2121.08.18.) - 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9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한 앞선 논의와의 통일성을 위해 이하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정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란 둘 이상의 집단의 이용자들 간에 재화 등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안 제2조제4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재화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판매를 위한 일정한 기능을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일정한 대가를 받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에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인터넷 등 가상의 영업장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의 청약 접수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결제 및 배송지원, 고객 관리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제5호).

### (2)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정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안 제2조제6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재화 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로 정의 하면서(안 제2조제7호), 이러한 용어들로 현행법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용어를 대체하고 있다.<sup>94)</sup>

94)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의 당사자는 아니면서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를 (광의의) 통신판매중개자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지만, 이를 업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의) 통신판매중개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0조).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지만, 자신의 전자적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게시판 운영자를 ‘전자적 게시판 운영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의2). 그리고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재화 등을 거래하는 자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0조 제2항), 이는 통신판매업자·사업자·일반 개인으로 구분된다.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대한 연구”,

### (3)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 1)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및 표시의무와 책임

온라인 플랫폼은 운영사업자만이 재화등을 거래하는 것이 아닌 이용사업자도 거래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가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운영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제공의무와 표시의무,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정보제공 및 표시의무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운영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안 제24조제1항):</b> 운영사업자(거래중개 또는 연결수단제공 운영사업자에 국한, 정보교환매개 운영사업자는 제외)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등의 정보 제공할 의무를 부담</li> <li>○ <b>이용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및 분쟁 발생 시 정보 제공(안 제24조제3항):</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를 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li> <li>○ <b>운영사업자가 거래하는 재화등과 이용사업자가 거래하는 재화등의 구분 표시(안 제24조제2항):</b> 운영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용사업자등의 신원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안 제25조제2항):</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업자가 제24조제3항의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짐(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li>○ <b>재화등의 미구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안 제25조제1항):</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운영사업자가 제24조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짐</li> <li>○ <b>오인유발 운영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25조제3항):</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운영사업자 자</li> </ul>

정보제공 및 표시의무	책임
<p>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가 증개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재화등과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p> <p>○ <b>부수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24조 제4항):</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증개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의 청약의 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의 내용을 소비자의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p>	<p>신의 명의로 재화등을 표시·광고 또는 공급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교부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짐(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 2) 거래증개 운영사업자의 책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가 증개되는 과정에서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사업자가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사업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사업자가 대신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운영사업자가 청약의 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등의 중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책임(안 제26조)	손해배상책임(안 제25조제4항)
<p>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가 증개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p> <p>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p>	<p>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증개하는 경우 제24조제2항의 표시 또는 제3항의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청약의 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p>

보충적 책임(안 제26조)	손해배상책임(안 제25조제4항)
<p>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p> <p>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2.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p> <p>가. 제10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p> <p>나. 제69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p> <p>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4) 법 적용 범위의 축소

현행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로 한정하고 있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sup>95)</sup> 또한,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였다.<sup>96)</sup>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나(법 제20조의2제3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 전체를 삭제하였다.<sup>97)</sup> 마치

95) 고희석, 주) 94, 217쪽.

96) 고희석, 주) 94, 217쪽.

97) 고희석, 주) 94, 217-218쪽.

막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의 일부(법 제4조 단서)를 삭제하였다.<sup>98)99)</sup>

### 3.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전자상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통신판매증개’라는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월 28일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sup>100)</sup>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급과 수요 각 측면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법 제정과 개정을 각각 추진하고 있기에, 양 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은 서로 상이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어야 하나, 이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서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sup>101)</sup>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의 ‘사이버몰’이라는 용어를 ‘온라인몰’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온라인몰’은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2조제11호),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5호)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몰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sup>102)</sup>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98) 고형석, 주) 94, 218쪽.

99)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특별법적 성격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체계 및 총칙을 중심으로 -”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별호, 2021을 수정·보완),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4차 워크숍 자료집[2021.07.21.](이하 “제4차 워크숍 자료집”이라 한다), 28쪽.

100) 제4차 워크숍 자료집, 주) 99, 13쪽.

101) 제4차 워크숍 자료집, 주) 99, 14쪽.

102) 다시 말해, 온라인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재화등의 거래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場)이다. 제4차 워크숍 자료집, 주) 99, 15쪽.

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두 용어에 대한 정의 역시 상이하다.<sup>103)</sup> 그 밖에도,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중개 중에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지는 중개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방식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규율이 누락되어 있다.<sup>104)</sup>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p>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p> <p>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p> <p>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p> <p>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p> <p>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p>	<p>4. “온라인 플랫폼”이란 둘 이상의 집단의 이용자들 간에 재화등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p> <p>5.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재화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p> <p>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일정한 기능을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일정한 대가를 받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간에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p> <p>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인터넷 등 가상의 영업장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플랫폼</p>

103)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중개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전자적 게시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워크숍 자료집, 주) 99, 15쪽.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p>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p>	<p>이용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의 청약 접수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거래를 증개하는 서비스</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결제 및 배송지원, 고객 관리 등의 서비스</p> <p>11. “호스팅 서비스”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제4호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및 표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및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24조)의 내용과 그에 따른 책임에 관한 규정(안 제25조)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sup>105)</sup> 운영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외관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외관책임의 법리’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sup>106)</sup>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거래중개 운영사업자의 보충적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용사업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거래중개 운영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래중개 운영사업자가 그러한 이행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아야 하나, 거래중개 운영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전자결제업자등’(법 제8조)에 해당하게 되어 전자적 대금지급의

104) 제4차 워크숍 자료집, 주) 99, 16쪽.

105)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 위반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5조는 제2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06) 고흥석, 주) 94, 222쪽.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충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07)</sup>

## 제5절 해외 입법 동향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 결합 및 데이터 점유 등을 통해 디지털 시장 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신생 기업 또는 경쟁 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sup>108)</sup> 이로 인해, 최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국의 입법에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은 미국 기반의 빅테크 기업들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하에 유럽연합에서 먼저 시작되어,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에서의 입법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미국에서도조차도 최근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점차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은 크게 1) 경쟁 촉진 및 독점 규제(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일정한 행위를 남용행위로 금지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107) 제5차 워크숍 자료집, 주) 88, 9-10쪽.

108)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초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각종 서비스나 혜택 등을 제공하여 많은 수의 이용자들을 확보한 다음, 개인정보 및 소비성향 등에 관한 데이터 등 이용자들로부터 얻은 정보의 축적과 온라인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에 고착되게 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그러한 시장경쟁력을 기반으로 하여 광고수익의 독점, 경쟁 기업 또는 신생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해 여러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플랫폼 이용자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김지현, “빅테크 기업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1-21호(통권 제170호), 국회도서관(2021.08.24.), 1쪽.

포함), 2) 과세를 통한 규제(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3) 콘텐츠 관리 및 투명성 확보 의무 부과(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일반 온라인 플랫폼보다 강화된 콘텐츠 관리 및 투명성 확보 의무 부과)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 측면에서 볼 때 각국의 입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sup>109)</sup>

## 1.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sup>110)</sup>(이하 “EU 플랫폼 규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법안」과 「디지털 시장법안」을 유럽연합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의 형식으로 제안하였다.

### (1) 「EU 플랫폼 규칙」

유럽연합은 2019년 6월에 「EU 플랫폼 규칙」<sup>111)</sup>을 제정하였고, 동 규칙은 2019년 8월에 발효되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아마존, 이베이, 구글과 같은 온라인 중개,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유럽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과의 계약관계에서 동 규칙이 정하고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동 규칙은 불공정행위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용약관의 내용을 통해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순위(정렬순서) 및 차별 취급에

109) 김지현, 주) 108, 1-2쪽.

110)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R1150&from=EN> (last visited Oct. 15, 2021).

111) 온라인 플랫폼 계약조건(이용약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순위 결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 등에 적용되는 투명성 원칙을 정하고 있는 동 규칙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혁신 주도적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려는 최초의 입법적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김윤정 외, 주) 23, 171쪽.

관하여 규정하면서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보다는 검색엔진에 대해 더 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sup>112)</sup>

동 규칙에서는 1) 서비스의 제한·정지 및 중단의 금지, 2) 이용약관의 투명한 공개 및 변경 통지, 3) 내부 불만 처리시스템의 구축, 4) 검색순위 결정 방식의 공개, 5) 데이터의 수집·이용 및 공유에 관한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에서와 같다.

---

112)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자료집, 주) 62, 75쪽.

&lt;표-13&gt; 온라인 중개 서비스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규칙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서비스의 제한, 정지 및 중단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명확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정지하거나 중단할 수 없음</li> <li>서비스 제한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30일 전)에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두어야 함</li> </ul>
약관의 투명한 공개 및 변경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약관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되어야 함</li> <li>이용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적어도 15일 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li> </ul>
내부 불만 처리시스템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플랫폼은 기업이용자가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불만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불만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보장하여야 함</li> <li>중재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여야 함</li> <li>기업, 이용자 단체는 플랫폼이 위반행위를 중단하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li> </ul>
검색 순위 결정 방식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켓플레이스와 검색 엔진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주요 매개 변수(알고리즘)를 공개하여 판매자가 자신의 입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함</li> <li>마켓플레이스 제공자이자 해당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자이기도 한 온라인 플랫폼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li> </ul>
데이터의 수집·이용 및 공유에 관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플랫폼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공개하여야 하며, 특히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공개하여야 함</li> <li>해당 데이터가 개인정보일 경우 GDPR의 규정도 준수하여야 함</li> </ul>

출처: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안의 주요 내용 분석(이창범), 7쪽[<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latform-business-trading-practices> 인용].

동 규칙은 투명성 등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유럽연합 개별 회원국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디지털 서비스법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15일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사업자의 책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안하였다.<sup>113)</sup> 동 법안은 규제 대상을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분하여 후자로 갈수록 강화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114)</sup>

<표-14> 디지털서비스법 적용 사업자 유형별 의무

구 분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투명성 보고	○	○	○	○
기본권을 충분히 고려한 서비스 이용 조건	○	○	○	○
명령에 따른 회원국 규제당국과의 협력	○	○	○	○
컨택트 포인트 (필요시 법적 대리인)	○	○	○	○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제공의무		○	○	○
trusted flaggers <sup>115)</sup>			○	○
구 분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잘못된 통지에 대한 절차 및 재통지			○	○

113) 김현수·전성호,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20-11(2020), 4쪽.

114) 김현수·전성호, 주) 113, 4쪽.

써드파티 공급업체의 자격 확인 “사업이용자의 추적”			○	○
이용자에 대한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			○	○
범죄행위 신고			○	○
리스크 관리 의무 및 규정 준수 책임자				○
외부의 리스크 감사 및 공공책임성				○
추천시스템의 투명성 및 정보접근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
규제당국 및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공유				○
행동강령				○
위기대응 협력				○

출처: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김현수·전성호), 7쪽.

### (3) 「디지털 시장법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15일 최종 이용자와 기업 이용자 모두가 경쟁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완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제한적인 경쟁의 가장 두드러진 발생을 해결함으로써 플랫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시장법안」을 제안하였다.

동 법안은 ‘게이트 키퍼’<sup>116)</sup>와 관련된 문제들이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 하에, 동 법안은 게이트 키퍼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115) trusted flaggers란 신청절차를 통해 승인된 자원봉사자가 약관 또는 내부지침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사업자는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하여 콘텐츠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수·전성호, 주) 113, 7쪽.

116)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고객을 상대로 하여 하나 이상의 중요한 게이트웨이를 운영하며, 운영에 있어서 확고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기대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자를 말한다.

동 법안이 「EU 플랫폼 규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EU 플랫폼 규칙」상의 용어와 투명성 및 공정성의 원칙이 동 법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동 법안은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117)</sup>

동 법안에서는 게이트 키퍼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안 <sup>118)</sup>	
게이트 키퍼의 금지행위	<p>(1) 데이터의 결합 및 이용 등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이트 키퍼가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집하거나 써드파티 서비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li> <li>•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에 따른 최종 사용자(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결합할 목적으로 최종 이용자를 게이트 키퍼 자신의 다른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li> <li>• 기업 이용자의 최종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주요 플랫폼 서비스의 기업 이용자에 의해 생성되거나 주요 플랫폼 서비스의 기업 이용자 또는 기업 이용자의 최종 이용자에 의해 제공되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데이터를 해당 기업 이용자와의 경쟁에서 이용하는 행위</li> </ul> <p>(2) 이용 강요 및 끼워팔기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이용자가 게이트 키퍼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이트 키퍼의 신원확인 서비스를 이용, 제공, 상호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li> <li>• 게이트 키퍼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접근, 가입, 등록을 조건으로 기업 이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게이트 키퍼의 다른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li> </ul> <p>(3) 삭제, 탈퇴, 이전 등의 제한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사용자가 게이트 키퍼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설치했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li> <li>• 최종 사용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게이트 키퍼의 운영 체제를 이용해 액세스할 수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로</li> </ul>

117) 이창범,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안의 주요 내용 분석”, GLOBAL LEGAL ISSUES 21-17-①, 한국법제연구원, 6쪽.

디지털 시장법안 <sup>118)</su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환하고 등록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p> <p>(4) 경쟁 사업자 배제(거래제한)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이용자가 게이트 키퍼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다른 가격 또는 조건으로 써드파티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동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li> <li>• 기업 이용자가 게이트 키퍼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알게 된 최종 이용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를 하고, (계약 체결을 위하여) 최종 이용자가 게이트 키퍼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li> </ul> <p>(5) 부당한 자사 우대행위(특혜)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써드파티가 제공하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게이트 키퍼가 스스로 제공하거나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검색순위 결정에 있어서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li> <li>• 게이트 키퍼가 운영하는 앱스토어에 기업 이용자를 위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약관조항을 적용할 것</li> </ul> <p>(6) 당국에 대한 민원제기 제한행위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이용자가 게이트 키퍼의 관행에 대해서 관계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비밀보호조항 등을 근거로 막거나 제한하는 행위</li> </ul>
게이트 키퍼의 조치의무	<p>(1) 데이터의 이동, 접근, 공유 등의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이용자 또는 최종 이용자의 활동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이동을 제공하고, 특히 지속적인 실시간 액세스를 포함하여 최종 이용자가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에 따른 데이터 이동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li> <li>• 기업 이용자 또는 그가 인정한 써드파티에게 그들이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생성한 데이터 또는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이용자가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생성한 데이터에 대하여 무료로, 고품질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액세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li> <li>• 써드파티 온라인 검색 엔진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유·무료 검색과 관련하여 게이트 키퍼의 온라인 검색 엔진에 최종 이용자가 남긴 조회, 클릭, 페이지뷰 등의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li> </ul> <p>(2) 앱, OS 등의 접근 및 상호운용 보장</p>

디지털 시장법안 <sup>118)</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이용자가 게이트 키퍼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업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콘텐츠, 구독서비스, 기능, 그 밖의 아이템에 게이트 키퍼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 상에서 기업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li> <li>• 게이트 키퍼의 운영 체제를 이용하거나 게이트 키퍼의 운영 체제와 상호 운용되는 써드파티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스토어를 설치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러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스토어가 해당 게이트 키퍼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 이외의 수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li> <li>• 게이트 키퍼가 보조 서비스 제공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운영 체제 및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에 액세스하고 상호운용 하는 것을 기업 이용자와 보조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허용할 것</li> </ul> <p>(3) 광고비용, 광고실적 측정 정보 등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주와 퍼블리셔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광고와 관련하여 그들이 지불한 가격에 관한 정보와 퍼블리셔에게 해당 광고의 퍼블리싱 및 광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불한 금액 또는 보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li> <li>• 광고주 및 퍼블리셔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이트 키퍼의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광고 인벤토리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것</li> </ul> <p>(4) 광고비용, 광고실적 측정 정보 등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이트 키퍼는 「유럽연합 합병규칙」(Regulation No 139/2004) 제3조에 따라 다른 주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서비스 집중(인수·합병 등)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li> <li>• 게이트 키퍼는 게이트 키퍼로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되는 소비자 프로파일링 기법(대상 데이터, 처리 목적,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보고하여야 함</li> </ul>

118) 이창범, 주) 117, 16-21쪽.

## 2. 일본

일본의 경우 「독점금지법」<sup>119)</sup>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 및 우월적 지위 남용의 문제 등에 대응해오다가 사후 규제적인 측면이 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거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2020년 5월 27일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을 제정, 같은 해 6월 3일 공포(2021.02.01. 시행)하였다.<sup>120)121)122)</sup>

동 법은 “디지털 플랫폼”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에 의해 구축되어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고, 제공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일반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관계를 이용하며,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품 등을 제공하는 이용자(이하 “제공 이용자”라 한다)와 일반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장(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 중에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사업 구분 및 규모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에 의해 지정된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이하 “특정 플랫폼 제공자”라

119) 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四号), <https://www.jftc.go.jp/dk/guideline/lawdk.html> (최종방문: 2021.10.15.).

120) 김잔디, “일본 「디지털플랫폼법」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논의 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021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2021.06.30.), 62-63쪽 참조.

121) 동 법률의 제정에 앞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몰과 앱 스토어를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거래 관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令和2年 法律 第38号))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몰에서의 사업자 간 거래와 앱 스토어에서의 사업자 간 거래 모두에서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일방적인 약관의 변경이나 출점·출품의 저절, 수수료 인상, 특정 OS를 개발한 사업자 외의 앱 스토어 이용 제한 등으로 인해 이용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公正取引委員会, (令和元年10月31日)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オンラインモール・アプリストアにおける事業者間取引)について,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oct/191031\\_2.html](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oct/191031_2.html) (최종방문: 2021.10.15.).

122) 경제산업성·공정거래위원회·총무성 산하에 설치된 거래환경검토회는 법령 정비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독점금지법」에 따른 사후규제의 집행(배제조치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부과 등)은 그 특성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의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독점금지법」을 보완하여 디지털 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촉진하는 규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규율 방식으로 자율규제의 자주성·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그 한계를 정부가 보완하는 ‘공동규제’를 제안하였다. 강영기,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 법제 주요 내용”, 최신외국법제정보 2020 제4호, 한국법제연구원(2020.10.15.), 110쪽.

한다)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2조 및 제4조).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정령은 사업 구분과 규모에 관하여 ‘국내 매출액이 3,000억엔 이상인 판매 종합 온라인 몰’과 ‘국내 매출액이 2,000억엔 이상의 앱스토어’로 규정하고 있고,<sup>123)</sup> 2021년 4월 1일 판매 종합 온라인 몰 중에서는 아마존 재팬, 라쿠텐, 야후가 특정 플랫폼 제공자로, 앱스토어 중에서는 애플 및 아이튠스, 구글이 각각 동 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특정 플랫폼 제공자로 지정되었다.<sup>124)</sup>

동 법은 1)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 플랫폼 제공자에게 플랫폼 제공 조건을 공시하도록 하고(법 제5조), 2) 제공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상호이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7조), 3) 특정 플랫폼 제공자가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기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서로 제출하도록(법 제9조) 규정하고 있다.<sup>125)</sup>

이에 따라, 특정 플랫폼 제공자는 ① 플랫폼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 ② 제공 이용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다른 유료 서비스의 이용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③ 검색 표시의 순위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사항(광고비용 기타 금전 지불이 순위 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취지를 포함), ④ 제공 이용자로부터 취득·사용하는 상품 등 제공 데이터(상품 등의 매출액 추이 등)의 내용 및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조건, ⑤ 자신이 보유하는 상품 등 제공 데이터에 대한 제공 이용자의 취득 또는 다른 사람에게의 제공 가능 여부와 그 내용, 방법 및 조건, ⑥ 제공 이용자의 고충의 신고 및 협의 신청 방법, ⑦ 그 밖에 플랫폼의 제공 조건 중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123) 經濟産業省,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事業の区分及び規模を定める政令」及び「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20/01/20210126002/20210126002.html> (최종방문: 2021.10.15.).

124) 經濟産業省,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規制対象となる事業者を指定しました(2021.04.01.), <https://www.meti.go.jp/press/2021/04/20210401003/20210401003.html> (최종방문: 2021.10.15.).

125)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강영기, 주) 122, 113-121쪽 참조.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특정 플랫폼 제공자가 이상의 플랫폼 제공 조건을 공시하지 않으면, 경제산업대신은 행정조치로서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법 제6조제1항),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법 제6조제4항),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23조).

**<표-15>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의 구성**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조치 등	제4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지정
	제5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 조건 등의 공시
	제6조	공개에 관한 권고, 명령 등
	제7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
	제8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 등
	제9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에 의한 보고서 제출, 평가 등
	제10조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신고 등
	제11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 지정의 취소
	제12조	보고 및 검사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 청구
	제14조	적용제외
	제15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6조	정령의 수립 등
잡칙	제17조	다른 정령과의 관계
	제18조	경과조치
	제19조	송달해야 할 서류
	제20조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21조	공시송달
	제22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벌칙	제23조	벌금

	제24조	벌금
	제25조	양벌규정

### 3. 미 국

「셔먼법」(Sherman Act) 제1조 및 제2조,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7조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부당공동행위, 독점력의 남용 및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법률이나 규칙의 수시 개정을 통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에서의 경쟁당국의 심결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법리를 발전시켜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sup>126)</sup> 이처럼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해 왔으며, 독점금지법상의 포괄적인 규정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 6월 11일 현행 독점금지법의 내용이나 미국의 전통적인 규제방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안(이하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이라 한다)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미국 하원에 상정되었으며, 2021년 6월 25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하원 전체 통과를 앞두고 있어 동 법안이 향후 실제 입법으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 내 빅테크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없이 시장의 독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과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 이어지자,<sup>127)</sup>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구글,

126) 최창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체계의 비교법 연구 -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2020.04.), 330-331쪽.

127) 2020년 9월 24일 Consumer Reports가 발표한 설문조사(Platform Perceptions: Consumer Attitudes on Competition and Fairness in Online Platforms)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의 1) 85%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에 대해 저장하는 정보의 양에 대해 정도는 다르지만(매우 또는 다소) 우려하고 있고, 81%는 온라인 플랫폼이 보다 더 종합적인 소비자 프로파일을 구축하기 위해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 및 보유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2) 58%는 쇼핑이나 정보 검색에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때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검색결과를 얻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3) 79%는 빅테크 인수 및 합병이 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을 부당하게 훼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 60%는 중요한 데이터나 연락처를 분실하지 않고 플랫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여 2020년 10월 약 16개월간에 걸친 조사 끝에 이들 기업이 독점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1)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회복, 2) 독점금지법의 강화, 3) 반독점 집행의 제고를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sup>128)</sup>을 도출하여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기초하여 미국 하원이 마련하여 제시한 입법 의제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중의 일부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이다.<sup>129)</sup>

동 법안은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안」(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간 전환이 쉬어지도록 의무적인 상호호환성 요건 도입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use Committee on Judiciary, “Press Release: Judiciary Antitrust Subcommittee Investigation Reveals Digital Economy Highly Concentrated, Impacted By Monopoly Power”, October 6, 2020, manuscript at 12, at <https://judiciary.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429> (last visited Oct. 15, 2021).

128)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회복
  - 지배적 플랫폼의 인접 사업 분야 진출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분리 및 금지
  - 차별금지 의무 - 지배적 플랫폼은 자사 우대행위를 금지하고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함
  - 상호호환성 및 데이터 이동성 - 지배적 플랫폼은 자사의 서비스를 다양한 네트워크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들 간에 콘텐츠 및 정보가 쉽게 이동될 수 있게 하여야 함
  - 지배적 플랫폼의 장래 인수합병에 대한 추정적 금지
  - 지배적 플랫폼의 인접 사업 분야 진출을 막기 위한 구조적 분리 및 금지
  -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의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사용하는 계약관행을 금지하고 지배적 플랫폼에 의존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해야 함
2. 독점금지법의 강화
  - 「클레이트법」 제7조 강화 - 추정 및 명확한 기준 원칙 복원, 최초 기준의 복원 및 신규 경쟁업체의 보호, 수직적 합병에 대한 법률 강화
  - 「셔먼법」 제2조 강화 - 지배력 남용 금지 도입 및 악탈적 가격 책정, 필수시설 거부, 거래 거부, 끼워팔기, 반경쟁적 자사우대 등의 명확한 금지
  - 판례법상의 문제가 있는 선례 무효화 등 집행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치 이행
3. 반독점 집행의 제고
  - 독점금지법 및 그 집행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감독 권한의 회복
  - 연방 반독점기관의 권한을 최대한 복원 - “불공정 경쟁방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제재금 및 다른 구제조치 활성화,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기업인수 합병에 관한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 반독점기관의 공공 투명성 및 책임 강화, 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정기적 소급 검토, 회전문 인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금지, 연방 거래위원회 및 반독점기관에 대한 예산 증액
  - 민사집행 강화 - 강제 중재 조항, 집단소송 형성에 대한 제한, “반독점 피해”에 대해 사법적으로 형성된 기준, 강화된 변론 기준 등 걸림돌 제거를 통한 사적 집행 강화. Id. at 20-21.

129) 김남우, “미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동향”, 최신외국정보 2021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21.08.31.), 114-115쪽.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안」(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안」(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법률안」(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그리고 「인수 합병 신청 수수료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안」(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 이외에도, 2021년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sup>130)</sup>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의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규제 강화의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틀을 넘어선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sup>131)</sup> 뿐만 아니라, 2021년 5월 27일에는 알고리즘 프로세싱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차별적 사용을 방지하고 알고리즘 프로세스 및 콘텐츠 제한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안」(Algorithmic Justice and Online Platform Transparency Act)<sup>132)</sup>이, 그리고 2021년 8월 11일에는 소비자를 위해 앱 시장에서 게이트 키퍼의 지배력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픈 앱 시장에 관한 법률안」(Open App Markets Act)<sup>133)</sup>이 각각 미국 상원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어서 향후 플랫폼 기업 규제 입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30)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Actions (Jul. 9, 2021),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7/09/executive-order-on-promoting-competition-in-the-american-economy/> (last visited Oct. 15, 2021).

131)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장영신·강구상,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16(2021.08.19.), 6-11쪽 참조.

132) S. 1896 - Algorithmic Justice and Online Platform Transparency Act, <https://www.congress.gov/bills/117/congress/senate/bills/1896/text> (last visited Oct. 15, 2021).

133) S. 2710 - Open App Markets Act,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7/s2710> (last visited Oct. 15, 2021).

### (1)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안」<sup>134)</sup>의 주요내용

동 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하 “대상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sup>135)</sup>가 자신이 영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서의 지배력을 다른 사업에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안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적 이해상충’(unlawful conflicts of interests)을 야기하는 사업을 소유하거나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1)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대상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2) 대상 플랫폼에 대한 접근 또는 대상 플랫폼 상에서의 우선적 지위 또는 배치를 조건으로 이용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안 제2조제(a)항). 또한, 대상 플랫폼 이외의 사업 분야에 대한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소유·지배가 1) 신규 또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에 비해 자신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를 유리하게 하는 유인이나 능력 또는 2) 신규 또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유인이나 능력을 발생케 하는 경우에는 불법적 이해상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금지된다(안 제2조제(b)항).

동 법안이 규정하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민사제재금(전년도 전체 일 평균 미국 내 수입의 15% 또는 위법행위 기간 동안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거나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 일 평균 미국 내 수입의 30%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안 제3조).

134) H.R.3825 -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825/text?r=34&s=1> (last visited Oct. 15, 2021).

135)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인 1)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소가 제기되기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온라인 플랫폼 상의 미국 기반 활성 사용자가 월 5천만 명 이상 또는 미국 기반 활성 이용 사업자가 월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2)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소가 제기되기 직전 2년 기간 중의 연간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3)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제공을 위한 핵심 거래상대방인 온라인플랫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로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만이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한다.

동 법안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지위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행위적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안들과는 달리, 그러한 행위적 금지를 강제하기 위한 구조적 금지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36)</sup> 때문에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자사의 플랫폼에 자체 제작상품(아마존 베이직스)을 판매하고 있는 아마존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플랫폼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애플 등의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37)</sup>

<표-16> 플랫폼 독점 증식에 관한 법률안\*

제117대 미국 연방의회  
제1회기

H.R. 3825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플랫폼 및 기타 특정 사업을 겸업하거나 지배하여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도모함.

미국 하원에서  
2021년 6월 11일

(텍사스주 Gooden, Cicilline, Buck 및 Nadler 의원과 공동으로) Jayapal 의원이 다음 법안을 발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플랫폼 및 기타 특정 사업을 겸업하거나 지배하여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136) 김남우, 주) 129, 119쪽.

이 법은 미합중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제정한다.

### Section 1. 약칭

이 법은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으로 인용 될 수 있다.

### Section 2. 불법적 이해상충

(a) 위반행위—Subsection 6(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된 날 현재,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대상 플랫폼 이외의 사업 분야에서 수익권을 소유, 지배 또는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다.

- (1)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대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상 플랫폼
- (2) 대상 플랫폼이 사업 이용자에게 대상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또는 대상 플랫폼 상에서 사업 이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우선적 지위 또는 배치를 조건으로 구매하거나 사용을 요구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플랫폼이나
- (3) 이해상충을 발생시키는 대상 플랫폼

(b) 이해상충—본 section에 따라 “이해상충”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포함한다.

- (1)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 플랫폼 이외의 사업 분야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리고
- (2) 그 사업 분야를 대상 플랫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여 대상 플랫폼이 다음과 같은 유인 및 능력이 생기는 경우
  - (A)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 자신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를 경쟁 사업자나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 신규 또는 잠재적 경쟁이 될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분야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유인이나 능력이나
  - (B) 경쟁 사업자 또는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 신규 또는 잠재적 경쟁이 될 사업자의 해당 대상 플랫폼 상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를 배제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유인이나 능력

### Section 3. 시행

(a) 일반사항—위원회, 법무부 및 subsection (d)에 따른 요건의 대상이 되는 주 법무부 장관은 연방거래위원회법 (15 미국연방법전 (U.S.C. 41 이하 참조) 또는 클레이튼법 (15 U.S.C. 12 이하 참조)의 모든 적용 용어 및 조항은 적절한 경우 이 법에 통합되거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 동일한 방법 그리고 동일한 관할, 권한 및 의무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 (b) 불공정 경쟁 방식—이 법의 위반은 연방거래위원회법 (15 U.S.C. 5) section 5에 따른 불공정 경쟁 방식으로 본다.
- (c) 민사 제재금—위원회 또는 법무부가 section 6(a)에 따라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한지 2년 이내에 이 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자의 임원, 이사, 동업자 또는 직원인 자 또는 개인은 다음 둘 중 더 큰 금액 이하의 금액을 미합중국에 민사 제재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 (1) 전년도 전체 일 평균 미국 내 수입의 15%이나
  - (2) 위법 행위 기간 동안 위법 행위의 영향을 받거나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의 전체 일 평균 미국 내 수입의 30%.
- (d) 위원회 독립 소송 권한—대상 플랫폼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미국의 지방 법원에서 그 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지명하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명의로 민사 소송을 개시할 수 있으며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Section 4. 이사회 회원자격 및 기타 서비스 제한

- (a) 일반사항—대상 플랫폼의 임원, 이사, 대리인을 포함한 직원, 대표 또는 계약업자인 개인이나 대상 플랫폼에 지배권을 가진 개인은 종전 특수 관계인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 대표 또는 계약업자를 포함한 기타 기관 관계 당사자로서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 (b) 서비스 종료—온라인 플랫폼이 subsection 6(a)에 따라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되는 시점에 subsection (a)를 위반하는 서비스를 가진 개인은 실행 가능한 한 어떤 경우라도 온라인 플랫폼이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60일 기한 종료 이후에 그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 Section 5.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반독점법”이란 클레이튼법 section 1(a) (U.S.C Title 15, Section 12) 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2) “수익권”이란 개인과 관련하여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그 개인의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3) “위원회”란 연방거래위원회를 말한다.
- (4) “지배”란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A) 해당 개인의 주식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 (B) 해당 개인의 이익의 25% 이상의 권리를 갖는 경우
  - (C) 해당 개인의 해산 시 개인의 자산 25% 이상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
  - (D) 해당 개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의 25% 이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경우

- (E) 해당 개인이 신탁인 경우 신탁관리자의 25% 이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경우, 또는
- (F) 해당 개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5) “대상 플랫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 (A) Section 6(a)에 따라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이나
- (B) 다음의 온라인 플랫폼
- (i) Section 6(a)에 따라 위원회 또는 법무부의 지정을 받은 당시나 그 지정 이전 12 개월 기간 중 또는 이 법의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 제출 전 12개월 기간 중
- (I) 해당 온라인 플랫폼 상에 미국 기반 활성 사용자가 월 50,000,000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나
- (II) 해당 플랫폼 상 미국 기반 활성 사업 이용자가 월 100,000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 (ii) Section 6(a)에 따라 위원회 또는 법무부의 지정을 받은 당시나 그 지정 이전 12 개월 기간 중 또는 이 법의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 2년 기간 중의 연간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600,000,000,000 달러를 초과하는 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 (iii)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을 위한 핵심 거래상대방인 온라인 플랫폼
- (6) “대상 플랫폼 사업자”란 대상 플랫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 (7) “핵심 거래상대방”이란 다음을 제한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능력을 가진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 (A) 사업 이용자가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 접근이나
- (B) 사업 이용자가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이용자가 필요한 도구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 (8) “사업 이용자”란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기 위해 대상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인 자를 말한다.
- (9) “종전 특수 관계인”이란 section 3에 명시된 제휴 종결 전에 대상 플랫폼이 소유하거나 지배했던 자를 말한다.
- (10) “온라인 플랫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 디지털 단말기,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 (A) 사용자가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거나 플랫폼의 다른 콘텐츠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서비스

(B) 소비자 또는 플랫폼이 지배하지 않는 사업자 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판매, 구매, 지불, 또는 배송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또는

(C) 대량의 정보에 접근 또는 이를 표시하는 이용자 검색 또는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11) “자”란 클레이튼법 section 1(a) (15 U.S.C. 12)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6. 이행

(a) 대상 플랫폼 지정—

(1) 이 법을 이행 및 집행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법무부는 독립체가 대상 플랫폼인지 여부를 지정해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Section 5(5)(B)(i) 내지 (iii)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근거로

(B) 지정서를 교부하고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하며

(C) 위원회 또는 법무부가 subsection (b)에 따라 그 지정을 해지하지 않는 한 대상 플랫폼에 대한 지배 또는 소유권의 변화 여부와 상관없이 교부일로부터 10년 동안 적용 된다.

(b) 대상 플랫폼 지정의 해지—위원회 또는 법무부는

(1)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더 이상 핵심 거래상대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위원회 또는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subsection (a)에 따른 대상 플랫폼 지정이 10년 기간 만료 전 해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 Paragraph (1)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3) Paragraph (1)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하기 전 적절하다면 위원회 또는 법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ection 7. 위헌심사

(a) 일반사항—이 법 section 6(a), 미합중국 지방 법원에서 발부한 최종 명령, 또는 행정 재결 판결에 따라 발부된 위원회의 최종 명령에 따라 대상 플랫폼 지정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그 지정 또는 명령 발부 후 30일 이내에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 법원에 그 지정 또는 명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b) 조사결과 처리—이 법 section 6(a)에 따른 대상 플랫폼의 지정 또는 위원회의 최종 명령의 사법 심사절차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위원회의 또는 법무부 차관의 조사결과는 증거가 뒷받침 될 경우에 한해 확정적이다.

Section 8. 해석규칙

이 법의 어떤 조항도 법무부장관 또는 반독점법, 연방거래위원회법 (15 U.S.C. 45), 또는 다른 법의

어떤 조항에 따른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어떠한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Section 9. 분리규정

이 법의 어떤 조항 또는 그 조항을 특정한 자 또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나더라도 이 법의 나머지 조항과 이 법의 나머지 조항을 특정한 자 또는 상황에 적용에는 그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번역자: 송승연(프리랜서 번역사)

## (2)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안」<sup>138)</sup>의 주요내용

동 법안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한 취득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안에 따라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상업 또는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경쟁 사업자의 주식, 자본금,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된다(안 제2조제(a)항). 다만,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 대상 기업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대상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들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 제2조제(b)항).

동 법안은 잠재적 경쟁자를 상대로 하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인수합병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동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인수합병의 대표적인 예로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및 인스타그램 인수합병을 들 수 있다.<sup>139)</sup>

137) kotra 해외시장뉴스, “美 하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5개 발의”(2021.07.12.),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244&dataIdx=189301> (최종방문: 2021.10.15.).

138) H.R.3826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826/text?r=5&s=1> (last visited Oct. 15, 2021).

**<표-17>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안\***

제117대 미국 연방의회  
제1회기

H.R. 3826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특정 취득을 위법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도모함.

미국 하원에서

2021년 6월 11일

(Buck, Cicilline, Nadler 및 텍사스의 Gooden 의원과 공동으로) Jefferies 의원이 다음 법안을 발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안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특정 취득을 위법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은 미합중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제정한다

Section 1. 약칭

이 법은 “2021년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으로 인용할 수 있다.

Section 2. 불법적 취득

(a) 위반사항—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위법이다.

- (1) 상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에 영향을 주는 기타 행위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의 주식이나 기타 주식 자본의 전체 또는 일부
- (2) 상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에 영향을 주는 기타 행위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의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

(b) 예외— 취득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그 취득은 subsection (a)에 따른 위법이 아니다.

139) 장영신·강구상, 주) 131, 13쪽.

- (1) 해당 취득이 클레이트법 section 7A(c)에 명시된 거래이거나
- (2) 취득한 자산 또는 취득된 주식의 발행인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A)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대상 플랫폼 또는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
  - (B)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해당 대상 플랫폼 또는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규 또는 잠재적인 경쟁을 구성
  - (C) 해당 대상 플랫폼 상에서 제공하거나 해당 대상 플랫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대상 플랫폼 또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위를 높이거나 강화하거나
  - (D) 해당 대상 플랫폼 상에서 제공하거나 해당 대상 플랫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대상 플랫폼 또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그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거나 강화.
- (c) 이용자 관심—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을 위한 신규 경쟁 또는 잠재적 경쟁에는 이용자의 관심을 위한 경쟁을 포함한다.
- (d) 데이터의 역할—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추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취득은 그 자체로 대상 플랫폼의 시장 지위를 높이거나,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Section 3. 정의

- (a) “반독점법”이란 클레이트법 section 1(a) (U.S.C Title 15, Section 12) 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b) “위원회”란 연방거래위원회를 말한다.
- (c) “지배”란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개인의 주식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 (2) 해당 개인의 이익의 25% 이상의 권리를 갖는 경우
  - (3) 해당 개인의 해산 시 개인의 자산 25% 이상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
  - (4) 해당 개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의 25% 이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경우
  - (5) 해당 개인이 신탁인 경우 신탁관리자의 25% 이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경우이거나
  - (6) 해당 개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d) “대상 플랫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 (1) Section 4(a)에 따라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이나
  - (2) 다음의 온라인 플랫폼
    - (A) Section 6(a)에 따라 위원회 또는 법무부의 지정을 받은 당시에나 그 지정 이전 12 개월 기간 중 또는 이 법의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 제출 전 12개월 기간 중
      - (i) 해당 온라인 플랫폼 상에 미국 기반 활성 사용자가 월 50,000,000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나

- (ii) 해당 플랫폼 상 미국 기반 활성 사업 이용자가 월 100,000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 (B) Section 6(a)에 따라 위원회 또는 법무부의 지정을 받은 당시나 그 지정 이전 12 개월 기간 중 또는 이 법의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 2년 기간 중의 연간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600,000,000,000 달러를 초과하는 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 (C)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을 위한 핵심 거래상대방인 온라인 플랫폼
- (e) “대상 플랫폼 사업자”이란 대상 플랫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 (f) “핵심 거래 상대방”이란 다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능력을 가진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 (1) 사업 이용자가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 접근이나
  - (2) 사업 이용자가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이용자가 필요한 도구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 (g) “사업 이용자”란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기 위해 대상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인 자를 말한다.
- (h) “온라인 플랫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 디지털 단말기,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 (1) 사용자가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거나 플랫폼의 다른 콘텐츠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서비스
  - (2) 소비자 또는 플랫폼이 지배하지 않는 사업자 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판매, 구매, 지불, 또는 배송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이거나
  - (3) 대량의 정보에 접근 또는 이를 표시하는 이용자 검색 또는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 (i) “자”란 클레이튼법 section 1(a) (15 U.S.C. 12)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4. 이행

- (a) 대상 플랫폼 지정—
  - (1) 이 법을 이행 및 집행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법무부는 독립체가 대상 플랫폼인지 여부를 지정해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A) Section 3(d)(2)(A) 내지 (C)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근거로
    - (B) 지정서를 교부하고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하며
    - (C) 위원회 또는 법무부가 subsection (b)에 따라 그 지정을 해지하지 않는 한 대상 플랫폼에 대한 지배 또는 소유권의 변화 여부와 상관없이 교부일로부터 10

년 동안 적용 된다.

(b) 대상 플랫폼 지정의 해지.— 위원회 또는 법무부는

- (1)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더 이상 핵심 거래상대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위원회 또는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subsection (a)에 따른 대상 플랫폼 지정이 10년 기간 만료 전 해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 (2) Paragraph (1) 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 (3) Paragraph (1)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하기 전 적절하다면 위원회 또는 법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Section 5. 집행

(a) 집행 과정—위원회, 법무부 및 subsection (d)에 따른 요건의 대상이 되는 주 법무장관은 연방거래위원회법 (15 미국연방법전 (U.S.C. 41 이하 참조) 또는 클레이튼법 (15 U.S.C. 12 이하 참조)의 모든 적용 용어 및 조항은 적절한 경우 이 법에 통합되거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 동일한 방법 그리고 동일한 관할, 권한 및 의무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b) 불공정 경쟁 방식—이 법의 위반은 연방거래위원회법 (15 U.S.C. 5) section 5에 따른 불공정 경쟁 방식으로 본다.

(c) 위원회 독립 소송 기관.—대상 플랫폼이 이 법을 위반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미국의 지방 법원에서 그 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지명하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명의로 민사 소송을 개시할 수 있으며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d) 국가후견— 주 법무장관은 이 법의 위반에 관하여 해당 주의 이름으로 그 주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대리하여 해당 피고인 관할의 미합중국 지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section에서 정하는 구제 형식을 확보할 수 있다.

#### Section 6. 집행 지침서

(a) 일반 사항—이 법 제정일 이후 1년 이내에 위원회와 반독점부 차관보는 투명성을 도모하고 위반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의 집행기관과 관련한 정책 및 관행에 관한 개요를 담은 지침서를 공동으로 발령해야 한다.

(b) 업데이트— 위원회와 반독점부 차관보는 기관의 최신 정책 및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법 제정일로부터 4년마다 1회 이상 subsection (a)에 따라 발표된 공동 지침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c) 운영— 이 section에 따라 발표된 공동 지침서는 사람, 주 또는 지역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위원회, 법무부, 또는 사람, 주, 또는 지역이 지침에서 권고하는 방향으로 결속하

도록 운영되지 않는다.

#### Section 7. 피해자 소송

(a) 일반 사항— Subsection (b)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금지한 사항을 이유로 사업이나 재산 상 손해를 본 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거주하거나 대리인을 둔 지역의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소송하며 그 자가 입은 피해액의 3배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section에 따라, 법원이 그 기간 동안의 이자 보상이 사정상 정당하다고 하는 경우, 그 피해 당사자가 즉시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실제 피해액에 대해 반독점법에 따른 청구를 정하는 답변서 송달일 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이나 그 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해 단리로 보상할 수 있다. 이 section에 따라 어떤 기간 내의 이자 보상이 사정상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만을 고려해야 한다.

- (1) 피해당사자나 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주장 또는 항변을 하여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의도적으로 연기하기 위해 행동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보일만한 요소가 부족한지 여부
- (2) 관련 소송 과정에서 피해당사자나 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이 지연 행위에 대한 제재나 신속 처리를 규정하는 어떠한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법원 명령을 위반 했는지 여부와
- (3) 소송을 연기하거나 그 비용을 증가시키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

(b) 외국 정부 및 외국 정부의 기관에 지불해야 할 피해 금액.—

- (1) Paragraph (2)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외국 정부인 자는 subsection (a)에 따라 그 정부가 입은 실제 손해액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만회할 수 없다.
- (2) Paragraph (1)은 다음의 경우 외국 정부에 적용할 수 없다.
  - (A) 해당 소송이 이 section에 따른 주장의 주제가 되는 상업적 행동 또는 행위에 근거하는 사례에서 Title 28 section 1605(a)(2)에 따라 그 외국 정부가 면책권을 거부당한 경우
  - (B) 그 외국 정부가 동일한 소송에서 발생하는 주장에서 외국 정부로써의 그 지위를 근거로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항변을 포기하는 경우
  - (C) 그 외국 정부가 주로 상업적 활동에 관여한 경우와
  - (D) 그 외국 정부가 이 section에 따른 주장의 주제가 되는 상업적 행동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정부 자체 또는 다른 외국 정부를 위한 조달업체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 Section 8. 위헌심사

- (a) 일반사항—이 법 section 4(a), section 4(b)에 따라 대상 플랫폼 지정 해지 신청서에 대한 결정, 지방 법원에서 발효된 최종 명령, 또는 행정 재결 판결에 따라 발효된 위원회의 최종 명령에 따라 대상 플랫폼 지정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그 지정 또는 명령 발효 후 30일 이내에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 법원에 그 지정 또는 명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원할 수 있다.
- (b) 판결 처분— 이 법 section 4(a) 또는 위원회의 최종 명령에 따라 대상 플랫폼 지정에 대한 사법 심사 절차에서 증거에 입각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위원회 또는 법무부의 판결은 확정적이다.
- (c) 금지명령구제— 어느 누구든지 또는 회사, 법인이나 협회는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하여 손해이나 피해를 일으킬 위협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구제가 그 과정을 관장하는 규칙에 따라 형평법 상 법원이 허가하고, 부주의하게 허가된 금지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합의가 이행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손실 또는 피해로 인한 위협이 임박 하다고 보임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구제가 발효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에 대한 동일한 조건 및 원칙에 따라 그 당사자를 관할하는 미합중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금지명령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포함된 어 것도 미합중국을 제외한 어느 누구든지, 또는 회사, 법인 또는 협회에 Title 49 subtitle IV에 따른 육상교통위원회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일반 운수업자에 대한 금지명령구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이 section에 따라 원고가 대체로 승소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그 원고에 대해 합리적인 대리인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 Section 8. 해석 규칙

이 법의 어떤 조항도 법무부장관 또는 반독점법, 연방거래위원회법 (15 U.S.C. 45), 또는 다른 법의 어떤 조항에 따른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어떠한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Section 9. 분리규정

이 법의 어떤 조항, 이 법에 따른 개정 또는 그 조항이나 개정을 특정한 자 또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 나더라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개정의 나머지 조항 그리고 이 법 또는 개정의 나머지 조항을 특정한 자 또는 상황에 적용에는 그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번역자: 송승연(프리랜서 번역사)

### (3)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안」<sup>140)</sup>의 주요내용

동 법안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한 행위를 ‘불법적 차별 행위’(unlawful discriminatory conduct)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안은 1)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자신의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을 우대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의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3)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적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2조제(a)항).

그 밖에도, ① 대상 플랫폼 사업자 자신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해당 대상 플랫폼, 운영체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이용 사업자가 접근하거나 상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② 해당 대상 플랫폼 상에서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사용에 대한 우선적 지위 또는 배치를 부여하는 행위, ③ 이용 사업자나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해당 대상 플랫폼 상에서 얻어지거나 발생한 비공개 데이터를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행위, ④ 이용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나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해당 대상 플랫폼 상에서 발생한 상업적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 사업자가 그러한 데이터를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통제 밖에 있는 다른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상의 제한 또는 기술적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⑤ 해당 대상 플랫폼에 사전 탑재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자가 삭제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방해하거나 이용자를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 유인하거나 안내하는 기본 세팅을 이용자가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⑥ 이용 사업자가 사업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상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⑦ 해당 대상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 또는 순위 기능을 포함한 기타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대상 플랫폼 사업자 자신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을 다른 이용 사업자보다 우대하는 행위, ⑧ 이용

140) H.R.3816 -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816/text?r=43&s=1> (last visited Oct. 15, 2021).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 결정에 간섭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 ⑨ 이용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의 고객이나 이용자가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하는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호호환 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⑩ 주법 또는 연방법의 위반 행위 또는 잠재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이용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우려 제기에 대한 보복 행위 역시 동 법안에 따라 불법적 차별행위로 간주된다(안 제2조제(b)항).

동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적 차별 행위가 있는 경우,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민사 제재금(전년도 전체 일 평균 미국 내 수입의 15% 또는 불법적 차별 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불법적 차별 행위의 영향을 받거나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 일 평균 미국 내 수입의 30%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의 반환, 계약의 취소 및 변경, 환불, 불법이익의 환수 등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안 제2조제(f)항). 다만,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1) 자신의 행위가 이용사업자의 적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방해하여 경쟁과정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2) 자신의 행위가 주법 또는 연방법의 위반을 막기 위한 목적 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또는 다른 비공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목적에 맞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덜 차별적인 수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들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 제2조제(c)항).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된 동 법안은 구글의 다양한 차별적 사업 행위(검색편향 등)로 인해 불거진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sup>141)</sup>

<표-18>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안\*

제117대 미국 연방의회  
제1회기

141) 김남우, 주) 129, 118쪽.

H.R. 3816

대상 플랫폼의 특정 차별 행위가 위법임을 규정하고 그 외 다른 목적 등을 규정함.

미국 하원에서

2021년 6월 11일

(텍사스주 Gooden, Cicilline, Buck 및 Nadler 의원과 공동으로) Cicilline의원이 다음 법안을 발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 법안

대상 플랫폼의 특정 차별 행위가 위법임을 규정하고 그 외 다른 목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법은 미합중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제정한다.

#### Section 1. 약칭

이 법은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선택에 관한 법률— American Choices and Innovation Online Act”로 인용할 수 있다.

#### Section 2. 불법적 차별행위

(a) 위반행위— 상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에 영향을 주는 대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대상 플랫폼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이다.

- (1)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가 다른 사업 이용자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에 비해 유리한 대상 플랫폼
- (2)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와 비교하여 다른 사업 이용자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대상 플랫폼이나
- (3)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대상 플랫폼

(b) 기타 차별행위— 상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에 영향을 주는 대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 (1) 사업 이용자가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 자신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플랫폼, 운영 체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거나 상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방해
- (2)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해당 대상 플랫폼 상에서 그 대상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나 우선적 지위 또는 배치에 영향

- (3)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해 사업 운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 이용자나 그 고객의 행위로 인해 플랫폼 상에서 얻거나 발생한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
- (4) 사업 이용자가 그 사업 이용자나 그 고객의 행위로 인해 플랫폼 상에서 발생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사업이용자가 그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상 또는 기술적 제한
- (5) 대상 플랫폼 이용자가 해당 대상 플랫폼에 사전 탑재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대상 플랫폼 이용자가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 유인하거나 안내하는 기본 세팅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
- (6) 사업 이용자가 사업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상 플랫폼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대상 플랫폼 상의 하이퍼링크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
- (7) 해당 대상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 또는 순위 기능을 포함한 기타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 자신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를 다른 사업 이용자보다 더 우대
- (8) 사업 이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에 간섭하거나 제한
- (9) 사업 이용자 또는 그 사업 이용자의 고객 또는 이용자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호 운용하거나 연계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 그리고
- (10) 주 또는 연방 법에 대해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위반에 대해 법 시행 당국의 우려를 낳은 사업 이용자 또는 대상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보복

(c) 적극적 항변

- (1) 일반 사항—피고가 subsection (a) 또는 (b)에 명시된 행위가 다음과 같다고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 subsection (a)와 (b)가 적용되지 않는다.
  - (A) 그 행위가 사업 이용자의 적법 행위를 제한하거나 방해하여 경쟁 과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거나
  - (B) 그 행위가 제한적으로 조종되고, 덜 차별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거짓이 아니고 다음 어느 하나를 위해 필요했다.
    - (i) 연방 또는 주 법의 위반을 막거나 이를 준수하거나
    - (ii) 이용자 사생활이나 기타 비공개 데이터 보호
- (2) 적극적 항변의 이용가능성—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행위의 U.S.C Title 18 section 1030 위반 여부가 이 section에 따라 피고의 적극적 항변 입증 여부에 결정적이지 않다.

(d) 대상 플랫폼 지정—이 법을 이행 및 집행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법무부는 독립체가 대상 플랫폼인지 여부를 지정해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1) Section (f)(4)(i) 내지 (iii)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근거로
- (2) 지정서를 교부하고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하며

(3) 위원회 또는 법무부가 subsection (e)에 따라 그 지정을 해지하지 않는 한 대상 플랫폼에 대한 지배 또는 소유권의 변화 여부와 상관없이 교부일로부터 10년 동안 적용 된다.

(e) 대상 플랫폼 지정의 해지—위원회 또는 법무부는

(1)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더 이상 핵심 거래상대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위원회 또는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subsection (d)에 따른 대상 플랫폼 지정이 10년 기간 만료 전 해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2) Paragraph (1)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f) 구제조치—

(1) 민사 제재금—Subsection (a) 또는 (b)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대상 플랫폼 사업자는 민사 제재금을 미국이나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며 다음 둘 중 더 큰 금액 이하로 미국에 귀속된다.

(A) 전년도에 해당 사업자의 전체 미국 내 수익의 15%이나

(B) 해당 위법 행위 기간 동안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거나 대상이 되는 영업 분야에서 해당 운영자의 미국 내 수익의 30%. 이 민사 제재금은 미합중국 또는 위원회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환수될 있다.

(2) 추가 구제조치—이 subsection에서 규정하는 구제조항은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타 구제조항에 추가되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A) 배상; 계약 해지 및 개정; 환불; 재산 반환.—반독점부 차관보, 주정부 법무부 장관 및 법원은 소송이 발생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 계약 해지 또는 개정, 환급 또는 재산 반환을 명할 수 있다.

(B) 부당이득 환수.—반독점부 차관보 또는 위원회는 소송이 발행하는 위반행위의 결과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다.

(C) 명령—반독점부 차관보 또는 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을 방지, 억제 또는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형평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다.

(D) 이해상충—

(i) 이 법에 대한 위반이 해당 대상 플랫폼이 다수의 사업 분야를 병행하는 것과 관련한 이해상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사실 확인자(fact finder)가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분야의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ii)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이해상충”에는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는 이해상충이 포함된다.

(I)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그 대상 플랫폼 이외에 사업 분야를 보유하거나 지

배하는 경우와

(II) 그 사업 분야를 대상 플랫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여 대상 플랫폼이 다음과 같은 유인 및 능력이 생기는 경우

(aa)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 자신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를 경쟁 사업자나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 신규 또는 잠재적 경쟁이 될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유인이나 능력이나

(bb) 경쟁 사업자 또는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 신규 또는 잠재적 경쟁이 될 사업자의 해당 대상 플랫폼 상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분야를 배제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유인이나 능력

(3) 누범자— 사실 확인자가 대상 플랫폼이 이 법을 위반하는 양상이나 습벽을 보인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이 법의 위반 혐의를 제기한 고소장이 제출되기 12개월 이전 또는 이후 기간 동안 최고경영자가 받은 보상을 미국 국고로 몰수시키는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g)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독점법”이란 클레이튼법 section 1(a) (U.S.C Title 15, Section 12) 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사업 이용자”란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기 위해 대상 플랫폼을 이하거나 이용할 계획인 자를 말한다.

(3) “위원회”란 연방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대상 플랫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A) section 6(a)에 따라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이나

(B) 다음의 온라인 플랫폼

(i) Section 6(a)에 따라 위원회 또는 법무부의 지정을 받은 당시에 그 지정 이전 12 개월 기간 중 또는 이 법의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 제출 전 12개월 기간 중

(I) 해당 온라인 플랫폼 상에 미국 기반 활성 사용자가 월 50,000,000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나

(II) 해당 플랫폼 상 미국 기반 활성 사업 이용자가 월 100,000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ii) Section 2(d)에 따라 위원회 또는 법무부의 지정을 받은 당시에 그 지정 이전 12 개월 기간 중 또는 이 법의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 2년 기간 중의 연간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600,000,000,000 달러를 초과하는 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고

- (iii)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을 위한 핵심 거래상대방인 온라인 플랫폼
- (5) “대상 플랫폼 사업자”란 대상 플랫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 (6) “핵심 거래상대방”이란 다음을 제한 또는 방해하는 능력을 가진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A) 사업 이용자가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 접근하거나  
 (B) 사업 이용자가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이용자가 필요한 도구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 (7) “자”란 클레이튼법 section 1(a) (15 U.S.C. 12)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8) 데이터—  
 (A) 일반 사항— 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는 이 법을 이행 및 시행하기 위하여 미국연방법전 Title 5 Section 553에 따라 “데이터”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B) “데이터”란 대상 플랫폼이나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로, 그 대상 플랫폼, 경쟁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특정 이용자 또는 소비자와 연결되거나 합리적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9) “사업 이용자”란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기 위해 대상 플랫폼을 이용 또는 이용할 계획인 자를 말한다.
- (10) “온라인 플랫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 디지털 단말기,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A) 사용자가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거나 플랫폼의 다른 콘텐츠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서비스  
 (B) 소비자 또는 플랫폼이 지배하지 않는 사업자 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판매, 구매, 지불, 또는 배송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나  
 (C) 대량의 정보에 접근 또는 이를 표시하는 이용자 검색 또는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 (11) “지배”란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A) 해당 개인의 주식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B) 해당 개인의 이익의 25% 이상의 권리를 갖는 경우  
 (C) 해당 개인의 해산 시 개인의 자산 25% 이상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  
 (D) 해당 개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의 25% 이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경우  
 (E) 해당 개인이 신탁인 경우 신탁관리자의 25% 이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경우

이거나

(F) 해당 개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h) 시행—

- (1) 일반 사항—위원회, 법무부 및 subsection (d)에 따른 요건의 대상이 되는 주 법무부 장관은 연방거래위원회법 (15 미국연방법전 (U.S.C. 41 이하 참조) 또는 클레이튼법 (15 U.S.C. 12 이하 참조)의 모든 적용 용어 및 조항은 적절한 경우 이 법에 통합되거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 동일한 방법 그리고 동일한 관할, 권한 및 의무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 (2) 불공정 경쟁 방식—이 법의 위반은 연방거래위원회법 (15 U.S.C. 5) section 5에 따른 불공정 경쟁 방식으로 본다.
- (3) 위원회 독립 소송 권한.—대상 플랫폼이 이 법을 위반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미국의 지방 법원에서 그 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지명하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명의로 민사 소송을 개시할 수 있으며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4) 국가후견—주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의 위반에 관하여 해당 주의 이름으로 그 주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대리하여 해당 피고인 관할의 미합중국 지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section에서 정하는 구제 형식을 확보할 수 있다.

(i) 긴급 구제조치—

- (1) 위원회, 반독점부 차관보, 또는 주 법무장관은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120일 이내에 어떠한 행위를 취하거나 그 조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회, 반독점부 차관보 또는 주 법무장관이 다음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그 구제 조치를 허가해야 한다.
- (2)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취했다는 상당한 주장이 있고
- (3) 그 행위로 최소 한 개 업체가 해당 대상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된다.
- (4) 긴급 구제조치는 고소장 제출일로부터 120일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 (5) 법원은 이 section에 따라 구제 조치를 청한 위원회, 미합중국 또는 주 법무장관이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합리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을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입증하면 언제든지 긴급 구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 (6) 이 subsection의 어떠한 조항도 이 section의 subsection (h)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형평법적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위원회, 미합중국, 또는 주 법무장관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j) 소멸시효—이 section의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는 그 위반이 발생한 후 6년 이내에 개시될 수 있다.

- (a) 일반사항—이 법 section 2(d), 미합중국 지방 법원에서 발부한 최종 명령, 또는 행정 재결 판결에 따라 발부된 위원회의 최종 명령에 따라 대상 플랫폼 지정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그 지정 또는 명령 발부 후 30일 이내에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 법원에 그 지정 또는 명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b) 조사결과 처리—이 법 section 6(a)에 따른 대상 플랫폼의 지정 또는 위원회의 최종 명령의 사법 심사절차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위원회의 또는 법무부 참관의 조사결과는 증거가 뒷받침 될 경우에 한해 확정적이다.

#### Section 4. 디지털 시장국

- (a) 디지털 시장국 설립—실현가능 한 빨리, 그러나 이 법 제정일 이후 180일 이내에 연방 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위원회 내에 디지털 시장국을 설립해야 한다.
- (b) 지휘권—디지털 시장국의 장은 디지털 시장국 국장이 되며 다음과 같다.
  - (1)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 (2)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해야 한다.
- (c) 디지털 시장국 직원—디지털 시장국은 그 국의 기능,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법률, 기술, 경제, 연구 및 서비스 직원을 보유하거나 고용해야 한다.
- (d) 보고 요건—이 법의 제정일 이후 1년 이내에 디지털 시장국은 매년 직전 12개월 기간 동안의 디지털 시장국의 시행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하원 사법위원회와 상원 사법위원회에 발간하고 제출해야 한다.

#### Section 5. 시행 지침서

- (a) 일반 사항—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위원회와 반독점부 차관보는 투명성을 도모하고 위반행위를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의 시행 기관과 관련한 정책 및 관행에 관한 개요를 담은 지침서를 공동으로 발령해야 한다.
- (b) 업데이트—위원회와 반독점부 차관보는 기관의 최신 정책 및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마다 1회 이상 subsection (a)에 따라 발표된 공동 지침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 (c) 운영—이 section에 따라 발표된 공동 지침서는 사람, 주 또는 지역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위원회, 법무부, 또는 사람, 주, 또는 지역이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방향으로 결속하도록 운영되지 않는다.

#### Section 6. 피해자 소송

- (a) 일반 사항—Subsection (b)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금지한 사항을 이유로 사업이나 재산 상 손해를 본 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거주하거나 대리인을 둔 지역의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소송하며 그 자가 입은 피해액의 3배와 합리

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section에 따라, 법원이 그 기간 동안의 이자 보상이 사정상 정당하다고 하는 경우, 그 피해 당사자가 즉시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실제 피해액에 대해 반독점법에 따른 청구를 정하는 답변서 송달일 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이나 그 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해 단리로 보상할 수 있다. 이 section에 따라 어떤 기간 동안의 이자 보상이 사정상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만을 고려해야 한다.

- (1) 피해당사자나 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주장 또는 항변을 하여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의도적으로 연기하기 위해 행동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보일만한 요소가 부족하지 여부
  - (2) 관련 소송 과정에서 피해당사자나 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이 지연 행위에 대한 제재나 신속 처리를 규정하는 어떠한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 (3) 소송을 연기하거나 그 비용을 증가시키기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
- (b) 외국 정부 및 외국 정부의 기관에 지불해야 할 피해 금액.—
- (1) Paragraph (2)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외국 정부인 자는 subsection (a)에 따라 그 정부가 입은 실제 손해액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 (2) Paragraph (1)은 다음의 경우 외국 정부에 적용할 수 없다.
    - (A) 해당 소송이 이 section에 따른 주장의 대상이 되는 상업적 행동 또는 행위에 근거하는 사례에서 Title 28 section 1605(a)(2)에 따라 그 외국 정부가 면책권을 거부당한 경우
    - (B) 그 외국 정부가 동일한 소송에서 발생하는 주장에서 외국 정부로서의 그 지위를 근거로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항변을 포기하는 경우
    - (C) 그 외국 정부가 주로 상업적 활동에 관여한 경우와
    - (D) 그 외국 정부가 이 section에 따른 주장의 대상이 되는 상업적 행동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정부 자체 또는 다른 외국 정부를 위한 조달 업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 (c) 금지명령구제—어느 누구든지 또는 회사, 법인이나 협회는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하여 손해이나 피해를 일으킬 위협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구제가 그 과정을 관장하는 규칙에 따라 형평법 상 법원이 허가하고, 부주의하게 허가된 금지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합의가 이행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손실 또는 피해로 인한 위험이 임박 하다고 보임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구제가 발효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에 대한 동일한 조건 및 원칙에 따라 그 당사자를 관할하는 미합중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금지명령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포함된 어 것도 미합중국을 제외한 어느 누구든지, 또는 회사, 법인 또는 협회에 Title 49 subtitle IV에 따른 육상교통위원회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일반 운수업자에 대한 금지명령구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이 section에 따라 원고가 대체로 승소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그 원고에 대해 합리적인 대리인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 Section 7. 해석 규칙

이 법의 어떤 조항도 법무부장관 또는 반독점법, 연방거래위원회법 (15 U.S.C. 45), 또는 다른 법의 어떤 조항에 따른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어떠한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Section 8. 분리규정

이 법의 어떤 조항, 이 법에 따른 개정 또는 그 조항이나 개정을 특정한 자 또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 나더라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개정의 나머지 조항 그리고 이 법 또는 개정의 나머지 조항을 특정한 자 또는 상황에 적용에는 그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번역자: 송승연(프리랜서 번역사)

#### (4)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법률안」<sup>142)</sup>의 주요내용

동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및 이용 사업자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및 이용 사업자의 서비스 전환비용과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안은 소비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 어려워 기존 이용 플랫폼에 고착되기 때문에 플랫폼 간의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여 발의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 권익 보호 및 플랫폼 간의 서비스 상호호환성 강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143)</sup>

동 법안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대상 플랫폼 이용자에게 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이용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게 구조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해독이 가능한 형태의 투명하고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유지할 것

142) H.R.3849 -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849/text> (last visited Oct. 15, 2021).

143) 장영신·강구상, 주) 131, 14쪽.

을 요구하고 있으며(안 제3조제(a)항), 대상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이용자의 데이터를 전달받은 경쟁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는 취득한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고 데이터 또는 대상 플랫폼의 정보시스템에 보안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제(b)항).

동 법안은 또한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와 상호호환성을 촉진·유지하기 위하여 동 법의 규정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제3자가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4조제(a)항), 대상 플랫폼의 인터페이스에 접근하는 경쟁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는 자신이 취득, 처리 또는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데이터 또는 대상 플랫폼의 정보시스템에 보안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4조제(b)항).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1) 해당 대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거나 데이터 보안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2) 경쟁 사업자 또는 제3자의 접근이 가능케 하는 서비스의 상호호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대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민사제재금(전년도 전체 일 평균 미국 내 수입의 15% 또는 불법적 차별 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불법적 차별 행위의 영향을 받거나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 일 평균 미국 내 수입의 30%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익의 반환, 계약의 취소 및 변경, 환불, 불법이익의 환수 등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안 제10조).

**<표-19>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법률안\***

제117대 미국 연방의회  
제1회기

H.R. 3849

온라인 고객 및 사업자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며 전환비용 하락을 도모함.

미국 하원에서

2021년 6월 11일

(Owens, Cicilline, Buck 및 Nadler 의원과 공동으로) Scanlon 의원이 다음 법안을 발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법안

온라인 고객 및 사업자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며 전환비용 하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은 미합중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제정하였다.

#### Section 1. 약칭

이 법은 “2021년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법률-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of 2021)”으로 인용할 수 있다.

#### Section 2. 불공정 경쟁방식

사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에 영향을 주는 대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조합 또는 법인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라 공포된 표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법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Section 5(a)(1) (15 U.S.C. 45)를 위반하는 불공정 경쟁방식으로 본다.

#### Section 3. 이동성

(a) 일반사항 - 대상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또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그 지시에 따라 이용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해독 가능한 형식으로 투명하고 제3자가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포함)를 유지하여야 하고 그 형식은 Section 6(c)에 따라 공포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b) 데이터보안

(1) 일반사항 - 대상 플랫폼으로부터 복사된 이용자의 데이터를 전달받는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는 취득한 이용자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고, 데이터 또는 그 대상 플랫폼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을 방지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 - 이 Section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법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이 법 Section 9 및 10의 적용을 받는다.

(3) 접근종료 - 위원회는 경쟁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이 조 또는 이 법 Section 6(c)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표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상 플랫폼에

게 그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다.

- (c) 이동성의무 - Subsection (a)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플랫폼은 Section 6(c)에 따라 위원회가 공표하는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Section 4. 상호호환성

- (a) 일반사항 - 대상 플랫폼은 Section 6(c)에 따라 공표된 표준을 준수하는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와 상호호환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제3자가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포함)를 유지하여야 한다.

#### (b) 데이터 보안

- (1) 일반사항 - 대상 플랫폼의 상호호환 인터페이스에 접근하는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는 자신이 취득, 처리 또는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고, 이용자 데이터 또는 그 대상 플랫폼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을 방지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위반사항 - 이 Section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법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이 법 Section 9 및 10의 적용을 받는다.

- (3) 접근종료 - 위원회는 경쟁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이 조 또는 이 법 Section 6(c)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표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상 플랫폼에게 그 경쟁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와 상호호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c) 상호호환성 의무 - Subsection (a)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플랫폼은 Section 6(c)에 따라 위원회가 공표하는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d) 보안 및 프라이버시 표준 - 대상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 또는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위협을 처리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접근 시 준수할 프라이버시 및 보안표준을 이 법 Section 6(c)에 따라 위원회가 공표하는 표준에 부합하게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표준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 인터페이스 변경 금지

- (1) 위원회 승인 - 대상 플랫폼은 위원회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자사의 상호호환성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주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기술위원회와 협의 후 해당 변경이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상호호환성을 저해할 목적이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 (2) 예외 - 이용자 프라이버시 또는 보안에 즉각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보안취약성이나 다른 긴급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상 플랫폼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사의 상호호환성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주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변경은 그 보안취약성에 특화되어 있고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상호호환성을 저해할 목적이나 효과가 없어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정보

(A) 일반사항 - 이 법 Section 6(c)에 따라 위원회가 규칙을 채택한 후 120일 내에 대상 플랫폼은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에게 이 Section에 규정한 상호호환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기술한 완전하고 정확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B) 내용 - Subparagraph (A)에 규정한 문서는 상호호환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문서로 제한한다.

(4) 변경통지 - 대상 플랫폼은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상호호환성에 영향을 줄 자사의 상호호환성 인터페이스의 변경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고시 가능).

(f) 데이터 최소화

(1) 대상 플랫폼에 의한 상업화 금지 - 대상 플랫폼은 상호호환성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업이용자로부터 확보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활용 또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안하거나 서비스의 상호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대상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상업화 금지 - 사업이용자는 대상 플랫폼의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활용 또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해당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거나 서비스의 상호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5. 정의

이 법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란 클레이튼법 Section 1 (a) (15 U.S.C. 12)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적극적인 동의의사 표현”이란 “개인정보 보호정책”, “서비스약관”, “연구조사를 위한 동의” 또는 다른 유사한 문서와는 별도로 다음 정보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공된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공개 (clear and conspicuous disclosure)를 통해 선택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위이다.

(A) 응답자가 제3자에게 공개할 개인정보의 유형

(B) 공개 이유

(C) 제3자의 신원정보

(D) 공개동의를 거절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기회

(E) 소비자가 그 기회를 행사하는 방법

지정된 디폴트 옵션에 대한 소비자의 승인을 얻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공개”란 필수공개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어 간과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 (A) 온전히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의사소통의 경우, 공개는 의사소통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V광고와 같이 시청각적인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공개를 요하는 표시가 (“트리거 표시, triggering representation”)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제공되더라도 공개는 해당 의사소통의 시각 및 청각적 방식으로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 (B) 시각적 공개는 그 크기, 대비, 위치, 표시되는 시간 및 다른 특징 면에서 같이 표시되는 문자나 다른 시각적 요소와 대비를 이뤄 쉽게 눈에 띄고, 읽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C) 전화나 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청각적 공개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듣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음량, 속도 및 억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D)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대화식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공개를 스킵 할 수 없어야 한다.
  - (E) 공개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발음과 어휘를 사용하여야 하고 트리거가 표시되는 각 언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 (F) 공개는 모든 전자장치 및 대면 의사소통을 포함해 공개가 제공되는 모든 매체에서 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G) 공개는 전달되는 정보와 모순되거나 그 의미가 약화되거나 또는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
  - (H) 표시나 영업 관행이 어린이, 노인이나 시한부 환자와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는 해당 계층의 상당수를 포함한다.
- (4) “위원회”란 연방거래위원회를 말한다.
- (5) “지배”란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A) 해당 개인의 주식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 (B) 해당 개인의 이익 25% 이상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경우
  - (C) 해당 개인이 해산 시 개인의 자산 25% 이상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
  - (D) 해당 개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의 25% 이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경우
  - (E) 해당 개인이 신탁인 경우 신탁관리자의 25% 이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경우
  - (F) 해당 개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 (6) “대상 플랫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 (A) Section 6(a)에 따라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이거나
  - (B) 다음의 온라인 플랫폼
    - (i) Section 2(d)에 따라 위원회 또는 법무부의 지정을 받은 당사나 그지정 이전 12개월 기간 중 또는 이 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소장 제출 전 12개월 기간 중
    - (ii)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미국 기반의 활성 이용자가 월 50,000,000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거나

- (II) 해당 플랫폼에 대한 미국 기반의 활성 사업이용자가 월 100,000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 (ii) Section 6(a)에 따라 위원회 또는 법무부의 지정을 받은 당시나 그 지정 이전 2년 기간 중 또는 이 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소장 제출 전 2년 기간 중의 연간 순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600,000,000,000 달러를 초과하는 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고
- (iii)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을 위한 핵심 거래상대방인 온라인 플랫폼
- (7) “대상 플랫폼 사업자”란 대상 플랫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 (8) “핵심 거래상대방”이란 다음을 제한 또는 방해할 능력이 있는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 (A) 사업이용자가 이용자 또는 고객에게 접근이나
- (B) 사업이용자가 이용자 또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
- (9) “데이터”란 다음을 말한다
- (A) 일반사항 - 이 법 제정일 이후 6개월 내에 위원회는 이 법을 이행 및 시행하기 위하여 미국연방법전 Title 5, Section 553에 따라 “데이터”를 정의하는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 (B) 데이터 - “데이터”란 대상 플랫폼이나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로, 그 대상 플랫폼이나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특정 이용자, 이용자 장치나 고객에게 연결되거나 합리적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C) 배제사항 - “데이터”란 대상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자 장치와 관련이 없는 독점 데이터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이 법에서 “독점 데이터”란 용어를 협의(狹義)로 해석하여야 한다.
- (10) “사업이용자”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또는 제공하기 위해 대상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인 자를 말한다.
- (11) “상호호환성 인터페이스”란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플랫폼이 유지하는 전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 (12) “온라인 플랫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시스템, 디지털 단말기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 (A)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플랫폼의 다른 콘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B) 소비자 또는 플랫폼이 지배하지 않는 사업자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판매, 구매, 지불, 또는 배송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C) 대량의 정보에 접근 또는 이를 표시하는 이용자 검색 또는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 SEC. 6. 이행

- (a) 대상 플랫폼 지정 -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법무부는 이 법을 이행 및 시행하기 위하여 대상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지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1) Section 5 (6)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지정하고
  - (2) 지정서를 교부하고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게시하여야 하며
  - (3)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법무부가 Subsection (b)에 따라 지정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 플랫폼의 지배 및 소유 구조상 변경여부에 상관없이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된다.
- (b) 대상 플랫폼 지정 해지 - 위원회 또는 법무부는
- (1)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이 핵심 거래상대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신청서를 위원회나 법무부에 제출한 경우에 10년 기간이 경과하지 전에 Subsection (a)에 따른 대상 플랫폼 지정의 해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 (2) Paragraph (1)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신청서 제출일 이후 12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c) 규칙제정 및 기술표준
- (1)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한 후 그 대상 플랫폼에 특정된 상호호환성 표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표준은 이 법 Section 3 및 4에 규정한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Section 3 및 4의 요건을 이행하는 표준을 채택함에 있어 위원회는 해당 대상 플랫폼과 경쟁을 제한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진입을 장려하도록 노력하고, 경쟁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해당 대상 플랫폼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에서 상호 연결되도록 보장하며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 (A) 특정 대상 플랫폼에 적용되는 Section 3의 요건을 이행하는 표준안을 개발하도록 이 법 Section 7의 규정과 같이 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 (B) 그 표준을 미국연방법전 Title 5, Section 553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며
    - (C) 접근을 부당하게 거부할 목적이나 효과가 있거나, 상호호환성을 저해하거나 또는 상호호환성에 지나치게 지장을 주는 표준은 거부 하여야 한다.
- (d) 준수성 평가 - 위원회는 대상 플랫폼이 이 법 조항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 (1) 이 평가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고
  - (2) 소환장과 이 법 Section 3 및 4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 관련 정보에 대한 민사수사요구서 (Civil Investigative Demand, CID)를 발부하고 다른

적절한 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 (3) 미국연방법전 Title 5, Section 553에 따라 이 법 Section 3 및 4를 이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다른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 (e) 고소 - 위원회는 이용자, 대상 플랫폼 또는 사업이용자가 이 법 위반행위를 제기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 (f) 상호주의 - 사업이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요건이나 이 법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을 채택하거나 준수할 의무가 없다.
- (1) 이 법 Section 3에 따라 대상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을 개시하고자 하거나
- (2) 이 법 Section 4에 따라 대상 플랫폼의 상호호환성 인터페이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 Section 7. 기술위원회

##### (a) 설치

- (1) 위원회는 이 법 제정 후 180일 내에 이 법 Section 3 및 4에 규정한 요건의 이행 및 기술적 요소에 대한 고려 시 위원회를 지원하는 기술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위원회의 규모 및 위원은 Subsection 7(b)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단독 재량이다.

##### (b) 구성 - 각 기술위원회는 다음의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1)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경쟁관계인 사업자의 대표자들
- (2) 경쟁 또는 프라이버시 압력단체의 대표자들이나 위원회가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법률, 경제, 재정 또는 다른 지식을 보유한 독립적인 학계인사들
- (3) 미국표준기술연구원의 대표자 1 인 및
- (4) 대상 플랫폼의 대표자들.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대상 플랫폼은 기술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다른 지원을 할 투표권이 없는 자문위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대상 플랫폼이 기술위원회의 표준 개발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위반사항으로 본다.

##### (c) 일반 책임사항 - 이 Section에 따라 설치된 각 기술위원회는 위원회에 이동성 및 상호호환성 표준 및 표준의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 및 권고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표준은

- (1) 대상 플랫폼과 경쟁을 제한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줄이거나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 (2) 데이터 이동성 및 상호호환성을 위한 데이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조치를 수립하여야 하고
- (3)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기만적, 악의적 또는 남용적인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 (4) 대상 플랫폼이 유지 관리하는 리소스에 대한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접근 요청의 빈도, 성격 및 그 양과 관련된 적절한 기준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상 플랫폼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청에 대해 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해당 플랫폼이 접근을 허용하는 비용 및 복잡성과 그 플랫폼에 대한 위험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해당 대상 플랫폼과 상호 운용할 능력을 제한하거나 인센티브를 저지해서는 안 된다.
- (d) 역할 - 기술위원회는 사실상 자문 역할로 이행 또는 집행권한은 없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할 때 기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강력히 고려하여야 한다.
- (e) 연방자문위원회법 미 적용 - 연방자문위원회법 (The Federation Advisory Committee Act, 5 U.S.C. App.) 기술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 Section 8. 위헌심사

- (a) 일반사항 - 이 법 Section 6(a)에 따라 대상 플랫폼 지정 대상이거나 지방법원이 발부한 최종명령이나 행정심판소송에서 발부된 위원회의 최종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 명령의 발부일로부터 30일 내에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b) 조사결과 처리 - 이 법 Section 6(a)에 따른 대상 플랫폼 지정이나 위원회의 최종명령에 대한 위헌심사 소송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증거가 뒷받침된 경우에 한해 확정적이다.

#### Section 9. 시행

- (a) 위원회의 소송권한 - 대상 플랫폼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소송을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위원회 이름으로 미국 지방법원에 해당 대상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이 법에 따른 민사제재금을 징수하는 민사소송을 개시할 수 있고 다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b) 긴급 구제조치
- (1) 위원회는 대상플랫폼 사업자가 가장 120일 동안 조치를 취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위원회가 다음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구제조치를 허가하여야 한다.
    - (A) 대상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상당한 주장이 있고
    - (B) 그 조치로 인해 적어도 1개 업체가 대상 플랫폼과 경쟁할 능력이 저해된다.
  - (2) 긴급 구제조치는 고소장 제출일로부터 120일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 (3) 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대상플랫폼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언제든지 그 긴급 구제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 (4) 이 Subsection의 어떤 조항도 위원회가 이 법 Section 10에 규정한 다른 형평법적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 (c) 소멸시효 -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은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 6년 내에 개시할 수 있다.

#### Section 10. 구제조치

- (a) 민사제재금 - 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사제재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제재금은 미국에 귀속되고 그 금액은 다음 중 더 큰 금액 이하로 한다.
- (1) 위반한 자, 조합 또는 법인의 전년도 미국 내 총 매출액의 15%나
  - (2) 불법행위로 영향을 받거나 표적이 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나, 조합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기간 동안 미국 내 총 매출액의 30%
- (b) 추가 구제조치 - 이 subsection에 규정한 구제는 연방법에 따라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조치이다.
- (1) 배상, 계약해지 및 개정, 환불 또는 재산반환 - 소송을 초래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위원회는 손해배상, 계약해지 또는 개정, 환불 또는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들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부당이득 환수 - 위원회는 소송을 초래한 위반행위로 인해 대상 플랫폼이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다.
  - (3) 금지명령 - 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예방, 억제 또는 금지하는데 필요한 형평법적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다.
- (c) 누범자 - 사실 판단자 (fact finder)가 대상 플랫폼이 이 법을 위반하는 양상이나 습벽을 보인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이 법 위반행위를 제기한 고소장 제출 이전 또는 이후 12개월 동안 최고경영자가 받은 보상을 미국국고로 몰수시키는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Section 11. 해석규칙

이 법의 어떤 조항도 법무부장관 또는 반독점법, 연방거래위원회법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5 U.S.C. 45) Section 5나 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다른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Section 12. 분리규정

이 법의 어떤 조항, 이 법에 따른 개정 또는 그 조항이나 개정을 특정한 자 또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 나더라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개정의 나머지 조항 그리고 이 법 또는 개정의 나머지 조항을 특정한 자 또는 상황에 적용에는 그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번역자: 송승연(프리랜서 번역사)

(5)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안」<sup>144)</sup>의 주요내용

동 법안은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를 조정하여 반독점 집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반독점 집행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안은 빅테크 기업 등에 의한 대형 인수합병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고 반대로 중소형 인수합병 신청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sup>145)</sup>

&lt;표-20&gt; 거래규모별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 비교

클레이튼법(현행)		동 법안(개정)	
합병 거래규모	수수료	합병 거래규모	수수료
5천만 달러 ~ 1억 달러	4만5천 달러	5천만 달러 ~ 1.615억 달러	3만 달러
1억 달러 ~ 5억 달러	12만 5천 달러	1.615억 달러 ~ 5억 달러	10만 달러
5억 달러 이상	28만 달러	5억 달러 ~ 10억 달러	25만 달러
해당 없음		10억 달러 ~ 20억 달러	40만 달러
		20억 달러 ~ 50억 달러	80만 달러
		50억 달러 이상	225만 달러

출처: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장영신·강구상), 15쪽.

&lt;표-21&gt;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안\*

제117대 미국 연방의회  
제1회기

144) H.R.3849 -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849/text> (last visited Oct. 15, 2021).

145) 현행 「클레이튼법」에 따른 인수합병 신청에 대한 최대 수수료는 28만 달러이나, 10억 달러 이상의 합병 건에 대한 3개의 수수료 구간을 신설·추가한 동 법안에 따르면 5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인수합병 신청 건의 경우 225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가되게 된다. 장영신·강구상, 주) 131, 15쪽.

## S. 228

합병 신청 수수료를 조정하고 독점규제 시행자원을 확충하여 독점규제 시행을 촉진하고 경쟁을 보호하기 위함.

미국 상원에서

2021년 2월 4일

(Grassley 의원과 공동으로) Klobuchar 의원이 다음 법안을 발의하여 2회독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 법안

합병 신청 수수료를 조정하고 독점규제 시행자원을 확충하여 독점규제 시행을 촉진하고 경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은 미합중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제정하였다.

## Section 1. 약칭

이 법은 “2021년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of 2021)”로 인용할 수 있다.

## Section 2. 사전합병통지 신청수수료

공법 (Public Law) 101~162, Section 605 (15 U.S.C.(미국연방법전) 18a note)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Subsection (b)

## (A) Paragraph (1) 중

- (i) “45,000달러”를 삭제하고 “30,000달러”를 추가하고
- (ii) “100,000,000달러”를 삭제하고 “161,500,000달러”를 추가하고
- (iii) “2004년”을 삭제하고 “2022년”을 추가하고
- (iv) “2003년”을 삭제하고 “2021년”을 추가한다.

## (B) Paragraph (2) 중

- (i) “125,000달러”를 삭제하고 “100,000달러”를 추가하고
- (ii) “100,000,000달러”를 삭제하고 “161,500,000달러”를 추가하고
- (iii) “미만 (but less)”를 삭제하고 “미만인 (but is less) 경우”를 추가하고
- (iv) 마지막에 “그리고”를 삭제한다.

## (C) Paragraph (3) 중

- (i) “280,000달러”를 삭제하고 “250,000달러”를 추가하고

(ii) 문장 마지막에 마침표를 삭제하고 “(과세 공고된) 1,000,000,000 달러 미만인 (but is less than \$1,000,000,000 (as so adjusted and published)) 경우”를 추가한다.

(D) 마지막에 다음을 추가한다.

“(4) 클레이튼법 (the Clayton Act) Section 7A(a)(2) (15 U.S.C. 18a(a)(2))에 따라 결정된 총액이 (과세 공고된) 1,000,000,000달러 이상 (과세 공고된) 2,000,000,0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400,000달러

“(5) 클레이튼법 (the Clayton Act) Section 7A(a)(2) (15 U.S.C. 18a(a)(2))에 따라 결정된 총액이 (과세 공고된) 2,000,000,000달러 이상 (과세 공고된) 5,000,000,0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800,000달러

“(6) 클레이튼법 (the Clayton Act) Section 7A(a)(2) (15 U.S.C. 18a(a)(2))에 따라 결정된 총액이 (과세 공고된) 5,000,00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2,250,000달러”

(2) 마지막에 다음을 추가한다.

“(c)(1) 2022년 9월 30일 이후에 개시된 각 회계연도에 대해 이 section에 규정한 신청 수수료는 2021년 9월 30일에 종결된 회계연도의 수준을 능가하는 해의 노동부 또는 그 승계기관이 결정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율과 동등한 액만큼 매 해 증가되어야 한다.

“(2) 연방거래위원회는 매 해 1월 31일까지 지체 없이 paragraph (1) 규정에 따른 조정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연방거래위원회는 Paragraph (1)의 증가율이 1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paragraph (1) 규정에 따른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4) 이 section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5,000달러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 한다.”

### Section 3. 지출승인

2022 회계연도에 대해 다음 금액의 지출을 승인한다.

(1)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의 독점금지국에 252,000,000달러 및

(2) 연방거래위원회에 418,000,000달러.

\* 번역자: 송승연(프리랜서 번역사)

#### 4. 중 국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보아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장려하고 규제를 최소화해왔으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대형 IT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 대부분의 영역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구조를 형성하게 되자 대형 IT 기업들이 플랫폼 생태계를 독점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이들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sup>146)</sup>

2020년 1월 2일 중국의 반독점규제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분야의 사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문화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의 개정초안을 발표하면서 11년 만에 법 개정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2월 7일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sup>147)</sup>(이하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공포(2021.02.07. 시행)하여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반독점 규제를 구체화하였고,<sup>148)</sup> 법 집행력 강화 및 지방정부 차원의 세부조치 시행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49)</sup>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은 플랫폼 경제 분야의 독점행위를 예방·억제함으로써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여 소비자 이익 및 사회 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 ‘플랫폼’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네트워크

146) 김영선,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 동향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4 No.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06.23.), 3-5쪽.

147)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2021年2月7日国务院反垄断委员会印发), [http://gkml.samr.gov.cn/nsjg/fldj/202102/t20210207\\_325967.html](http://gkml.samr.gov.cn/nsjg/fldj/202102/t20210207_325967.html) (최종방문: 2021.10.15.).

148) 김영선, 주) 146, 5-7쪽.

149) 김영선, 주) 146, 11-12쪽.

크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상호 의존적인 양자 또는 다자 주체가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규칙에 따라 상호작용함으로써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비즈니스 조직의 한 형태로, 2) '플랫폼 경영자'를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시장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거래 알선, 정보 교환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플랫폼 제공 사업자)로, 3) '플랫폼 내 경영자'를 인터넷 플랫폼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그리고 4)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를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및 기타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경영자로 정의하고 있다(지침 제2조).

동 지침에 따라 반독점규제당국은 1) 경영자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 2) 경영자의 시장통제 능력, 3) 경영자의 재무능력과 기술조건, 4) 당해 경영자에 대한 다른 경영자의 거래 의존도, 5) 다른 경영자의 관련 시장 접근 난이도, 6)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지침 제11조).

동 지침은 반독점규제당국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한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에 의한 1) 불공정가격행위, 2) 원가 이하 판매, 3) 거래 거절, 4) 거래 제한, 5) 끼워 팔기 또는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가 및 6) 차별대우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지침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이에 따라, i)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경쟁 플랫폼 간 양자택일(二选一)을<sup>150)</sup> 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여 자신과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여타의 행위(지침 제15조), ii) 포맷 약관, 팝업, 필수조작절차 등 거래 상대방이 선택·변경·거부할 수 없는 방식을 이용하여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지침 제16조), iii)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거래 상대방의 지불능력, 소비선호, 이용습관 등에 따라 차별적인 거래가격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행위(지침 제17조)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금지되고 있다.

150) 알리바바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상대로 하여 입점 상품을 경쟁 플랫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도, 동 지침에 따라 경쟁적 관계에 있는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 간의 수평적 독점협약(① 플랫폼을 이용한 가격, 판매량, 원가, 고객 등 민감한 정보의 수집·교환, ② 기술수단을 이용한 의사연락 진행, ③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한 일치된 행위 실현, 또는 ④ 협동행위를 돕는 그 밖의 다른 방법을 통한 가격고정, 시장분할, 생산량 또는 판매량 제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제한, 거래 거절 등)와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수직적 독점협약(① 기술수단을 이용한 가격 자동 설정, ② 플랫폼 규칙을 이용한 가격 통일, ③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사용한 직간접적인 가격 제한, 또는 ④ 기술수단, 플랫폼 규칙,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사용한 다른 거래 조건의 제한 및 시장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통한 재판매가격 고정, 최저 재판매가격의 제한 등)가 금지된다(지침 제6조 및 제7조).

**<표-22>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지침\*****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및 근거**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독점행위를 예방·억제하고 시장 공정경쟁을 보호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이익 및 사회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이하, 반독점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제정한다.

**제2조 관련 개념**

- (1) 플랫폼, 본 지침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플랫폼은 네트워크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상호 의존적인 양자 또는 다자간 주체가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규칙에 따라 상호 작용하여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조직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 (2) 플랫폼경영자란 자연인과 법인 및 기타 시장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거래 매칭 및 정보 교환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말한다.
- (3) 플랫폼내경영자란 인터넷 플랫폼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통칭)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말한다.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운영과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직접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
- (4) 플랫폼경제 분야의 경영자에는 플랫폼경영자, 플랫폼내경영자 및 기타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포함된다.

**제3조 기본원칙**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플랫폼 경제분야에서 반독점감독관리를 전개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 (1) 시장 공정경쟁을 보호  
시장 주체를 동일하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며 플랫폼 기업의 독점 인정 관련 법률규범을 완벽히 하며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 경쟁을 보호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플랫폼 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 (2) 법에 따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관리 실시  
반독점법 관련 법규, 규칙, 지침에서 확정한 기본제도와 규제원칙, 분석 프레임워크는 플랫폼 경제 분야의 모든 시장주체에 적용된다.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상황과 발전법칙, 고유한 특징에 근거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경쟁 분석과 법률논증 강화를 강화하고, 반독점규제를 끊임없이 강화, 개선하며 반독점법 집행의 목적성, 과학성을 강화할 것이다.
- (3) 창의력과 혁신을 자극

경쟁적이고 체계적인 개방과 포용 발전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플랫폼경영자가 기술 혁신, 품질 개선, 서비스 향상 및 모델 혁신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경쟁배제·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플랫폼 경제 혁신과 개발, 경제 활력을 효과적으로 자극한다. 사회 전체의 혁신과 창조 동력,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우위와 추진력을 구축하게 된다.

#### (4) 각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는 여러 당사자가 포함된다. 반독점 감독은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플랫폼 경제를 통한 자원배분 최적화, 기술진보, 효율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플랫폼내경영자와 소비자, 종사자 등 각 주체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반독점법 집행과 업계 관리·감독의 조정을 강화하여 사회전체가 플랫폼의 기술 진보와 경제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플랫폼 경제 전체의 공생과 건전한 발전을 실현한다.

### 제4조 관련 시장 획정

플랫폼 경제는 업무 유형이 복잡하고 경쟁이 다변화된 분야이므로 관련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을 획정할 때 '반독점법'과 '국무부 반독점위원회의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지침'이 정한 일반원칙을 따르되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사안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1) 관련 상품시장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하는 기본 방법은 대체효과 분석이다. 개별 사례에서 관련 상품 시장을 획정할 때 플랫폼 기능, 비즈니스 모델, 응용 시나리오, 사용자 그룹, 다면 시장, 오프라인 거래 및 기타 요인을 기반으로 수요대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경영자의 행위에 대한 공급 대체의 경쟁 제약이 수요 대체와 유사한 경우 시장진입, 기술장벽, 네트워크효과, 경계를 넘어서는 경쟁 등 공급대체 분석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관련 상품 시장의 상호 관계와 영향을 고려하여 플랫폼 일면 상품에 근거해 관련 상품 시장을 획정할 수 있고, 플랫폼이 취급하는 다면 상품에 근거해 각각 복수의 관련 상품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 플랫폼의 교차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충분한 경쟁 제약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관련 상품 시장을 전체적으로 획정할 수 있다.

#### (2) 관련 지역시장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관련 지리적 시장 획정시 마찬가지로 수요 대체 및 공급 대체 분석을 채택한다. 개별 사례에서 관련 지역 시장을 획정할 때 대부분의 사용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실제 지역, 사용자의 언어 선호도 및 소비 습관, 관련 법규 조항, 지역별 경쟁 정도, 온·오프라인 융합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관련 지역시장은 일반적으로 중국시장 또는 특정 지역시장으로 획정되고 개별 사건에 따라 글로벌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

#### (3) 각종 독점사건에서의 관련 시장 획정의 역할

사안별 분석원칙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반독점 사건에서 관련 시장 획정에 대한 실제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다.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혐의와 재판매가격유지, 최저 재판매가격 제한 등 수직 독점협

의와 관련하여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위법성 판단 시 관련 시장을 명확하게 획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경영자집중 반독점 사건 심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 제2장 독점협약

반독점법은 경영자가 독점협약을 달성,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플랫폼경제 분야에서 독점협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독점법» 제2장과 독점협약의 금지 입시규정을 적용한다. «반독점법» 제13조, 제14조에 명시된 독점협약의는 법에 따라 금지되고, 제15조 규정에 부합되는 독점협약의는 법에 따라 면제된다.

독점협약의가 반독점법 제13조 제6항,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플랫폼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내경영자에게 미치는 시장력, 다른 경영자의 관련 시장 진입 난이도, 혁신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 독점협약의 형식

플랫폼 경제 분야 독점협약의는 경영자 간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 행위를 말한다. 합의 결정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타 협동 행위란 경영자가 명확한 합의나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치된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경영자의 독립적 의사표시에 기초한 가격동조 등 병행행위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 제6조 수평적 독점협약

경쟁 관계에 있는 플랫폼 경제 분야의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가격고정, 시장분할, 생산(판매)량 제한, 신기술 (제품) 제한, 거래 거절과 같은 수평적 독점 협약을 달성할 수 있다.

- (1) 플랫폼을 이용하여 가격, 판매량, 원가, 고객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행위
- (2)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연락을 진행하는 행위
- (3)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일치된 행위를 실현하는 경우
- (4) 그 밖에 협동행위를 돕는 다른 방식.

이 지침에 언급된 가격에는 상품 가격, 경영자가 수입하는 수수료, 취급 수수료, 회비, 프로모션 수수료 및 경영자가 부과하는 기타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제7조 수직적 독점협약

플랫폼 경제 분야의 경영자와 거래 상대방은 다음 방법을 통해 고정 재판매가격 및 최저재판매가격과 같은 수직적 독점협약을 달성할 수 있다.

- (1)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가격을 자동설정하는 행위

- (2) 플랫폼 규칙을 이용하여 가격을 통일하는 행위
- (3)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 (4) 기술 수단, 플랫폼 규칙,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른 거래 조건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

플랫폼경영자가 플랫폼내경영자에게 상품가격, 수량 등 면에서 다른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독점협의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상술한 행위가 <<반독점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수직적 독점협의에 해당하는지 분석함에 있어 플랫폼 경영자의 시장력, 관련 시장 경쟁상황, 기타 경영자의 관련 시장진입의 저해정도, 소비자 이익과 혁신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제8조 허브 앤 스포크 계약

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내경영자는 플랫폼 경영자와의 수직적 관계에 편승하거나 플랫폼 경영자의 조직, 조정을 통해 수평적 독점협의 효과를 갖는 허브 앤 스포크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협약이 반독점법 제13조, 제14조의 규제대상이 되는 독점 협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플랫폼내경영자간 기술 수단, 플랫폼 규칙,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9조 협동행위에 대한 인정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협동행위를 식별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사용하여 협동행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직접 증거를 얻기 어려운 경우, 독점협의금지 임시규정 제6조에 의거 논리적으로 일관된 간접 증거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에 대한 경영자의 인지 상태를 확인하여 경영자간 협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영자는 협동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상반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 리니언시 제도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가 수평적 독점 협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권장한다.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리니언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경영자가 신청한 리니언시의 기준과 절차 등은 <<독점협의 금지임시규정>>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수평적독점협의 리니언시제도 적용지침>>을 적용한다.

##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플

랫폼 경제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독점법 제3장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우선 관련 시장을 확정하고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구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제11조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반독점법 제18조,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거나 추정한다. 플랫폼 경제의 특징과 결부하여 아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1) 경영자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 시장경쟁상황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시장에서 거래금액, 거래수량, 매출액, 활동사용자 수, 접속량, 사용 시간 또는 기타 지표 비중 및 해당 점유율의 지속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시장경쟁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 관련 플랫폼 시장 발전상황, 기존 경쟁자 수와 점유율, 플랫폼 경쟁의 특징, 차별화 정도, 규모의 경제, 잠재적 경쟁자 상황, 혁신과 기술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2) 경영자의 시장통제 능력

상하류 또는 다른 관련 시장을 통제하고,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능력, 플랫폼 사업 모델과 네트워크 효과, 가격과 데이터, 기타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3) 경영자의 재무능력과 기술조건

해당 경영자의 투자자 상황, 자산 규모, 자본 출처, 영리 능력, 융자 능력, 기술 혁신과 응용능력, 소유한 지재산, 관련 데이터를 파악·처리 능력, 그리고 이러한 재무능력과 기술조건이 어느 정도 해당 경영자의 업무 확장을 촉진하거나 시장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4) 당해 경영자에 대한 다른 경영자의 거래 의존도

다른 경영자와의 거래관계, 거래량, 거래기간, 잠금 효과, 이용자 고착정도, 그리고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전환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 (5) 다른 경영자의 관련 시장 접근 난이도

시장진입, 플랫폼의 규모 효과, 자금 투입 규모, 기술 장벽, 이용자 다중성, 사용자 전환비용, 데이터 획득의 난이도, 사용자 습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6) 기타 요소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요소를 플랫폼 경제의 특징에 근거하여 고려할 수 있다.

**제12조 불공정가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불공정한 가격행위 여부를 분석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 (1) 당해 가격이 다른 동종업계 경영자와 같은 또는 유사한 시장조건 하에서 동종 또는 비교가능한 상품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지 여부
- (2) 당해 가격이 당해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기타 동종 또는 유사한 시장조건 하의 동종 또는 비교가능한 상품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지 여부
- (3) 원가가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해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가 정상 정도를 초과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구매가격을 인하하였는지 여부
- (4) 당해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의 상품 판매가격 인상폭이 원가인상폭보다 뚜렷하게 높았는가, 아니면 상품 구매가격 인하폭이 원가인하폭보다 뚜렷하게 낮았는지 여부(시장조건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할 때 일반적으로 플랫폼 유형, 경영모델, 거래단계, 원가구조, 거래세부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 원가 이하 판매(부당염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는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할 수 있다.

부당염매 여부는 일반적으로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가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경쟁관계가 있는 다른 경영자를 몰아내고, 이후 가격을 올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원가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플랫폼과 관련된 다면 시장에서 시장 간 비용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가 원가 이하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 (1) 합리적 기한 내에 플랫폼 내 다른 비즈니스를 개발하기 위해
- (2) 합리적 기한 내에 신상품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 (3) 합리적인 기한 내에 신규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 (4)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판촉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 (5) 그 밖에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이유

**제14조 거래 거절**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경제 분야의 경영자는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하여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할 수 있다.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할

때 다음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 (1) 상대방과의 기존 거래를 중지, 지연, 중단하였는지 여부
- (2) 거래 상대방과의 새로운 거래 개시를 거부하였는지 여부
- (3) 거래상대방과의 기존 거래량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행위
- (4) 플랫폼 규칙, 알고리즘, 기술, 트래픽 분배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제한과 장애를 설정하여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힘들게 하였는지 여부
- (5) 플랫폼 경제분야에서 필수시설을 통제하는 경영자가 거래상대방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거절하였는지 여부

관련 플랫폼이 필수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데이터 점유상황, 다른 플랫폼의 대체 가능성, 사용가능한 잠재적 플랫폼 존재 여부, 경쟁 플랫폼 개발 가능성, 거래 상대방의 해당 플랫폼에 대한 의존 정도, 개방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 경영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분야의 경영자가 거래를 거절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 (1) 불가항력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거래불가능
- (2)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 거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로 인하여 플랫폼 경제분야 경영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경우
- (4) 거래상대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플랫폼규칙을 명확히 명시했으나 실제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 (5) 기타 행위가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에 이유

### 제15조 거래 제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경제 분야의 경영자는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제한하여,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할 수 있다. 거래 제한 행위 구성 여부를 분석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 (1) 플랫폼내경영자에게 경쟁 플랫폼 간 "양자택일"을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여타 행위
- (2) 거래상대방이 그가 지정한 경영자와 거래를 하거나 또는 그가 지정한 경로 등 제한적 방식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 (3) 거래상대방이 특정 경영자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

이와 같은 제한은 서면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도 있고, 전화, 구두 방식으로 실현될 수도 있으며, 플랫폼 규칙,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등의 실질적인 제한 또는 장애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거래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거래차단, 검색력 하락, 트래픽 제한, 기술적 장애, 마진 공제와 같은 징벌적 조치를 통해 거래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경쟁 및 소비자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주므로 일반적으로 거래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보조금, 할인, 양보, 데이터 자원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한 제한은 경영자 및 소비자

이익 또는 전반적인 사회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시장 경쟁에 명백한 배제, 제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거래제한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경영자의 거래제한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 (1) 거래상대방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데이터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3) 거래를 위한 특정 자원의 투자에 필요한 경우
- (4) 합리적 경영모델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행위가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

#### 제16조 끼워팔기 또는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경제 분야의 경영자는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끼워팔기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여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할 수 있다. 끼워팔기 혹은 불합리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1) 포맷 약관, 팝업, 필수조작절차 등 거래상대방이 선택, 변경, 거부할 수 없는 방식을 이용하여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
- (2) 검색 축소, 데이터 제한, 기술 장애 등 징벌적 조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다른 상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 거래하는 행위
- (3) 거래조건과 방식, 서비스 제공방식, 지불방식과 수단, 판매 후 보장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부가하는 행위
- (4) 거래가격 외에 부당한 비용을 별도로 수취하는 행위
- (5) 불필요한 사용자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거나 거래목적물과 무관한 거래조건, 거래절차, 서비스 항목을 부가하는 행위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경영자의 끼워팔기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 (1) 정당한 업계 관행과 거래 관습에 부합되는 경우
- (2) 거래상대방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상품의 사용 가치 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행위가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

#### 제17조 차별대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경제 분야의 경영자는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조건이 같은 거래상대방에 대해 차별 대우를 실시하여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할 수 있다. 차별대우 구성 여부를 분석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 (1)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거래상대방의 지불능력, 소비선호, 사용습관 등에 따라 차별적 거래가격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다르게 실행하는지 여부
- (2) 차별적인 표준, 규칙, 알고리즘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3) 차별적인 지불조건과 거래방식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동일한 조건이란 거래상대방 간 거래 안전, 거래 비용, 신용 상태, 거래 단계, 거래 기간 등에서 거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거래과정에서 플랫폼이 취득한 거래 상대방의 개인 정보, 거래 내역, 개인 선호도, 소비습관 등의 차이는 거래 상대방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플랫폼 경제 분야 경영자의 차별대우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 (1) 거래 상대방의 실제 요구와 합법적인 거래 관습 및 업계 관행에 따라 다른 거래 조건을 구현한 경우
- (2) 신규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제공하는 우대활동인 경우
- (3)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플랫폼 규칙에 따른 무작위 거래인 경우
- (4) 그 밖에 행위가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

#### 제4장 경영자 집중

반독점법은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경영자 집중을 금지하고 있다.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반독점법>,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 <경영자집중심사 임시규정>에 따라 플랫폼 경제 분야의 경영자 집중을 심사하고 위법 실시 경영자 집중을 조사·처리한다.

##### 제18조 신고기준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경영자의 매출액에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입이 포함된다. 영업 관행, 요금 방식,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등에 따라 매출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정보 매칭만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 등 서비스비용을 징수하는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이 수취한 서비스 비용과 기타 플랫폼 수입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한쪽의 시장경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플랫폼과 관련된 거래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경영자집중이 국무원신고규정상 기준에 도달한 경우 경영자는 사전에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는 집중을 실시하지 못한다. 계약통제방식의 경영자집중은 경영자집중 심사범위에 속한다.

##### 제19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주동 조사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 제4조상 신고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소정 절차에 따라 수집된 사실과 증거에 비추어 경영자집중이 경쟁배제, 제한의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자 집중에 대해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구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경영자 집중에 참여하는 일방이 초기 창업기업, 신흥 플랫폼인 경우,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무료 또는 저가 모델을 채택해 매출이 낮고, 관련 시장 집중도가 높으며, 참여 경쟁자의 수가 적은 유형의 플랫폼 경제 분야의 경영자 집중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경쟁의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 제20조 고려요인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법 제27조<<경영자집중심사잠정규정>> 제3장에 따라 플랫폼 경제분야의 경영자 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결합하여 다음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1) 관련 시장에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 산정은 매출액 외에 거래금액, 거래수량, 활동 가입자 수, 조회 수, 사용 시간, 기타 지표가 해당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의 상황을 봐서 비교적 긴 시간 내 점유율을 종합 평가해 동향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

##### (2) 시장에 대한 경영자의 통제력

경영자가 중요하고 희소한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독점적 권한의 기간, 이용자의 고착정도와 다양성, 경영자의 데이터 제어 및 처리 능력, 데이터 인터페이스 제어 능력, 다른 시장으로의 침투 및 확산 능력, 경영자의 수익성 및 이윤율 수준, 기술 혁신의 빈도 및 속도, 상품의 수명주기, 파괴적 혁신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3) 관련 시장의 집중도

관련 플랫폼 시장의 발전 상황, 기존 경쟁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4) 경영자집중이 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

기술, 지식재산권, 데이터, 채널, 사용자 등 필수자원과 필수시설의 확보 난이도와 같은 시장접근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규모, 사용자 비용, 데이터 이전, 협상, 학습, 검색 등 각 방면에서 전환 비용과 진입 가능성, 적시성, 충분성을 고려할 수 있다.

##### (5) 경영자집중이 기술진보에 미치는 영향

기존 시장 경쟁자들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등 혁신적인 분야에서 경쟁하고, 경영자들의 혁신 동기와 능력에 대한 영향, 스타트업 기업, 신흥 플랫폼 인수로 혁신이 영향을 받는지 고려할 수 있다.

##### (6) 경영자집중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집중 후 경영자가 상품 가격을 올리고, 품질을 떨어뜨리고, 상품의 다양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 능력과 범위를 훼손하고, 소비자 그룹을 차별하며, 소비자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7)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 여기에는 기타 경영자의 영향,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 등이 포함된다. 양면 또는 다면 플랫폼에 관계되는 경영자 집중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양면 또는 다면 서비스 및 경영자가 종사하는 기타 서비

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제21조 구제조치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경쟁 배제·제한 효과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영자 집중에 대해 반독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조치를 내려야 한다. 경영자 집중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적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1) 유형 자산의 매각, 지식재산권, 기술, 데이터 또는 관련 권리 및 이익과 같은 무형 자산의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건
- (2) 네트워크나 데이터, 플랫폼 등 기반 인프라 개방, 핵심기술 라이선스, 배타적 협정 종료, 플랫폼 규칙 또는 알고리즘 수정, 플랫폼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약속 등 행태적 조건
- (3) 구조적 조건과 행태적 조건이 결합된 종합적 조건

## 제5장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정권력 남용

반독점법은 행정기관과 법률·법규가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위임한 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 분야의 행정 권력 남용 배제 및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 제22조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정권력 남용

행정기관과 법률·법규가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위임한 조직이 다음 행위를 하여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경우 행정권력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

- (1)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지정된 경영자로부터 제공된 상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을 경영, 구매, 사용하도록 제한 또는 우회 제한하는 행위
- (2) 플랫폼 경제 분야 외부지역 경영자에 대해 차별적 기준과 정책을 설정·실시하고 외부지역 경영자에 대한 행정허가, 등록, 소프트웨어, 인터넷 차단 등을 통해 외부지역 경영자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지역 간 자유로운 유통 등을 방해하는 행위
- (3) 차별적인 자격요구, 심사기준을 설정하거나 법에 따른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외부지역 경영자가 현지 입찰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배척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4) 플랫폼 경제 분야 외부지역 경영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실시하며 외부지역 경영자가 본지에 투자하거나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배제, 제한 또는 강요하는 행위
- (5) 플랫폼 경제 분야의 경영자가 <<반독점법>>에 규정된 독점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요 또는 우회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6) 행정기관이 플랫폼 경제분야 시장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해 규정, 방법, 결정, 공시, 통지, 의견, 회의 요지 등 형식으로 경쟁 배제·제한 사항을 담은 시장접근, 산업발전, 투자유치, 입찰 응찰, 정부조달, 경영행위 규범, 자격표준 등 규칙, 규범성 문서, 기타 정책성 문서 및 '일사일의(一事一

議) 형식의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제정·발포하는 행위

### 제23조 공정경쟁 심사

행정기관과 법률·법규가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위임한 조직은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시장주체의 경제 활동을 다루는 규칙, 규범적 문서, 기타 정책적 문서 및 '일사일의(一事一議)' 형식의 구체적인 정책 조치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경쟁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6장 부 칙

### 제24조 안내서의 해석

본 지침은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해석하며 발포일로부터 실시한다.

\* 번역자: 김정진(중국 서북정법대학 교수)

## 5. 독일

독일에서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통제하고,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연방 경쟁규제당국(이하 “연방카르텔청”이라 한다)의 규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안이 2021년 1월 14일 의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19일 발효되었다.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과 거대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동 개정이 단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방카르텔청이 빅테크 기업의 특정행위(시장경제에 반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sup>151)</sup>

이번 개정을 통해, 1)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 기준으로 ‘경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추가되었고(법제18조제3항),<sup>152)</sup> 2) 다면시장의 중개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

151) Deutscher Bundestag, Reform des Wettbewerbsrechts auf digitalen Märkten debattiert,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0/kw44-de-digitales-wettbewerbsrecht-798194> (last visited Oct. 15, 2021).

152)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란 중요한 가치창출의 기초가 되고 이를 독점적으로 수집·평가하는 과정에서 플랫

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에 ‘중개력’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법 제18조제3a항),<sup>153)</sup> 3) ‘시장 간 경쟁에서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자’(이하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과 연방 카르텔청이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법 제19a조).<sup>154)</sup><sup>155)</sup>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가장 주요한 변화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연방카르텔청은 1) 하나 이상의 시장에서 사업자의 지배적 위치, 2) 자금력이나 다른 자원에 대한 접근, 3) 수직적 통합 및 기타 상호연계된 시장에서의 활동, 4) 경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5) 제3자의 공급 및 판매 시장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 활동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제3자의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3a항에 따른 시장<sup>156)</sup>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법 제19a조 제1항).

어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되면, 연방카르텔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1) 공급 및 판매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에 있어, 특히 해당 사업자 자신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 경쟁 관련 데이터(모든 경제 분야의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 기준으로 추가되었다. Id.

153)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및 상품-서비스를 연결하는 중개자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데, 특히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다면시장에서 중개자로 활동하는 사업자의 시장 지위를 평가하는데 중개력의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Id.

154) 디지털 생태계에서 중요한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을 통제하는 게이트키퍼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특별한 자원을 가지 대규모 디지털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동 조문을 신설하였다. Id.

155) 이지현,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KISDI Perspectives May 2021 No.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121.05.10.), 3-8쪽 참조.

156) 다면시장과 네트워크에서 사업자의 시장 지위를 평가할 때에는 i)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 ii) 서로 다른 제공자들의 서비스 병행 상용 및 이용자에 대한 전환 비용, iii)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 규모의 경제, iv) 경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의 접근, v) 혁신 주도의 경쟁 압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 18 Abs. 3 GWB.

상품을 경쟁 사업자의 상품과 달리 취급하는 행위(①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우대하는 행위 또는 ②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기기에 독점적으로 설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결합하는 행위), 2)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접근하는데 있어 해당 사업자의 활동이 중요한 경우, 구매 또는 판매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특히, ① 해당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독점적 사전 설치 혹은 통합을 유도하는 행위 또는 ②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자가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는 않으나 빠르게 그 지위를 확장할 수 있는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특히, ① 다른 상품의 이용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선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상품의 이용과 해당 사업자의 추가 상품의 자동적 이용을 결합하는 경우 또는 ② 해당 사업자의 다른 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4) 해당 사업자가 수집한 경쟁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여 시장 진입장벽을 형성 또는 증대시키거나 다른 사업자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경쟁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특히, ① 이용자에게 처리된 범위,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적절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해당 사업자의 다른 서비스 또는 제3자 제공자의 데이터 처리에 동의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②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쟁 관련 데이터를 해당 사업자의 자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처리의 범위,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경우), 5)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호호환성 및 데이터 이동성을 어렵게 하여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6)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되거나 위임된 서비스의 범위, 품질 또는 효과에 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7)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처리함에 있어 요구의 이유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특히, ① 데이터나 권리의 이전을 위한 목적에 필수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는 경우 또는 ② 이러한 부적절한 데이터 및 권리의 이전 여부에 따라 상품 처리의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금지할 수 있다(법 제19a조제2항).

그 밖에도, 연방카르텔청이 임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범위반에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법 제32a조제1항)<sup>157)</sup> 등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sup>158)</sup>

<표-23>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18 시장지배력

(1) 관련 실질적 그리고 공간적 시장에서 특정 유형의 상품이나 상업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1. 경쟁자가 없는 경우
2. 주요한 경쟁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3. 경쟁사 대비 우월한 시장적 지위를 가진 경우

(2) 본 법에 의한 관련 공간적 시장은 법률의 적용범위보다 넓을 수 있다.

(2a) 시장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3) 경쟁사와 관련된 사업의 시장지위를 평가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장점유율
2. 자금력
3. 경쟁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4. 공급 및 판매시장에 대한 접근
5. 다른 기업과의 합병
6. 다른 회사의 시장진입에 대한 법적 또는 실질적 제한
7. 이 법의 범위 내·외부 범위 내의 기업을 통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
8. 자신의 공급이나 수요를 다른 상품이나 상업적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9. 거래 상대방이 다른 회사로 전환할 가능성

(3a) 다면시장과 네트워크에서 사업자의 시장지위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
2. 서로 다른 제공자들의 서비스 병행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전환 비용
3.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의 규모의 경제
4. 경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의 접근
5. 혁신 주도의 경쟁 압력

157)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이며 중대한 피해 또는 경쟁 보호를 위한 임시적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연방카르텔청은 직권으로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당해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불합리하며 압도적인 공적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사실적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2a GWB.

158) 유영국,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독점규제법상 시사점”, 경쟁법연구 제42권, 한국경쟁법학회(2020.11.), 240-242쪽.

- (3b) 다면시장에서 중개자로 활동하는 사업자의 시장지위를 평가할 때, 특히 공급 및 판매 시장에 대한 접근에 있어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개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40%일 때 시장지배력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 (5) 둘 혹은 그 이상의 기업들이 다음의 경우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1. 특정 유형의 상품 또는 상업적 서비스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 주요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을 때
  2. 동조 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 (6) 기업 전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시장점유율이 50%인 셋 혹은 그 이하의 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혹은
  2. 시장점유율이 2/3을 차지하는 다섯 혹은 그 이하의 회사로 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 (7) 기업이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6항에 의한 추정은 반박될 수 있다.
1. 그들 간의 경쟁조건이 주요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2. 기업 전체가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우월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8) 연방 경제에너지부는 2a항과 3a항이 시행되고 3년이 지난 후 입법기관에 규정에 대한 경험을 보고한다.

#### § 19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금지행위

- (1)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남용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 (2) 특히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특정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남용이 존재한다.
1. 직·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실질적인 권한없이 동종의 회사를 직·간접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2. 효과적인 경쟁에 있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수료 또는 거래 조건과 다른 수수료 또는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여기에서 특히 효과적인 경쟁을 하는 비교가능한 시장에서의 다른 기업들의 행동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3. 차이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비교가능한 시장의 유사한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덜 유리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다른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4. 전방 및 후방 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정보접근의 전달 또는 부여가 객관적으로필요한 상황에서의 정보 제공 거부나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때 다른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거부, 특히 데이터·네트워크 또는 기타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위협한다.
  5.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기업으로 하여금 그에게 이익을 주도록 요구하는 경우, 특히 요구가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와 요구된

이익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제 2, 3조와 제 28조 1항, 제 30조 2a항·2b항 그리고 제 31조 1항 1·2·4호 의미 내의 경쟁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도 2항 1호와 5호와 결합하여 1항이 적용된다. 1항과 관련하여 2항 1호는 제 28조 2항 또는 제 30조 1항 1호와 제 31조 1항 3호에 따라 가격을 구속하는 회사에도 적용된다.

§ 19a 시장 간 경쟁에서 압도적인 중요성을 갖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연방 카르텔청은 제 18조 3a항의 의미 내에서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시장 간 경쟁에서 압도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나 이상의 시장에서 사업자의 지배적 위치
2. 자금력이나 다른 자원에 대한 접근
3. 수직적 통합 및 기타 상호연계된 시장에서의 활동
4. 경쟁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5. 제 3자의 공급 및 판매 시장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의 활동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제3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동조 1항에 대한 처분의 존속력은 5년으로 제한된다.

(2) 제 19a조 1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방 카르텔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1. 공급 및 판매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에 있어, 자사의 상품을 경쟁 기업의 상품과 달리 취급하는 행위, 특히
  - a) 기업이 자사의 상품을 우대하는 행위
  - b) 기업이 자사의 상품을 기기에 독점적으로 설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타사의 제품에 결합하는 행위
2. 이러한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 기업의 활동이 중요한 경우, 구매 또는 판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특히
  - a) 기업의 제품에 대한 독점적 사전 설치 또는 통합을 유도하는 행위
  - b) 기업이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행위
3. 사업자가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빠르게 그 지위를 확장할 수 있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특히
  - a) 다른 상품의 이용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선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상품의 이용과 기업의 추가 상품의 자동적 이용을 결합하는 경우
  - b) 기업의 다른 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4. 기업이 수집한 경쟁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여 시장 진입장벽을 형성 또는 증대시 키거나 다른 사업자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경쟁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특히

- a) 이용자에게 처리의 범위,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적절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기업의 다른 서비스 또는 제3자 제공자의 데이터 처리에 동의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b)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쟁 관련 데이터를 기업의 자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면서 해당 기업에게 처리의 범위,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경우

5.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을 어렵게 하여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6.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되거나 위임된 서비스의 범위, 품질 또는 효과에 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7.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처리함에 있어 요구의 이유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특히

- a) 데이터나 권리의 이전을 위한 목적에 필수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는 경우
- b) 이러한 부적절한 데이터 및 권리의 이전 여부에 따라 상품 처리의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

이는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제시 및 입증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 제 32조 2항, 3항과 32a조와 32b조가 적용된다. 2항에 따른 결정은 1항에 따른 결정과 결합될 수 있다.

(3) 제 19조와 20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연방 경제에너지부는 1항과 2항의 규정이 시행된 후 4년이 지나면 입법기관에 해당 규정에 대한 경험을 보고한다.

#### § 20 상대적 또는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갖는 사업자의 금지행위

(1) 제 19조 1항과 함께 2항 1호는 특정 유형의 상품 또는 상업적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인 다른 기업이 충분하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의존하는 한 회사 및 회사의 협회에도 적용된다.

명백한 불균형으로 인해 의존성은 강력한(상대적)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갖는 그에 상응하는 대항력에 의해서도 상쇄되지 아니한다. 이는 사업자들의 공급 및 판매시장에 대한 접근에 있어 충분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제 19조 1항과 2항 1호는 다면시장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특정 유형의 재화 또는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유사한 수요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통상적 가격인하 또는 그 외 서비스 요금을 정기적인 특별할인을 받는 경우 제 1문 의미 내에서 수요자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본다.

(1a) 또한 (1)에서 의미하는 종속성은 어떤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다른 사업자가 통제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거부는 제 19조 2항 1호에 따른 불공정한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과의 거래관계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제 19조 1항과 2항 5호는 기업 및 종속 기업과 관련된 협회에도 적용된다.

(3) 중소기업보다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그러한 경쟁자를 부적절하게 직·간접적으로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1. 기업의 유럽의회규정(EG) Nr. 178/2002의 2조 의미 내의 식품, 식품법의 일반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는 위원회에서 규정한 식품, 유럽 식품안전청 설립 의미 내의 식품, 식품 안전을 위한 절차 확립 의미 내의 식품이 원가 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은,
2. 기업의 다른 재화 또는 영리용역이 간혹 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3. 후방시장에서 삼품 또는 상업적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경쟁하는 중소기업의 회사가 이 시장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위 경우에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부당한 방해로 본다. 2항의 의미 내에서 원가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부여되고, 이미 설정된 제안 시점에 충분한 확실성과 함께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회사와 공급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이다. 식품을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것은 상품을 적시에 판매하여 소매업체에서 상품의 부패 또는 임박한 판매 불가능을 방지하는 데 적합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심각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 비영리기관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당한 방해가 아니다.

(3a) 제 18조 3a항의 의미에서 시장지배력이 우월한 기업이 경쟁사의 네트워크 효과의 독립적인 달성을 방해하여 성과 경쟁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3항의 1문단에 의미 내에서 불합리한 방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경미하지 않은 정도로 제한된다.

(4) 일반적 경험에서 기인한 특정사실에 기초하여 기업이 3항의 의미 내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업에게 있다.

(5) 기업·전문 협회 및 품질마크 협회는 거절이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불평등한 대우를 나타내고 시장 간 경쟁에서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기업의 수용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 § 32a 임시조치

(1) 카르텔청 당국은 제 32조 1항의 의미에 따른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직접적으로 임박하고 심각한 손해로 인해 임시조치를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그 명령이 공익에 우선하여 요구되지 않는 부당한 곤란을 초래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동조 1항에 따른 명령은 시간이 제한된다, 기간은 연장가능하나 총 1년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 번역자: 송예나(독일 마르틴루터 할레비텐베르크대학교 박사과정)

## 6.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국은 규제의 방식과 정도, 입법의 형식 등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안」, 중국의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미국의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 등과 같이 최근 제·개정된 법률 또는 발의된 각국의 법률안들은 대체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더불어 금지되는 행위, 즉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 또는 법률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들에는 기존의 경쟁법을 통해서도 규율이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유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는 형태(예: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로든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형태(예: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안」, 미국의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로든 간에 온라인 플랫폼 간의 상호호환성과 데이터 이동성의 촉진·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역시 특징적인 모습의 하나라 할 수 있다.

&lt;표-24&gt;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 또는 법률안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비교

디지털 서비스법안 (유럽연합)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중국)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 (미국)	경쟁제한방지법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의 결합 및 이용 등의 금지</li> <li>- 이용 강요 및 끼워팔기 금지</li> <li>- 삭제·탈퇴·이전 등의 제한 금지</li> <li>- 경쟁 사업자 배제(거래제한) 금지</li> <li>- 부당한 자사 우대행위(특혜) 금지</li> <li>- 당국에 대한 민원제기 제한행위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가격행위의 금지</li> <li>- 원가 이하 판매(부당염매) 금지</li> <li>- 부당한 거래 거절 금지</li> <li>- 거래 제한(양자택일 또는 배타적 거래 등)</li> <li>- 끼워팔기 또는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가 금지</li> <li>- 차별적인 거래가격 또는 기타 거래조건 적용 등의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적 이해상충(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 플랫폼 이외의 사업분야에서의 수익권을 소유·지배·보유 금지 등) 금지</li> <li>-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사업자의 주식·자본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인수 등)의 금지</li> <li>- 불법적 차별행위(자사 우대행위,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배제 또는 불이익 등)</li> <li>- 기타 차별행위(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 배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비공개 데이터의 이용 및 상업적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 이용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결정 간섭 또는 제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사의 상품을 경쟁 사업자의 상품과 달리 취급(우대)하는 행위 금지</li> <li>-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li> <li>- (빠르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방해행위 금지</li> <li>- 수집한 경쟁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여 시장 진입장벽을 형성 또는 증대시키는 행위 금지</li> <li>-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을 어렵게 하여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li> <li>- 정보의 불충분한 제공으로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렵게 하는 행위 금지</li> <li>- 다른 사업자의 상품 처리에 부적절한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li> </ul>

## 제6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 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sup>159)</sup>에 대한 입법 제언

#### (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규율방식 및 규율대상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사실상 차이가 없으며,<sup>160)</sup> 때문에 일각에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치 않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논의했던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 또는 법률안 역시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유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 소관 법률들 중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마찬가지로 ‘갑을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이른바 ‘거래공정화 법제’ 역시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불공정거래행위들을 규정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유한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sup>161)</sup>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우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입점업체와의 배타적 거래를 통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차단하여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례<sup>162)</sup>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즉 금지행위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구체적인 실태를 반영하는 불공정행위로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159) 이하 이 절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관한 내용은 ‘정부안’의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60) ‘부당한 손해전가’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최은진·강지원, 주) 77, 62쪽.

161) 최은진·강지원, 주) 77, 63-64쪽.

162) 자사의 비교 쇼핑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오픈마켓서비스 입점업체의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와 자사의 부동산서비스에 제공한 매물정보를 타사 부동산서비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양용현·이화령,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KDI FOCUS 통권 제109호, KDI(2021.08.12.), 4쪽.

&lt;표-25&gt;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거래공정화 법제의 구성체계 비교

정부안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 배제 등)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적용제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적용제외)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 성 및 사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
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 전통지)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의 금지)
제8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6조(선금금의 지급)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0조(보복조치의 금지)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1조(협약 체결의 권장)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11조(감액금지)	
		제8조 삭제 <2007. 8. 3.>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정부안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p>제3장 분쟁의 조정</p> <p>제12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p> <p>제13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 제한)</p> <p>제14조(협의회의 회의)</p> <p>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제16조(조정 신청)</p> <p>제17조(조정)</p> <p>제1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p> <p>제19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p> <p>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조치</p> <p>제2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p> <p>제21조(처분대상의 제한)</p> <p>제22조(시정명령)</p> <p>제23조(시정권고)</p>	<p>금지 등</p> <p>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p> <p>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p> <p>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p> <p>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p> <p>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p> <p>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p> <p>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p> <p>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협약 체결)</p> <p>제3장 분쟁의 조정 등</p> <p>제20조(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p> <p>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p> <p>제22조(협의회의 회의)</p> <p>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p>	<p>금지</p> <p>제10조(가맹금의 반환)</p> <p>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p> <p>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p> <p>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p> <p>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p> <p>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p> <p>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p> <p>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p> <p>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p> <p>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p> <p>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p> <p>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p> <p>제15조(자율규약)</p> <p>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p>	<p>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p> <p>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p> <p>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p> <p>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p> <p>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p> <p>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p> <p>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p> <p>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p>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p>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p> <p>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p> <p>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p> <p>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p> <p>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p>	<p>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p> <p>제3장 분쟁의 조정 등</p> <p>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p> <p>제14조(협의회의 구성)</p> <p>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p> <p>제16조(협의회의 회의)</p> <p>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p> <p>제19조(조정 신청 등)</p> <p>제20조(조정 등)</p> <p>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p> <p>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p> <p>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p>

정부안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제24조(동의의결) 제25조(이행강제금) 제26조(과징금)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장 보칙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9조(서면실태조사) 제30조(손해배상책임) 제3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2조(비밀업수의 의무) 제33조(별치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고발) 제38조(과태료)	제25조(조정 신청 등) 제26조(조정 등)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협의회 조직·운영 등)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29조의3(포상금의 환수) 제30조(서면실태조사) 제31조(처분대상의 제한) 제32조(시정명령) 제33조(시정권고) 제34조(공탁) 제35조(과징금)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보험계약 등)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제15조의5(신고포상금)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제17조(협의회 구성)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위촉제한) 제19조(협의회 회의)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협의회 조정사항) 제22조(조정 신청 등) 제23조(조정 등)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5조(협의회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삭제 <2007. 8. 3.>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제2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4조의3(협의회 회의) 제24조의4(분쟁조정 신청 등) 제24조의5(조정 등)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의7(협의회 운영세칙)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2(공탁) 제25조의3(과징금)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제25조의5(시정권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23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권고) 제25조(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9조(보고)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과태료) 제33조(고발) 제34조(손해배상 책임)  부칙

정부안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부칙	<p>관한 법률」의 준용)</p> <p>제5장 벌칙</p> <p>제39조(벌칙)</p> <p>제40조(양벌규정)</p> <p>제41조(과태료)</p> <p>제42조(고발)</p> <p>부칙</p>	<p>제27조(가맹거래사)</p> <p>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p> <p>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p> <p>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p> <p>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p> <p>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p> <p>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p> <p>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p> <p>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p> <p>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p> <p>제33조(시정조치)</p> <p>제34조(시정권고)</p> <p>제35조(과징금)</p> <p>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p> <p>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p> <p>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p>	<p>관한 법률」의 준용)</p> <p>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p> <p>제29조(벌칙)</p> <p>제30조(벌칙)</p> <p>제30조의2(과태료)</p> <p>제31조(양벌규정)</p> <p>제32조(고발)</p> <p>제33조(과실상계)</p> <p>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제35조(손해배상 책임)</p> <p>제35조의2(자료의 제출)</p> <p>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p> <p>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p> <p>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p> <p>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p> <p>부칙</p>	

정부안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0조(보고)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제44조(고발)  부칙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직전 사업연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통한 총판매금액이 1천억 원인 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 중에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분 및 규모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입법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 남용행위를 제한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만을 규율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정령을 통해 ‘국내 매출액이 3,000억 엔 이상인 판매 종합 온라인 몰과 국내 매출액 2,000억 엔 이상인 앱스토어’로 규율대상을 한정한 후, 전자로는 아마존 재팬, 라쿠텐, 야후 3개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만을, 후자로는 애플 및 아이튠스, 구글 2개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만을 규율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만이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른 규율대상의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어서 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sup>163)</sup>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규율대상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부담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율대상을 최소화하여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예: 피해자의 금지청구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우선 적용되는 형태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163) 양용현·이화령, 주) 162, 8쪽.

정부안	수정의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3) 행정규제

#### 1) 처분대상의 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의 처분대상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분대상 행위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규정과 동일하게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	수정의견
제21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21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 ----- 7년 이 ----- ----- ----- . (이하 생략)

#### 2) 동의를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보복조치의 금지(안 제10조)도 동의를결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와 같이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동의를결을 하도록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	수정의견
제24조(동의를결) ⑥ 동의를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제24조(동의를결) ⑥ ----- ----- ----- (제1항은 제외한다)-----

### 3) 이행강제금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상의 「공정거래법」의 준용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	수정의견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 ----- -----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

### (4) 피해구제

#### 1) 손해배상

「공정거래법」은 ‘보복조치의 금지’ 등 사업자의 일정한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르면 ‘보복조치의 금지’의 경우에도 전보배상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보복조치를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3배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	수정의견
제30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제30조(손해배상책임) ① ----- ----- ----- -----.





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이버몰에서의 거래와 우편 또는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래 간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만을 별도로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1) 용어의 정의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상에서의 용어는 현행법상에서의 용어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고,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개정안	수정의견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2. “비대면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중 인터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전자상거래”란 사업자가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소비자와 비대면으로 체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거래를 말한다.</p> <p>〈삭 제〉</p>
<p>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재화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8.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란 자체</p>	<p>2. “전자상거래업자”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개정안	수정의견
<p>인터넷 사이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12.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란 우편, 카탈로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 을 받아 재화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p>	<p>3. “통신판매”란 사업자가 우편·전기통신,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비대면으로 체결하는 재화등에 관한 거래 를 말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에서 제외한다.</p>
<p>&lt;신 설&gt;</p>	<p>4.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4.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5.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재화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p> <p>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일정한 기능을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일정한 대가를 받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간에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p> <p>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인터넷 등 가상의 영업장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의 청약 접수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결제 및 배송지원, 고객 관리 등의 서비스</p>	<p>&lt;삭 제&gt;</p> <p>5. “전자상거래중개”란 사이버물(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p>

개정안	수정의견
<신 설>	6. “통신판매중개”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거래하는 재화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전자상거래중개업자”란 전자상거래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8. “통신판매중개업자”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2) 전자상거래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전자상거래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라 한다)는 거래를 중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래와 중개하는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상의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수정의견
제24조(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제24조(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의 정보제공의무) ① 전자상거래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이라 한다)가 사이버물을 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개정안	수정의견
<p>처리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p> <p>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p> <p>4. 사업자등록번호</p> <p>5. <u>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u> <u>&lt;신 설&gt;</u></p> <p>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u>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가 중개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재화등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u></p> <p>③ <u>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 관련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련정보”라 한다)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④ <u>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청약의 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의 내용을</u></p>	<p>처리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p> <p>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p> <p>4. 사업자등록번호</p> <p>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p> <p>6. <u>제OO조에서 정한 신고에 따른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u></p> <p>7.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u>전자상거래중개업자들은 자신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u></p> <p>③ <u>전자상거래중개업자들은 전자상거래중개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이하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p> <p>④ <u>전자상거래중개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의 거래에 대한 중개와 자신의 재화등에 대한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신의 재화등과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의 재화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u></p>

개정안	수정의견
<p>소비자의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표시 또는 정보제공의 내용·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⑥ 제3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인접지역 거래를 하는 자인 경우 신원관련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p>	<p>⑤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상거래중개업자가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의 청약의 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중개업자는 해당 업무의 내용, 담당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의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표시 또는 정보제공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삭 제〉</p>

또한,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이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또는 전자상거래중개나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이하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등”라 한다)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에 국한하는 것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상의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수정의견
<p>제25조(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제24조제2항의 표시를 하지</p>	<p>제25조(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의 연대책임) ①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은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p>

개정안	수정의견
<p>아니한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제24조제3항의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재화등을 표시·광고 또는 공급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교부하는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제24조제2항의 표시 또는 제3항의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청약의 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p>	<p>등과 연대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24조제5항을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p> <p>〈삭 제〉</p> <p>〈삭 제〉</p>

개정안	수정의견
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편, 전자상거래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독자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중개업자가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가 다른 법에 따른 의무 준수하기 위해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요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중개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수정의견
<p>제26조(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가 중개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의“온라인판매사업자”와 제10조 및 제69조의“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본다.</p> <p>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p> <p>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p> <p>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p> <p>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p>	<p>제26조(사이버몰에서의 거래중개에 대한 전자상거래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사이버몰에서 거래중개를 하는 전자상거래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개정안	수정의견
<p>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2.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p> <p>가. 제10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p> <p>나. 제69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p> <p>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 전자상거래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이버몰에서 거래중개를 하는 전자상거래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경우에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에 전자상거래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p>

그리고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등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현행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모두 사실상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등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수정의견
<p>제27조(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가 중개되거나 재화등의 거래</p>	<p>제27조(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등의 책임)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의 알선행위</p>

개정안	수정의견
를 위한 연결수단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등과의 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이 행한 행위로 인해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등은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상거래중개 또는 통신판매중개와 관련한 분쟁은 중개와 관련된 분쟁과 중개대상 거래와 관련된 분쟁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중개업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수정의견
제28조(분쟁해결의무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분쟁해결의무 등) ①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은 전자상거래중개등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중개의 대상인 전자상거래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불만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분쟁조정기구를 지정한 경우에 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안	수정의견
<p>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p> <p>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p> <p>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1.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p> <p>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p> <p>3.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p> <p>4.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p> <p>③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중개업자 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비자 및 분쟁의 상대방인 전자상거래중개의뢰사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현행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간의 거래는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개정안	수정의견
<p>제29조(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p> <p>④ 재화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판매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개인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판매자와 소비자(재화등을 사업자나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도 포함</p>	<p>&lt;삭 제&gt;</p>

개정안	수정의견
<p>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인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개인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개인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 간 재화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8조제1항제11호의 결제대금예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개인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p>	

### (3) 법 적용 범위의 축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법 해석에 있어서 의미가 모호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현행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서 단서를 삭제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본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서처럼 단서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수정의견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및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등”이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p>

## 제4장

#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제1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쟁점

제2절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국내 입법 동향

제3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해외 입법 동향

제4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 제언



## 제4장

#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 제1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쟁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이 작은 단위의 일거리로 분화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sup>165)</sup>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단순 구인·구직 앱 이용자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사람’으로 넓게 정의할 경우, 국내에서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수는 179만 명(15~64세 전체 취업자의 7.46%)으로 추산되며, ‘단순 구인·구직 앱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좁게 정의할 경우 약 22만 명(15~64세 전체 취업자의 0.92%)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66)</sup> 그리고 동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경우 30대와 4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대와 50대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전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7)</sup>

165) 김준영,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고용동향 브리프 2019년 2호, 한국고용정보원 (2019.05.31.), 2쪽.

166) 장지연,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고용·노동브리프 제104호(2020-11), 한국노동연구원 (2020.12.), 3쪽; 모집단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로 설정하였으며, 표본은 성·연령계층 및 17개 시도 지역별 인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할당하여 추출하였고, 유무선 RDD 방식의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9만 명의 사례를 확보하여 조사함.

167) 장지연, 주) 166, 6쪽.

<표-26>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 추정\*

	15~64세 인구	취업자	플랫폼으로 일감을 구하는 사람			
			전체	전자상거래 종사자	노무제공자	
					단순 구인·구직 앱 이용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사례수(명)	90,000	59,106	4,500	93	3,865	542
비율(%)		100	7.61	0.16	6.54	0.92
추정규모(천 명)			1,826	38	1,570	220

출처: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장지연), 3쪽.

\* 15~64세 취업자를 2,400만 명으로 보고 규모를 추정함(표에서 사용한 사례수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사례수의 단순합계가 N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27> 플랫폼 노동 종사자 연령별, 성별 분포

	남성		여성		전체	
10대	6	1.6%	8	4.4%	14	2.6%
20대	62	17.0%	53	29.6%	115	21.2%
30대	99	27.3%	42	23.3%	141	26.0%
40대	111	30.8%	38	21.1%	149	27.6%
50대	62	17.1%	38	17.6%	93	17.3%
60대	22	6.2%	7	3.9%	29	5.4%
N	362		180		554	

출처: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장지연), 6쪽.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인력 조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기업들이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수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168)</sup> 그런데 플랫폼 노동은 대체로 작은 직무들로 세분화되어 있는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초단기 일자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1)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있으나 일자리의 안정성이 지극히 낮고, 2)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168) 김준영, “플랫폼노동 증가와 사회정책의 과제”, 월간 공공정책 Vol. 174(2020.04.), 49쪽.

않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3) 노무 이용자(플랫폼 이용자)와 노무 제공자(플랫폼 노동 종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sup>169)</sup> 이처럼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적 보호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임금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부터도 배제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sup>170)</sup>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sup>171)</sup>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1) 플랫폼 노동이 노동의 매개 방식, 계약 및 법률관계, 노무 제공에 있어서 공간적·시간적 환경 등이 전통적인 노동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 및 체제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2)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조직화가 어렵고, 이로 인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조직화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3)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를 사회보장체계 내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72)</sup>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으로는, 1)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현행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포섭되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재정의하는 방안, 2) 개별 법률에서 그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특례에 의해 보호받도록 하는 방안, 3) 현행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169) 김준영, 주) 168, 48쪽.

170)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근로계약을 작성한 비율은 18.2%에 그쳤으며, 건강보험(70.1%), 국민연금(52.6%), 고용보험(34.4%) 가입률도 매우 낮았다. 뉴스워치, “안전망 사각지대 ‘배달 라이더·택배기사’ 사회보험 적용되나?...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추진”(2020.12.21.), <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52609> (최종방문: 2021.10.15.).

171) 김준영, 주) 168, 48쪽.

172) 한인상·신동윤,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 vol. 76(2019.10.), 5-6쪽.

제3의 범주를 창설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sup>173)</sup>

## 제2절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국내 입법 동향

### 1. 노동관계법 등의 제·개정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01. 15. 전부개정, 2020. 01. 16. 시행)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과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산업안전 보건법	<p><b>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b>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li> <li>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li> <li>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li> </ol>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b>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b>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p>

173) 정찬영·이승길,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법적 쟁점과 보호방안”, 아주법학 제14권 제1호(2020), 141-144쪽.

	<p>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 12. 08. 일부개정, 2021. 06. 09. 시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근로복지 기본법	<p><b>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b>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li> <li>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li> </ol> <p>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li> <li>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li> <li>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li> <li>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li> </ol> <p>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p>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뿐만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택배서비스종사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7911호, 2021. 01. 26. 제정, 2021. 07. 27. 시행)되었고,<sup>174)</sup> 이를 통해 ‘택배 서비스 사업자 등록제도’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p><b>제32조(표준계약서)</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p> <p><b>제33조(서비스약관)</b>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p>

174) 법 제정과정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인상, “플랫폼노동 관련 최근 입법동향 및 과제”, 노동법논총 제51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2021.04.), 222쪽.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등

원회의 심사를 거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서비스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아닌 자는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 화물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의 상대방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
2.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정성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서비스평가는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항목별 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폭서, 폭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생활물류 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등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2.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3.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 대한 관리
4. 서비스약관의 변경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0조(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⑦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등	
	<p>립한다.</p> <p>③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p> <p>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b>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li> <li>2.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li> <li>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li> <li>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li> <li>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li> <li>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li> <li>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p>

그 밖에도, 「고용보험법」의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01. 05. 일부개정, 2022. 01. 01. 시행)을 통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법 제77조의7)가 신설되었으며, 「고용보

험법」의 개정에 맞추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와 노무 제공과 관련된 보험업무의 대행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의4)를 신설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01. 05. 일부개정, 2022. 01. 01. 시행)이 이루어졌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고용보험법	<p><b>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b>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li> <li>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li> <li>3.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li> </ol> <p>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p> <p>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p>
고용보험 및	<p><b>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b>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p>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p>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li> <li>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li> <li>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li> <li>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48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p> <p>⑤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원천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3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li> <li>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li> </ol> <p>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 2. 입법 추진 중인 법률

최근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으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라 한다)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이라 한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각각 ‘플랫폼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보호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175)</sup>

### (1)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2020년 12월 21일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1)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2) 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 3)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과제로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sup>176)</sup>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정부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은 우선적으로 노동관계법을 통해 보호하여야 하며,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노동자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음을 밝히면서 2021년 1분기 중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sup>177)</sup>

이러한 배경 하에, 2021년 3월 18일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

175) 이상현, “배달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관련 논의 동향”,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1-1호, 한국법제연구원(2021.08.31.), 43쪽.

176)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2020.12.), 6쪽 참조.

177)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 주) 176, 7쪽.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장철민의원 대표발의)<sup>178)</sup>이 발의되었다.

동 법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으로, ‘플랫폼 운영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동 법은 1)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동 법안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2) 플랫폼 종사자가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동 법안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1)과 2)의 경우에 있어서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동 법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과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동 법은 서면에 의한 계약과 계약의 변경·해지(안 제5조 및 제6조), 플랫폼 운영자의 플랫폼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해결 의무(안 제7조), 플랫폼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안 제8조),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안 제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노무제공계약의 공정한 체결(안 제13조), 계약서 기재사항(안 제14조),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부당한 업무수행 요구의 금지 및 책임의 부당한 전가 금지(안 제15조 및 제16조),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적정한 보수 산정 및 보수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플랫폼 종사자의 의견 제시 절차 마련(제17조), 플랫폼 이용 사업자

178) 고용노동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발의되었다. 한국일보, “당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 추진…노동계는 ‘제2의 근로기준법’ 반발”(2021.04.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917570004181> (최종방문: 2021.10.15.).

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안 제20조), 폭언·폭행·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안 제23조),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24조),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및 개인정보·사생활 보호(안 제22조 및 제25조),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지원(안 제27조)과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안 제26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9조), 실태조사(안 제30조), 표준계약서의 보급(안 제31조) 등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표-28>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법적 보호

정책수요	관련조문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면계약원칙 및 주요내용(제5조, 제14조)</li> <li>표준계약서 보급(제31조)</li> <li>계약 변경·해지시 사전고지(제6조, 제17조, 제18조)</li> </ul>
불공정거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한 업무수행요구 금지(제15조)</li> <li>책임의 부당한 전가 금지(제16조)</li> <li>감독기관 신고 및 행정지도(제33조, 제34조)</li> </ul>
경력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랫폼 기업의 경력증명의무(제7조)</li> </ul>
일의 배정(알고리즘 등), 고객만족도 등 평가기준 등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랫폼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주요사항 변경시 이의제기 절차 보장(제8조)</li> </ul>
4대보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험 적용원칙(제26조) 및 정부지원(제32조)</li> </ul>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영업자로 오분류 관련 자문기구 운영(제3조)</li> <li>플랫폼기업에 노동법 적용 관련 자료 요청(제8조)</li> </ul>

출처: 보도자료,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7쪽).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020년 12월 1일 동 법이 발의(임이자의원 대표발의)되었다.

동 법에서는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노무를 비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제공한 노무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3)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제2호).

동 법은 사업주의 서면계약 의무, 계약 해지의 예고 및 불합리한 해지 금지(안 제6조 및 제7조), 연차휴가·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육아유직 허용 의무(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예방(제15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제16조),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의 단체 조직·가입 방해 금지 의무(안 제30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는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안 제9조), 계약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의 조직·가입이 가능하고 단체의 대표자는 노무 제공에 관한 조건 및 대우 기준에 대하여 협의할 권한을 가지며(안 제21조 및 제22조), 노동위원회에 협의의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안 제24조 및 제25조).

동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에만 적용된다(안 제3조).

&lt;표-29&gt;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의 구성체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적용 범위)
제4조(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관계)	제4조(민·형사상 책임제한)
제2장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제5조(균등한 처우)
제1절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2장 개별적 계약관계
제5조(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의 체결)	제6조(서면계약의 체결 및 교부)
제6조(플랫폼 이용계약의 변경·해지)	제7조(부당해지 등의 제한)
제7조(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계약해지의 예고)
제8조(플랫폼 운영자의 정보 제공 및 협의)	제9조(부당해지등의 구제신청)
제2절 공제사업	제10조(보수 지급)
제9조(공제사업의 실시)	제11조(보수의 시효)
제10조(공제회의 설립등)	제12조(연차 휴가)
제11조(공제부금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3조(임산부의 보호)
제12조(공제회의 사업 및 지원)	제14조(육아휴직)
제3장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제15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절 공정한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산업안전보건법」의 준용)
제13조(계약의 일반원칙)	제1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적용)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제18조(고충처리)
제15조(부당한 업무수행 요구의 금지)	제19조(직업능력개발)
제16조(책임의 부당한 전가 금지)	제20조(이 법을 위반한 계약)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제17조(보수의 결정)	제3장 단체의 조직 등
제18조(계약의 해지)	제21조(단체의 조직·가입 자유)
제19조(플랫폼 종사자의 의무)	제22조(협회의 권한)
제2절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제23조(협정의 효력)
제20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24조(조정)
제21조(불이익한 조치 등의 금지)	제25조(중재)
제22조(안전과 건강 보호)	제26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3조(괴롭힘등의 금지)	제2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의 관장)
제24조(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보호)	제28조(중재재정의 확정 및 효력)
제25조(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제29조(사적 조정·중재)
제26조(사회보험의 적용)	제30조(조직·가입 방해 행위 금지)
제27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지원)	제31조(구제신청)
제28조(플랫폼 운영자의 협조)	제4장 감독기관 등
제4장 정부의 책무	제32조(감독기관)
제29조(기본계획)	제33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30조(실태조사)	제34조(시정조치)
제31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2조(정부의 지원)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보칙	제37조(과태료)
제33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부칙
제34조(행정지도)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6조(과태료)	
부칙	

## 제3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해외 입법 동향

### 1. 유럽연합

2019년 6월 20일 유럽연합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동 지침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sup>179)</sup> 동 지침은 디지털화 또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관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2년 8월 1일까지 동 지침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 지침은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용형태(0시간 계약, 가사노동, 간헐적 근로, 배우자 기반 노동, 훈련생, 견습생 등)에 적용되며(지침 제1조), 동 지침에 따라 사용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노무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동 지침은 또한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지침 제8조), 노무 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지침 제9조), 노무의 형태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 노무 제공자는 불리한 처우 없이 노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10조).

그리고 온 디멘드(호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 온 디멘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고용계약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2)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에 기초한 최소한의 유급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경우 이를 고용계약으로 추정하거나, 또는 3)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동등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지침 제11조).

179) DIRECTIVE (EU) 2019/11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 in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9L1152&from=en> (last visited Oct. 15, 2021).

그 밖에도, 동 지침에 따라 수습기간의 종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동일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노무 제공자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근로조건을 갖춘 고용형태를 해당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지침 제12조), 사용자는 노무 제공자에게 노무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지침 제13조).

<표-30>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의 구성체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제1장 일반규정	
제1조(목적, 대상, 범위)	
제2조(정의)	
제3조(근로조건 등 정보)	
제2장 고용관계에 관한 정보	
제4조(사용자의 근로조건 등 정보 제공 의무)	
제5조(근로조건 등 정보 제공시점 및 방식)	
제6조(고용관계 변경)	
제7조(회원국 또는 제3국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의 정보 추가 제공)	
제3장 근로조건 관련 최소요건	
제8조(수습기간의 최대기간)	
제9조(병행 직업 선택)	
제10조(노무 제공에 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	
제11조(온 디멘드 계약의 보완 조치)	
제12조(다른 고용형태로의 전환)	
제13조(의무교육훈련)	
제14조(단체협약)	
제4장 보호규정	
제15조(노무 제공자가 문서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추정 내용과 조기 해결)	
제16조(보상할 권리)	
제17조(고소 등을 이유로 노무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우 또는 결과에 대한 보호)	
제18조(해고 보호 및 입증책임)	
제19조(벌칙)	
제5장 최종규정	
제20조(강행규정과 유리한 조항)	
제21조(적용과 이행)	
제22조(적용약정)	
제23조(위원회 검토)	
제24조(폐지)	
제25조(효력발생시기)	
제26조(배포)	

## 2. 프랑스

2016년 8월 프랑스는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법전」 제7편 제3권 제3장 이하에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게 되었다.<sup>180)</sup>

프랑스 「노동법전」은 1)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이 보장되는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임금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제 L.7341-1조), 2) 제공되는 노무나 매매되는 재화의 성격과 가격을 플랫폼이 결정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제 L.7342-1조), 3) 임의 가입을 통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산재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하며, 플랫폼이 산재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집단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을 규정하고 있다(제 L.7342-2조).<sup>181)</sup> 그 밖에도,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대표를 통하여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직업적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플랫폼은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sup>182)</sup>

또한, 프랑스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2018년 9월 5일 법」의 제정을 통해 「노동법전」 제 L.7342-1조를 개정,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건 및 방식으로 일종의 ‘플랫폼노동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약관에 플랫폼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특히,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업무 수행 조

180) 한인상·신동윤, 주) 172, 7쪽; 제7편에서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81) 한인상·신동윤, 주) 172, 7쪽[박제성, “디지털의 세 가지 표상과 노동법의 과제”,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선언 및 플랫폼 영역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9.01.30., 25쪽 인용].

182) 한인상·신동윤, 주) 172, 7쪽.

건, 적절한 가격 보장,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조치 등이 명시되어야 함)하도록 규정하였다.<sup>183)</sup> 그러나 동 법은 입법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공포·시행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sup>184)</sup>

### 3. 미국

미국에서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응은 연방법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주로 주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sup>185)</sup>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186)</sup> 2018년 4월 30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Dynamex Operations West, Inc. v.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사건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통제 기준’(control test)을 적용해오던 전례를 깨고 이른바 ‘ABC 기준’(ABC test)을 적용하여 배달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sup>187)</sup> 같은 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의회 의원인 Lorena Gonzalez는 노동자성의 인정과 관련된 모든 판결에 ‘ABC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sup>188)</sup>을 상정하였고, 2019년 9월

183) 동 법은 국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입법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공포되지 못했다.

184) 한인상·신동윤, 주) 172, 7쪽.

185) 일례로, 시애틀 시의 경우 독립계약자인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찬영·이승길, 주) 173, 136쪽.

186) 정찬영·이승길, 주) 173, 136쪽[연합뉴스, “미 노동관계위, 우버 기사는 노동자 아닌 독립계약자”, 2019.5.16.일자. 인용].

187) *Dynamex Operations West*사(이하 “Dynamex”라 한다)는 배송 서비스 회사로서 배달기사들을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2004년부터 배달기사들을 독립 계약자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2005년 배달기사들은 자신들을 독립 계약자로 구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Dynamex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배달기사에게 근로자 지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고 Dynamex가 이른바 ‘ABC 기준’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배달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였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역시 Dynamex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법원과 마찬가지로 배달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였다. *Dynamex Operations West, Inc. v.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4 Cal.5th 903 (2018).

188) 미국 노동법은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피고용인’(employee)인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근로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며, 연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정찬영·이승길, 주) 173, 135쪽[이다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노동법적 쟁점(미국에서의 근로자성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17 상반기 제12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7, 14-15면 인용].

18일 동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의 「노동법」(Labor Code)에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ABC 기준’을 명시한 Section 2750.3(a)(이하 “AB 5법”이라 한다)의 규정이 신설되었다.<sup>189)</sup>

「AB 5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ABC 기준’의 세 가지 요소, 즉 (A) 노동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으로는 실제로 기업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으며, (B) 노동자는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C) 노동자는 관례적으로 기업과 독립적으로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한다는 내용을 모두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임금노동자로 추정된다.<sup>190)</sup> 동 법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임금노동자로 추정되면, 최저임금,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유급 가족휴가 등의 기본권적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sup>191)</sup>

「AB 5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우버(Uber)나 리프트(Lyft) 운전기사와 같은 각 노동자도 임금노동자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sup>192)</sup> 그러나 동 법은 2020년 11월 각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 법안’에 대한 투표 결과에 따라 폐지되었다.<sup>193)</sup>

#### 4.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최근 몇 년간 배달기사가 임금노동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고, 스페인 대법원은 2020년 8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배달기사가 임금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sup>194)</sup> 스페인은 2007년 「자영노동법」

189) Miriam A. Cherry,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AB 5법”, 국제노동브리프 2020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38쪽.

190) Miriam A. Cherry, 주) 189, 39쪽.

191) Miriam A. Cherry, 주) 189, 38-39쪽.

192) Miriam A. Cherry, 주) 189, 39쪽.

193) 매일경제, “캘리포니아, 우버기사 지위 다시 원래대로”(2020.11.04.),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1/1133858/> (최종방문: 2021.10.15.).

(LETA)의 제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업자’(TRADE)라는 법적 지위를 창설하여 노동법상의 일정한 권리를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인 글로보(Glovo)의 배달기사인 원고가 자신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임금노동자로 묵시적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1) 배달기사가 글로보의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 음식배달 서비스에 필수적인 생산수단은 배달기사의 스마트폰이나 오토바이가 아니라 글로보의 플랫폼(앱)이며, 3) 글로보가 (근무시간대 우선 배정을 통해 수수료 소득과 직결되는) 평점시스템으로 배달기사를 통제하였고, 4)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적 결정 권한이 글로보에 독점적으로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sup>195)</sup>

스페인 정부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 부문에서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긴급입법’, 이른바 「라이더법」(Ley Rider)을 제정하였고, 동 법은 2021년 8월 12일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다.<sup>196)</sup>

동 법은 1)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임금노동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였고(다만, 사용자단체의 반대로 이 규정은 배달 플랫폼 기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2)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권(임금노동자가 자신의 신상이나 노동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을 보장하고 있다.<sup>197)</sup>

194) Tribunal Supremo, Sala Cuarta, de lo Social, Sección Pleno, Sentencia 805/2020 de 25 Sep. 2020, Rec. 4746/2019.

195) 이영주, “플랫폼 노동의 고용상 지위에 관한 최근 해외 판결 연구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70쪽; 대법원은 2021년 5월에 또 다른 음식배달 플랫폼인 딜리버루(Deliveroo)의 배달기사도 역시 임금노동자라고 판단하였다.

196) 이영주, 주) 195, 70-71쪽.

197) 이영주, 주) 195, 71쪽.

## 5. 소결

유럽연합이 제정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디지털화 또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하나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의 문제에 대해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각국의 입법 대응을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환으로 보호하는 경우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여 보호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프랑스의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의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특수형태고용종사자'(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임금노동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의 보장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비록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캘리포니아주의 「AB 5법」을 통해 사용자가 이른바 'ABC 기준'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기본권적 법적 보호(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등)를 제공하였으며, 스페인의 「라이더법」 역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임금노동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알고리즘에 대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접근권 등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제4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 제언

우리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sup>198)</sup> 동 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노동자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다.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노동관계법 및 체계, 사회보장체계 등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포섭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법에서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을 위한 제3의 법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노동법에 포섭하지 않고 제3지대로 몰아넣는 ‘회색지대’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동 법의 제정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동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sup>199)</sup>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로 정의함으로써 노동법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sup>200)</sup> 반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의 취약성을 줄이는 의미 있는 입법적 개선으로 평가되어지기도 한다.<sup>201)</sup> 일하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법적 보호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와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 사이의 법적 보호의 격차를

198) 매일노동뉴스, “정부,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입법”(2021.10.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06> (최종방문: 2021.10.15.).

199) 매일노동뉴스, “[노사 한목소리 반대?] 쟁점 미리 본 플랫폼종사자 보호법”(2021.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97> (최종방문일: 2021.10.15.).

200) 보도자료(참여연대), “플랫폼노동 당사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2021.10.05.), 본문 내용 참조.

20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편적 노동권의 시작, 플랫폼종사자 보호부터”, 위원회 칼럼(2021.09.01.),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columnDetail.do?articleId=156> (최종방문: 2021.10.15.).

줄여나가야 하는데, 현재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처해있는 보호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sup>202)</sup> 이는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재정의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보호방안이나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의 포섭은 업무의 전달 방식이나 다양한 고용관계 측면의 차이 등으로 인해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 등<sup>203)</sup>을 고려한 입장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방식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론적·학술적 논의는 다른 연구에서의 과제로 남겨두고, 이하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달성하는데 필요해 보이는 몇 가지 의견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입법과 관련한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관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동 법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동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제1항). 그리고 같은 취지,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제2항).

동 법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안 제3조제1항의 규정은 마치 근로자의 범주에 포섭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우선 적용과 ‘유리의 원칙’에 따른 동 법의 예외적인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제2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입법론적인 관점에서는 동 법이

20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 201, 본문 내용 참조.

203) 정찬영·이승길, 주) 173, 146쪽.

보호하자고 하는 객체, 즉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동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우리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우리의 원칙'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굳이 노동관계법과 「공정거래법」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가령,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온라인 노동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전면개정을 준비 중인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수정의견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p> <p>② 플랫폼 종사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p> <p>③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관계의 확립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p>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수정의견
㉕ 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노동관계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그런데 이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아래에서와 같이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수정의견
〈신 설〉	제〇〇조(자문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 계약의 변경 및 해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10일과 15일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안 제6조),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적어도 15일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8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사전 제공 의무를 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6조 단서 및 제18조 단서).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의 측면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품 이용 사업자의 사전 제공 의무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 또는 시간 범위를 정하여 이를 완화시켜주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동 법에서는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사전 제공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안 제36조),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사전 제공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무효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수정의견
<p>제6조(플랫폼 이용계약의 변경·해지)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 적어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플랫폼 이용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10일 2. 플랫폼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15일</p> <p>〈신 설〉</p>	<p>제6조(플랫폼 이용계약의 변경·해지) ①</p> <p>-----</p> <p>-----</p> <p>-----</p> <p>-----</p> <p>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제공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p> <p>1. -----</p> <p>2. -----</p> <p>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플랫폼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p>
<p>제18조(계약의 해지)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적어도 15일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제18조(계약의 해지) ① 플랫폼 이용 사업</p> <p>-----</p> <p>-----</p> <p>-----</p> <p>-----</p> <p>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제공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p>

### 3. 분쟁의 조정 및 피해 구제 절차 마련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서는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 받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플랫폼 이용 사업자 또는 고객 등과의 분쟁도 포함)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안 제7조제2항),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노무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계약을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4조제1항).

그런데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에서 받은 불이익 처우 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위한 분쟁의 조정 및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제12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 제한)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인 경우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즉시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심의·의결은 전체회의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사항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 신청) ① 분쟁당사자는 제6조·제7조·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0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7조·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 및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시효가 당초의 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17조(조정)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2. 제6조·제7조·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4.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 쌍방이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을 신청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거부한 경우
  5. 분쟁당사자가 조정의 신청 전후에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
  6. 분쟁당사자가 조정의 신청 전후에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7.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협의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19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벌칙 규정 마련의 필요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벌칙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204)</sup> 실제로 동 법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뿐만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를 상대로 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부당한 업무수행 요구의 금지(안 제15조)와 책임의 부당한 전가 금지(안 제16조)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지어 과태료조차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칙 규정을 보완하여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준하는 수준의 과태료와 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5조(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의 체결) ②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플랫폼 이용계약서를 플랫폼 종사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6조(과태료) ① 플랫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조(플랫폼 이용계약의 변경·해지)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 적어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제5조제2항에 따른 플랫폼 이용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플랫폼 이용계약의 변경·해지의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증명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04) 매일노동뉴스, 주) 199, 기사 본문 내용 참조.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플랫폼 이용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10일
  2. 플랫폼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15일
- 제7조(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④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증개 또는 알선 받은 노무를 제공한 사실 등에 대한 증명 등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노무를 제공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플랫폼 운영자의 정보 제공 및 협의) ①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제5조에 따른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플랫폼 운영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의 배정 및 보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
2.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평가 방법·기준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어도 10일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플랫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p>플랫폼 종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①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플랫폼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약의 당사자</li> <li>2. 수행해야 할 노무의 내용</li> <li>3. 보수의 지급기준, 지급일 등에 관한 사항</li> <li>4. 계약의 기간, 갱신·변경 및 해지 사유와 절차</li> <li>5. 노무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 기준</li> <li>6. 노무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 방법 및 절차</li> <li>7.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정한 휴식 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li>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li> </ol>	<p>제36조(과태료) 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기준 등의 변경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18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제20조, 제21조, 제24조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li> <li>5.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과 건강보호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li>6.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괴롭힘등을 한 경우</li> <li>7.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제15조(부당한 업무수행 요구의 금지) ①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나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을 수행할 것을 플랫폼 종사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플랫폼 종사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p> <p>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요구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책임의 부당한 전가 금지)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p>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수의 결정) 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보수의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어도 10일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계약의 해지)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적어도 15일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성(性)·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불이익한 조치 등의 금지)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안전과 건강 보호)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괴롭힘등의 금지) ①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폭언·폭행·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p>희롱 및 괴롭힘 등(이하 이 조에서 “괴롭힘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고객, 소속 직원 또는 다른 플랫폼 종사자 등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괴롭힘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괴롭힘등이 발생한 경우에 조사,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4조(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보호)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5장 결론



## 제5장

## 결론

국내 플랫폼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과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사실상 차이가 없어 법률 제정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어서 시장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담겨 있는 행정규제 및 피해구제 관련 규정들이 「공정거래법」상의 규정들보다도 완화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게 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구체적인 실태를 반영하는 불공정행위로 확장하여 규정하고, 시행령을 제정하여 규율대상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치는 부담이나 시장의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율대상의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과 행정규제(처분대상의 제한,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및 피해구제(손해배상) 관련 규정들을 최소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정들에 맞추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우선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외의 '통신판매중개'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아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의 중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오인 방지를 위해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의무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운영사업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운영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이용사업자가 사실상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거래를 통칭하는 용어를 '통신판매'로 정의하고, '전자상거래'를 그 중 하나로 보아 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용어들을 재정비하였고,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와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정

하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의견 등을 입법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한 편, 국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 정부는 불안한 고용과 소득, 불안정한 사회 안전망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법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을 위한 제3의 법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노동법에 포섭하지 않고 제3지대로 몰아넣은 ‘회색지대’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동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노동법에 포섭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이를 의미 있는 입법적 개선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벌칙 규정 등의 미비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자주 지적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자의 플랫폼 이용계약의 변경·해지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위한 분쟁의 조정 및 피해 구제 절차의 마련,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등에 관하여 제언하고 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전문서적 및 연구보고서>

OECD (2019), An Introduction to Online Platforms and Their Rol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ECD Publishing, Paris.

마셜 밴 엘스타인·상지트 폴 초더리·제프리 파커, 플랫폼 레볼루션, 부키(2017).

이기중, 플랫폼 경쟁법, 삼영사(2021).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9.11.).

김윤정 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9).

이정섭 외,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2018).

최선영,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1.06.).

### <연구논문 및 정기간행물>

Alain Strowel & Wouter Vergote, “Digital Platforms: To Regulate or Not to Regulate? Message to Regulators: Get the Economics Right First, then Focus on the Right Regulation” [in Bram Devolder (ed.), The Platform Economy: Unravelling the Legal Status of Online Intermediaries, Intersentia (1st edition, 2019)].

Miriam A. Cherry,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AB 5법”, 국제노동브리프 2020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강영기,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 법제 주요 내용”, 최신외국법제정보 2020 제4호, 한국법제연구원(2020.10.15.).
- 강지원·박소영,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제의 소관 관련 논의”, 이슈와 논점 제1836호, 국회입법조사처(2021.05.14.).
-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1호(2021.05.).
- 김남우, “미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동향”, 최신외국정보 2021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2021.08.31.).
- 김영선,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 동향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4 No.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06.23.).
- 김윤정,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질서 공정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경쟁저널 제205호, 공정경쟁연합회(2020.11.).
- 김잔디, “일본 「디지털플랫폼법」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논의 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021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2021.06.30.).
- 김준영,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고용동향 브리프 2019년 2호, 한국고용정보원(2019.05.31.).
- 김준영, “플랫폼노동 증가와 사회정책의 과제”, 월간 공공정책 Vol. 174(2020.04.).
- 김지현, “빅테크 기업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1-21호(통권 제170호), 국회도서관(2021.08.24.).
- 김현수·전성호,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20-11(2020).
- 박경미,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동향과 전망,” 고려법학 제99호 (2020.12.).
- 양용현·이화령,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KDI FOCUS 통권 제109호,

- KDI(2021.08.12.).
- 유영국,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독점규제법상 시사점”, 경쟁법연구 제42권, 한국경쟁법학회(2020.11.).
- 이상현, “배달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관련 논의 동향”,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1-1호, 한국법제연구원(2021.08.31.).
- 이지현,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KISDI Perspectives May 2021 No.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121.05.10.).
- 이영주, “플랫폼 노동의 고용상 지위에 관한 최근 해외 판결 연구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이창범,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안의 주요 내용 분석”, GLOBAL LEGAL ISSUES 21-17-①, 한국법제연구원.
- 장영신·강구상,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16(2021.08.19.).
- 장지연,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고용·노동브리프 제104호(2020-11), 한국노동연구원(2020.12.).
- 정찬영·이승길,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법적 쟁점과 보호방안”, 아주법학 제14권 제1호(2020).
- 최은진·강지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NARS 입법·정책 Vol. 77, 국회입법조사처(2021.05.10.).
- 최창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체계의 비교법 연구 -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2020.04.).
- 한인상·신동윤,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 vol. 76(2019.10.).
- 한인상, “플랫폼노동 관련 최근 입법동향 및 과제”, 노동법논총 제51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2021.04.).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입법과제 및 정비”, 경쟁저널 제205호, 공정  
경쟁연합회(2020.11.).

### <학술회의 자료집 및 보도자료>

고형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 - 정의, 적용범위, 정보제  
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중심으로 -”,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1차 워크숍 자료집.

고형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플  
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2차 워크숍 자료집.

고형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정부안의 공적  
규제 및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3  
차 워크숍 자료집.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체계 및 총칙을 중심으로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별호, 2021을 수정  
·보완),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4차 워크숍 자료집.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대한 연구”,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5차 워크숍 자료집.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 ‘플랫폼 규제 3법안’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 성일종 주최·한국경제법학회/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주관 토론회, “온  
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학술회의 자료집.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앱장터 40%, 숙박앱 31% 입점사업자가 갑질 경험 했다!”  
(2021.03.03.).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에  
고”(2021.03.08.).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2020.12.).

보도자료(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경기도 공정경제과), “배달앱 수수료 높아도 안쓸 수 없다...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0.08.27.).

보도자료(통계청), “2020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2021.02.03.).

보도자료(참여연대), “플랫폼노동 당사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2021.10.05.).

보도자료(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거래 소비자피해 지속적으로 증가-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장치 마련돼야-”(2021.01.22.).

### <온라인 문헌 및 자료>

Deutscher Bundestag, Reform des Wettbewerbsrechts auf digitalen Märkten debattiert,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0/kw44-de-digitales-wettbewerbsrecht-798194>.

DIRECTIVE (EU) 2019/11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 in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EXT/HTML/?uri=CELEX:32019L1152&from=en>.

House Committee on Judiciary, “Press Release: Judiciary Antitrust Subcommittee Investigation Reveals Digital Economy Highly Concentrated, Impacted By Monopoly Power”, <https://judiciary.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429>.

H.R.3816 -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816/text?r=43&s=1>.

H.R.3825 -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https://www.congress.gov/bill>

/117th-congress/house-bill/3825/text?r=34&s=1.

H.R.3826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826/text?r=5&s=1>.

H.R.3849 -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849/text>.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R1150&from=EN>.

S. 1896 - Algorithmic Justice and Online Platform Transparency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1896/text>.

S. 2710 - Open App Markets Act,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7/s2710>.

The Economist, “Who Owns Your Personal Data?: The Incorporated Woman”, <https://www.economist.com/schumpeter/2014/06/27/the-incorporated-woman>.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Actions (Jul. 9, 2021),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7/09/executive-order-on-promoting-competition-in-the-american-economy/>.

경제산업부,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規制対象となる事業者を指定しました(2021.04.01.), <https://www.meti.go.jp/press/2021/04/20210401003/20210401003.html>.

經濟産業省,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第四条第一項の事業の区分及び規模を定める政令」及び「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20/01/20210126002/20210126002.html>.

公正取引委員会, (令和元年10月31日)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オンラインモール・アプリストアにおける事業者間取引)について,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oct/191031\\_2.html](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oct/191031_2.html).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2021年2月7日国务院反垄断委员会印发), [http://gkml.samr.gov.cn/nsjg/fldj/202102/t20210207\\_325967.html](http://gkml.samr.gov.cn/nsjg/fldj/202102/t20210207_325967.html).

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四号), <https://www.jftc.go.jp/dk/guideline/lawdk.html>.

DAILY POP, “배달앱의 성장,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배달비 공방은 계속”(2021.06.18.),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1750>.

KDI, “온라인 플랫폼법의 필요성과 방향”(2021.02.02.), [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45](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45).

kotra 해외시장뉴스, “디지털경제 전환에 발맞춰 OECD 디지털세 최종 합의”(2021.10.2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91457>.

kotra 해외시장뉴스, “美 하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5개 발의”(2021.07.12.),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9301>.

YTN 사이언스, “‘에어비앤비’ 이용자 신분증 통째로 노출”(2018.10.22.), <https://scienc>

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810221127439809&page=193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편적 노동권의 시작, 플랫폼종사자 보호부터”, 위원회 칼럼(2021.09.01.),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columnDetail.do?articleId=156>.

뉴스워치, “안전망 사각지대 ‘배달 라이더·택배기사’ 사회보험 적용되나?...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추진”(2020.12.21.), <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52609>.

뉴스핌, “엔트파이낸셜 타격 불가피, 알리바바 3조원 과징금 파장”(2021.04.10.),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410000132>.

매일경제, “아마존 책값 ‘갑질’ 못한다... 수익분배 출판사에 판정패”(2014.11.14.), <http://www.mk.co.kr/news/world/view/2014/11/1425545/>.

매일경제, “이미 규제 3천개인데...공정위·방통위 내가 규제”(2021.02.08.),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767345/>.

매일경제, “캘리포니아, 우버기사 지위 다시 원래대로”(2020.11.04.),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1/1133858/>.

매일노동뉴스, “[노사 한목소리 반대?] 쟁점 미리 본 플랫폼종사자 보호법”(2021.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97>.

매일노동뉴스, “정부,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입법”(2021.10.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06>.

중앙일보, “음식배달 시장 3년새 6.4배 ‘폭풍성장’... 95% 모바일 주문”(2021.03.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2541#home>.

한국일보, “당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 추진...노동계는 ‘제2의 근로기준법’ 반발”(2021.04.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917570004181>.

연구보고 21-06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2021년 10월 29일 인쇄  
2021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계홍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10,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9-11-91865-93-6 93360



## 김형건(책임)

### 학력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법학박사(S.J.D.)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실적 및 논문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입법 동향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V)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Historical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Laws in Korea  
합성생물학 표준 개발 현황과 보호 법제 연구  
Overview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South Korea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BN: 979-11-91865-93-6

값 10,000원